위탁 23-03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이준우 · 임승희 · 임수정 · 박종미
이진영 · 이문오 · 서성제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본 보고서를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수행기관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 구 진

연구 책임 : 이준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임승희(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수정(한국융복합복지연구원㈜ 대표)

박종미(강남대학교 복지공감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진영(강남대학교 복지공감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문오(강남대학교 복지공감연구소 연구원)

서성제(인덕학교 부장교사)

자문위원

김형태(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승현(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석(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목 차

연구요약 ····· vii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내용 및 절차 ····· 4

Ⅱ.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 10

1.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분석 ····· 10
2.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과 제도 비교 ····· 20
3.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관련 연구 동향 ····· 27
4.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에 대한 소결 ····· 37

Ⅲ.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 40

1.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대상 설문조사 ····· 40
2. 의무교육 대상기관 설문조사 ····· 61
3. 실태조사에 대한 소결 ····· 87

Ⅳ.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 ····· 90

1.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설계 ····· 90
2. 교육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 95
3. 교육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에 대한 소결 ····· 106
4. 교육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 108
5.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소결 ····· 129

Ⅴ. 장애인식개선 발전방안 제안 ····· 132

1. 중장기 로드맵 제시 ····· 132
2. 단계별 발전방안 제언 ····· 133

Ⅵ. 결론 ····· 149

1. 연구의 요약 ····· 149
2. 결론 ····· 152

참고문헌 ····· 156

부록 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강사용 설문지 표지 ····· 164

부록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강사용 설문지 내용 ····· 165

부록 3.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의무교육 기관 담당자용 설문지 표지 ····· 173

부록 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의무교육 기관 담당자용 설문지 내용 ····· 174

부록 5.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1차 델파이 설문 ····· 182

부록 6.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2차 델파이 설문 ····· 188

표목차

〈표 Ⅰ-1〉 실태조사 개요 ····· 5
〈표 Ⅰ-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 6
〈표 Ⅰ-3〉 법정의무기관 표본추출 과정 및 표본규모 ····· 7
〈표 Ⅱ-1〉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운영 제도 비교 ····· 12
〈표 Ⅲ-1-1〉 응답자 일반적 특성(N=183) ····· 40
〈표 Ⅲ-1-2〉 응답자의 장애 관련 특성 ····· 41
〈표 Ⅲ-1-3〉 응답자 강사 특성 ····· 42
〈표 Ⅲ-1-4〉 응답자 자격 현황 및 강사 유형(복수응답) ····· 43
〈표 Ⅲ-1-5〉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제도인식 ····· 44
〈표 Ⅲ-1-6〉 이해관계자별 인식제고 필요성 ····· 45
〈표 Ⅲ-1-7〉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횟수 및 시간 ····· 46
〈표 Ⅲ-1-8〉 겸직여부에 따른 최근 1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횟수 및 시간 ····· 46
〈표 Ⅲ-1-9〉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유형별 대상(복수응답) ····· 47
〈표 Ⅲ-1-10〉 BC유형의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복수응답) ····· 48
〈표 Ⅲ-1-11〉 시설유형별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복수응답) ····· 48
〈표 Ⅲ-1-12〉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과 내용(복수응답) ····· 49
〈표 Ⅲ-1-13〉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사용한 교구(복수응답) ····· 50
〈표 Ⅲ-1-14〉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활용한 자료 ····· 51
〈표 Ⅲ-1-15〉 강의요청 기관의 요구사항 ····· 51
〈표 Ⅲ-1-16〉 현장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인식 ····· 52
〈표 Ⅲ-1-17〉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부담스러운 이유와 해소방안 ····· 53
〈표 Ⅲ-1-18〉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요도(N=183) ····· 54
〈표 Ⅲ-1-19〉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N=182) ····· 55
〈표 Ⅲ-1-20〉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인식개선 기여도(N=183) ····· 56
〈표 Ⅲ-1-21〉 제도 개선 필요 여부 ····· 57
〈표 Ⅲ-1-22〉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개선 필요영역 ····· 57
〈표 Ⅲ-1-23〉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의 적절성 ····· 58
〈표 Ⅲ-1-24〉 적절한 교육방법(복수응답) ····· 58
〈표 Ⅲ-1-25〉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 ····· 59
〈표 Ⅲ-1-26〉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해 개발 및 지원될 부분 ····· 59

〈표 Ⅲ-1-27〉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 60
〈표 Ⅲ-2-1〉 응답자 현재 직위(복수응답) ····· 61
〈표 Ⅲ-2-2〉 응답자 일반적 특성(N=256) ····· 62
〈표 Ⅲ-2-3〉 기관의 장애인 구성원 및 경험 ····· 63
〈표 Ⅲ-2-4〉 기관 유형 ····· 64
〈표 Ⅲ-2-5〉 기관에서 받고 있는 장애 관련 법정의무교육(복수응답) ····· 65
〈표 Ⅲ-2-6〉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필요성(N=256) ····· 65
〈표 Ⅲ-2-7〉 기관 유형별 법정의무교육 필요성 평균비교 ····· 66
〈표 Ⅲ-2-8〉 최근 1년간 진행한 교육 현황 ····· 67
〈표 Ⅲ-2-9〉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복수응답) ····· 68
〈표 Ⅲ-2-10〉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복수응답) ····· 68
〈표 Ⅲ-2-11〉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섭외 경로(N=256) ····· 69
〈표 Ⅲ-2-1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섭외 예산계획 ····· 69
〈표 Ⅲ-2-1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애인식개선에 전반적인 도움 정도 ····· 70
〈표 Ⅲ-2-14〉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도움순위 ····· 71
〈표 Ⅲ-2-15〉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 조사 여부 ····· 72
〈표 Ⅲ-2-16〉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과정 만족도 ····· 72
〈표 Ⅲ-2-17〉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내용 만족도(N=74) ····· 73
〈표 Ⅲ-2-18〉 교육방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내용 만족도 비교 ····· 74
〈표 Ⅲ-2-19〉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N=256) ····· 74
〈표 Ⅲ-2-20〉 기관 유형별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비교 ····· 75
〈표 Ⅲ-2-21〉 교육방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 비교 ····· 76
〈표 Ⅲ-2-22〉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 ····· 77
〈표 Ⅲ-2-23〉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적정 횟수 ····· 78
〈표 Ⅲ-2-24〉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적정시간 ····· 79
〈표 Ⅲ-2-25〉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유형(복수응답) ····· 80
〈표 Ⅲ-2-26〉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과 내용(복수응답) ····· 81
〈표 Ⅲ-2-27〉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제도 인식 정도 ····· 82
〈표 Ⅲ-2-28〉 이해관계자별 인식제고 필요성(N=183) ····· 83
〈표 Ⅲ-2-29〉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시 어려움 ····· 84
〈표 Ⅲ-2-30〉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 ····· 84
〈표 Ⅲ-2-31〉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해 개발 및 지원될 부분 ····· 85
〈표 Ⅲ-2-32〉 강사 및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가 제시한 기타의견 ····· 86
〈표 Ⅳ-1-1〉 강사 대상 초점집단면접 질문내용 ····· 90
〈표 Ⅳ-1-2〉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질문내용 ····· 91
〈표 Ⅳ-1-3〉 장애인식개선 강사 연구참여자 특성 ····· 93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Ⅳ-1-4〉 장애인식개선 의무기관 담당자 연구참여자 특성 ····· 93
〈표 Ⅳ-2-1〉 강사 대상 FGI 범주화 ····· 95
〈표 Ⅳ-2-2〉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FGI 범주화 ····· 101
〈표 Ⅳ-4-1〉 Kirkpatrick Model의 용어 ····· 111
〈표 Ⅳ-4-2〉 Kirkpatrick Model의 4단계 적용 측정지표 선행연구 ····· 112
〈표 Ⅳ-4-3〉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 현황 ····· 113
〈표 Ⅳ-4-4〉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 ····· 114
〈표 Ⅳ-4-5〉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 118
〈표 Ⅳ-4-6〉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 120
〈표 Ⅳ-4-7〉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표조정 현황 ····· 122
〈표 Ⅳ-4-8〉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 124
〈표 Ⅳ-4-9〉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 126
〈표 Ⅳ-4-10〉 최종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 128
〈표 Ⅴ-1〉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이해교육 내용 비교 ····· 143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 수행 절차 ····· 9
[그림 Ⅱ-1]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 ····· 11
[그림 Ⅳ-1]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절차 ····· 108
[그림 Ⅳ-2] Kirkpatrick 모델 ····· 110
[그림 Ⅴ-1] 장애인식개선 중장기 로드맵 ····· 132
[그림 Ⅴ-2] 외국의 체험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 ····· 135
[그림 Ⅴ-3] 미디어 출연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효과 사례 ····· 138
[그림 Ⅴ-4] 문화가 있는 날 ····· 139
[그림 Ⅴ-5] UN CRPD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 견해 중 장애인식 제고 권고 사항 ····· 141
[그림 Ⅴ-6] 장애인식개선 문화 활동 사례 ····· 146
[그림 Ⅴ-7]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 148

연구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제도로서 시행된 지 16년을 맞는 시점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향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수행기관과 강사, 교육 대상, 교육내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제고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시급함.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절차

1)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실 있는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유사 법정의무교육의 운영체계를 파악하고 교육 운영 실태조사 및 교육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을 위해 문헌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실태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성과지표개발 등을 실시함.

2) 연구 절차

○ 본 연구는 크게 6단계로 진행함.

- 1단계: 문헌조사·분석 및 정리
- 2단계: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초안 개발 후 전문가 자문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
- 3단계: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및 의무교육 대상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 4단계: FGI 실시 및 분석(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자 대상 2개 그룹 초점집단인터뷰)

- 5단계: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2차 설문)
- 6단계: 단계별 발전방안 수립

Ⅱ.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1.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분석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교육과 제도적으로 유사한 법정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운영 제도를 비교 분석함.
- 내용적으로 유사한 교육: 인권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이해교육
- 제도적으로 유사한 교육: 폭력예방교육, 국민안전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2.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과 제도 비교

○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정책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과 교육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살펴봄.

○ 국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과 제도로는 대표적 국가인 영국, 독일, 미국의 관련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3.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관련 연구 동향

○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장애수용과 장애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장애수용과 장애인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성과적 차원에서 지표 개발을 한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한 모든 유사 교육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음.
-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이 아닌 타 분야에서 개발된 연구들을 고찰하고 참고하였음.

○ 국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경험 중심 교육', '형상교육', '평생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경험 중심 교육: 해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교육이 교실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함.

- 형상교육: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식개선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형상화 되어 장애인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해를 각인시키는 교육이 진행됨.
- 평생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분절되어 교육되는 한국의 현실과 달리 장애인식교육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체계화 되어 있고, 국민 모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해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Ⅲ.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1.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대상 설문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시스템에 등록된 강사(전문강사 110명, 소속강사 202명 총 31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89명(60.6%)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복수응답 및 부실자료에 대한 반복 점검을 통해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183개임.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고학력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은 45세이고, 67.8%가 겸직이 아닌 전업 강사이며, 63.9%가 장애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42.1%가 장애가 있음. 평균 강사경력은 5.9년이며, 인식개선 교육기관 소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교육횟수는 44.1회(월평균 3.7회)이며, 총 교육시간은 93.5시간(월평균 7.8시간)으로 나타남.

○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강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 평균값이 4.8에서 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의 평균점수가 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들이 최근 1년간 강의한 기관 유형은 B유형이 가장 많았고, C유형이 상대적으로 강의 빈도가 낮게 나타남. 응답 강사들이 실시한 교육방법은 대면 강의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내용은 장애인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법과 제도 및 자립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나타남. 사용하는 교구는 장애체험교구(46.8%)와 개발원에서 배포하는 교구(37.0%) 비중이 높았으나, 표준교안 사용 비중(48.1%)과 개발원 교육자료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에 대한 부담

으로 '바쁜 업무에 도움이 아닌 또 다른 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과반수 넘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응답자 중 32.2%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 적절한 교육횟수로는 과반수 이상이 연 2회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한 시간은 1시간~2시간이 가장 많았고, 10명 중 9명이 대면 강의식 교육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4점 중반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식개선에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발전을 위해 '교육 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2. 의무교육 대상기관 설문조사

○ 2022년 전국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가입기관명부를 표집틀로 사용함. 전국 기관 유형을 A, B, C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하위기관 유형별로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조사목적을 고려하여 각 집단규모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표본을 추출함. 최종 수집된 자료는 263개(131.5%)로 이 중 복수응답 및 부실자료에 대한 반복 점검을 통해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256개임.

○ 응답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유형이 67.6%(173개소)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 해당하는 B유형은 16.8%(43개소), 유아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C유형은 15.6%에 해당하는 40개소임.

○ 응답 기관에서 최근 1년간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이었으며,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8%로 높았고, 법정의무교육의 필요 인식정도는 A유형과 C유형이 B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실시한 교육방법의 경우, 대면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계획 중인 교육방법의 경우 대면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강사 섭외 현황은 지인추천이나 인터넷 검색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섭외하는 비율이 41.8%로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8.9%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교육과정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75.8%에서 63.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시간과 강의자료 및 교재, 교육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최근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경우 직원의 경우 모든 기관 월평균 2.6시간, 학생 및 유치원생의 경우 0.5시간인 반면, 희망교육시간의 경우 성인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유치원생 및 학생의 경우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현황과 희망시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또한 희망하는 교육횟수는 연1회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2.5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에 대한 교육 및 강의만족도와 긍정적 답변 비율이 다른 내용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교육방법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이 41.0%에 달함.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높게 나타났으나 관련법과 유사교육의 차이점, 접근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응답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재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은 4.3점에서 4.5점으로 높게 나타남.

Ⅳ.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

1.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및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Zoom) 접속을 통해 2차에 걸쳐 실시된 초점집단인터뷰(FGI)는 '유사법정의무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과의 비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방법 개선점',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짐. FGI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강사 대상 FGI 결과,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점은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식이며, 단점은 정보와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경우, 기존 효과성 측정의 한계로 연 1회 1시간 교육의 효과성 측정은 무의미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간단한 만족도 중심의 신뢰할 수 없는 효과성 조사방식과 동일 기업·기관의 지속적인 강사 초빙으로 인한 효과저하 등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의 경우, 장애당사자와 가족 및 의무교육기관의 장을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교육시간을 3-5회기로 확대, 강사양성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강점 중심 강사 관리 및 파견, 수준 높은 보수교육 필요, 교육관련 행정 및 강사비 일원화, 쌍방향 평가 필요 등으로 집약됨.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미디어 노출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필요로 범주화됨.

-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FGI 결과,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에서 유사한 교육내용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교육의 중요도가 떨어지며, 연령·대상 등 개별 교육과정 필요 등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경우, 영유아에게 매우 효과적인 반면, 법정의무교육의 피로감이 높아 인식개선에 도움이 안 되며,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교육에 노출된 이들에게 비효율적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실적관리 연계 필요, 인센티브 필요로 집약되었으며,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경험 중심 콘텐츠 개발, 관리자급 교육의 필요, 범교과학습으로 편성으로 범주화됨.

2. 교육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 문헌분석과 연구진 검토를 거쳐 개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명의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평가지표는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등 총 4개 영역에 총 39개의 지표로 구성됨.

- 반응평가(A)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교육 계획 및 운영, 몰입도, 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15개의 지표로 확정됨.
- 학습평가(B)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지식, 기술, 태도, 동기, 확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의 지표로 확정됨.
- 행동평가(C)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조직차원 변화, 개인차원 변화, 관련성,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개의 지표로 확정됨.
- 결과평가(D)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기여도와 효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개의 지표로 확정됨.

Ⅴ.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 제안

1. 단기 추진전략 및 과제

1.1. 장애인식개선 효과 검증을 통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1.2. 유아용 및 저학년용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1.3. 대상별, 연령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욕구조사 실시

1.4.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1.5. 강사양성과정 질적 고도화 및 표준화

1.6.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강사 역량강화

1.7. 강사 슈퍼비전 체계 마련

1.8. 장애인식개선 홍보전략 고도화

1.9. 장애공감주간 확대 운영

2. 중기 추진전략 및 과제

2.1. 교육 대상 확대 및 세분화

2.2. 유사교육 통합운영

2.3. 장애인식개선 실태 종단데이터 구축

2.4. 장애이해 학습인증제 도입

2.5. 강사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연계 플랫폼 구축

2.6. 강사 평가체계 고도화

2.7. 장애공감 문화조성 및 범국민 활동으로 확대

3. 장기 추진전략 및 과제

3.1. 장애인식개선 컨트롤 타워 구축

3.2.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3.3.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령기 범교과 과정으로 편입 추진

Ⅵ. 결론

○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장애 현상과 그로 인한 다양한 생활경험 속에 내재된 혐오와 차별 및 배제 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도입된 현행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됨.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며 결론을 맺고자 함.

○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유사한 장애이해교육을 통합하고,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장애당사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UN CRPD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 및 보건 그리고 다른 종사자 등을 포괄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으로 편입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되도록 점증적인 대상확대 노력이 요구됨.

○ 전문적인 강사 관리 측면에서 강사양성과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함. 이에 강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사항 점검 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임. 즉 강사인준기준과 교육교재 및 교구의 표준화를 통해 강사양성과 관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강사파견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사 섭외 및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앱개발 및 보급을 논의해 볼 수 있음. 이와 더불어 강사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활용되는 교육 교재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함. 강사양성 교재의 경우 최근 이슈와 장애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이론과 정책 및 제도를 깊이 있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강의교재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연령별, 기관별 특성이 다양하고 포괄적임을 고려하여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재로 재편되어야 함. 연령대를 고려한 교재·교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및 교안·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 교재의 고도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교육방법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은 유아부터 성인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상기관별 특성도 다양함. 따라서 단일한 교육방법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따름. 이에 강의형에서 체험형과 문화예술 공연 및 캠페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이 개발되고 적용된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넘어 장애공감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장애 현상과 그로 인한 다양한 생활세계 속에 내재된 혐오와 차별 및 배제 등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현행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과연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함.

- 우리 사회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지도 10년이 넘었음.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회적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됨. 이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에서의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 2015년에 일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의 교원 및 학생, 공공기관 및 단체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2017년 교육결과보고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와 교육 대상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강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는 위탁 교육기관과 강사 자격, 교육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전문강사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9년과 2020년 2회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1년부터는 발달장애인 강사 및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특별과정, 맞춤과정 등을 별도로 운영해 총 150여 명의 강사가 위촉되었음.
- 또한, 위촉된 전문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총 22개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인 흐름에 따라 교육 이행률은 2016년 19.4%에서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여(김대명, 2019)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던 2021년에는 92.8%에 이르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었음.

○ 한편 2017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하 직장 내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됨.

- 직장 내 교육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양성되고 위촉된 전문강사를 통해서만 교육 이수가 인정되도록 하고, 교육 결과보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가 법령을 통해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직장 내 교육의 대상은 2인 이상 모든 사업주이며, 50인 이상 사업체는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처럼 직장 내 교육의 의무적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이 일반 성인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음.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혹은 장애이해교육, 통합교육 등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임명희·양성희, 2008; 이대식 외, 2011; 정광조·김동일, 2017; 백상수·박영근, 2018; 고은정, 2020; 김미옥 외, 2021)이나 비장애인 피교육자의 장애인식 또는 태도 등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신순자 외, 2010; 목명화·최윤희, 2011; 임영심 외, 2013; 고웅규·박보람, 2013; 이바울·이성규, 2020), 또는 교육내용과 방향에 관한 연구(이대식·김수연, 2013), 강사의 교수효능감과 장애인권감수성(김남순·박환보, 2021)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고, 직장 내 교육과 관련해서는 개선점에 대한 질적 지표 개발 연구(박승희 외, 2022) 등이 학계 또는 현장 연구자들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

○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직장 내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실태 및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박자경 외, 2018),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백영은·유은주, 2021), 교육 실태조사(백영은, 2022), 인식 척도 개발 및 표준화 연구(이미지·지은, 2022), 교육 효과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이성규·이지항, 2022) 등이 진행되었음.

○ 또 다른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연구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연구(손병덕 외, 2008)와 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전동일 외, 2014)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처럼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공적 차원의 연구가 미비하더라도 2019년부터 배출된 150여 명의 전문강사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높은 교육이행률에 따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함.

○ 하지만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현장에서 실시한 각각의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인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아울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제 교육내용이 강사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현실임.

○ 물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23년에 강사들에게 배포한 〈표준교안〉이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발한 〈표준교안〉도 있어서 강사들이 이와 같은 표준교안에 토대를 둔 내용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실제 강의 내용 속에 이와 같은 〈표준교안〉이 어느 정도로, 또 어떤 수준과 범위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요구됨.

○ 2023년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제도로서 시행된 지 16년을 맞는 시점으로 법정의무교육으로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향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수행기관과 강사, 교육 대상, 교육내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제고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2) 교육 현장에서 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3) 실태조사의 결과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내용 및 절차

1)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실 있는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유사 법정의무교육의 운영체계를 파악하고 교육 운영 실태조사 및 교육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을 위해 문헌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실태조사,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GI),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한 성과지표개발 등을 실시함.

○ 이를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① 문헌연구

○ 국내외 차원에서 연구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현황 파악 및 교육의 효과성 검증과 국내 유사 법정의무교육 관련 평가지표 및 방법론, 활용사례 검토, 선행연구 검토 등 지표개발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함.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유사한 교육(인권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함.

○ 제도적으로 유사하게 운영되는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국민안전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의 교육운영제도를 분석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국내외 관련 법령(UNCRPD 포함) 및 제도 등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②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실태조사의 목적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소속강사와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 〈표 Ⅰ-1〉과 같음.

〈표 Ⅰ-1〉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강사: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및 2023년 3월 현재 교육기관별 소속 강사 전수조사 - 의무교육기관: 2022년 기준 전국 법정의무교육기관
표본크기*	- 표본 수: 총 439/502 (87.5%) - 강사: 183/302 (61%) - 의무교육기관: 256/200 (128%)
표집방법	- 비비례층화표본추출(Dis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조사방법	- 설문지 개발 및 온라인조사(구글폼을 활용하여 SNS 및 이메일 발송)
조사기간	- 2023년 7월 31일 ~ 8월 29일(30일)

* 표본 수: 실제 표본 수(a)/표집 규모(b) ([a/b]*100)

나. 설문지 개발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사교육 실태조사 및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정기적인 연구진 회의를 거쳐 설문지 초안을 완성한 후 장애인식개선 강사 및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학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1]를 검토하여 최종 설문지를 개발함.
- 설문 문항은 다음 〈표 Ⅰ-2〉와 같음.

1) 내용타당도는 검사문항이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느냐를 나타냄. 검사문항이 측정내용을 잘 대표한다면 그 검사문항은 내용타당도가 높은 것임. 내용타당도는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논리적 사고와 분석 과정을 통해 검사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함(Ribin & Babbie, 2001).

〈표 Ⅰ-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세부 문항	측정수준
강사 대상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장애여부와 정도 경력사항, 보유자격, 강사자격취득기관, 강사유형, 겸직여부, 장애관련 직무수행경험	명목 및 비율척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제도인식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제도 인식정도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 업무 종사자 인식제고 필요성	5점척도
	장애인식개선교육 경험	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대상(기관유형별/직원·학생별), 교육대상(일반기관/장애관련기관), 교육방법	비율 및 명목척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교육내용, 교육 시 사용하는 교구, 주된 활용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활용정도 기관의 요청사항, 현장의 교육에 대한 인식수준, 교육이 부담스러운 이유, 부담 해소방안	명목척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	교과별 중요도와 효과성, 교육의 인식개선 기여정도	5점척도
	제도개선	개선필요여부, 개선필요분야 교육의 적정성(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방법) 효과적인 운영방안, 발전방안. 강사역량강화 교육 자유의견	명목척도 개방형
기관 대상	일반적 사항	직위, 성별, 연령, 현기관 근속기간, 장애여부와 정도, 기관의 장애구성원 여부, 장애인과 근무경험, 기관유형, 지역	명목 및 비율척도
	교육현황	받고 있는 장애관련 법정교육과 필요성, 장애인식개선 교육횟수와 교육시간(1년간), 교육받은 인원(직원/학생), 진행한 교육방법, 계획중인 교육방법, 진행한 교육내용, 강사섭외경로, 강사섭외 예산계획여부	명목 및 비율척도
	교육효과	교육의 인식개선 도움 정도, 도움순위, 교육과정 만족도, 만족도 실시여부, 교육내용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통해 알게된 내용	명목 및 5점척도
	교육희망내용_운영방식	연간 희망 교육횟수와 시간, 교육방법, 강사유형, 교육내용	비율 및 명목척도
	장애인식교육 및 제도인식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제도 인식정도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 업무 종사자 인식제고 필요성	5점척도
	교육운영방안	교육진행 시 어려움, 효과적인 운영방안, 발전방안, 자유의견	명목척도 개방형

다. 표본설계

○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표집틀)

- 본 실태조사의 대상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법정의무교육기관임.
- 강사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시스템에 등록된 강사(전문강사 110명, 소속강사 202명 총 31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

- 법정의무교육기관의 경우 2022년 전국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가입기관명부를 표집틀로 사용함.

○ 표본추출방법

- 법정의무기관에 대한 표본추출방법은 비비례층화표본추출(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을 활용함.[2)]
- 모집단을 층화하기 위한 변수는 기관 유형이며, 전국 기관 유형을 A, B, C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하위기관유형별로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조사목적을 고려하여 각 집단규모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표본을 추출함.
- 표본추출 과정과 표본규모는 〈표 Ⅰ-3〉과 같음.

〈표 Ⅰ-3〉 법정의무기관 표본추출 과정 및 표본규모

(단위: 명, %)

2022년 의무 기관 현황			표본규모			표본설계(가중치 적용)		
유형	기관유형	총계	비율	X 2.0	기관별 할당	비율	X 2.0	기관별 할당
전국		45,469	100	200	200	100	200	200
A	A 소계	2,488	6	12	12	50	100	100
	국가기관	1,077	2	5	5	17	34	34
	지자체	920	2	4	4	15	30	30
	공공기관	333	1	2	2	10	20	20
	지방공사공단	152	1	1	1	8	16	16
	특수법인	6	0	0	0	0	0	0
B	B 소계	12,428	27	54	54	30	60	60
	초등학교	6,144	14	27	27	14	27	27
	중학교	3,242	7	14	14	7	14	14
	고등학교	2,363	5	10	10	5	10	10
	특수학교	194	0	1	1	1	3	3
	대학교	413	1	2	2	2	4	4
	각종학교	72	0	0	0	1	2	2
C	C 소계	30,553	67	134	134	20	40	40
	어린이집	27,153	60	119	119	15	28	28
	유치원	3,400	7	15	15	5	12	12

2) 이 방법은 모집단을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누고, 모집단에서 각 층이 차지하는 크기의 비율을 조정하여 특정 소집단의 표본수가 지나치게 작아지지 않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크기를 정하는 방법임(Ribin & Babbie, 2001).

라. 자료수집

- 자료수집은 개발된 설문문항을 구글폼으로 전환하여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문링크를 설문지와 함께 전송 후 회신을 받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짐.[3)]
- 조사대상자에게는 연구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해 고지하고, 설문에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함.
-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응답률을 확인하며 이메일과 문자 및 전화응대를 통해 응답을 독려함. 다만, 기관 소속강사의 경우 직접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 전수조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 최종 수집된 자료는 강사 189(60.6%), 기관 263(131.5%)개로 총 452개이며, 이 중 복수응답 및 부실자료에 대한 반복 점검을 통해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강사 183개, 기관 256개로 총 439개임.
- 총 439 응답자에 설문조사 사례로 모바일 기프티콘(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휴대전화번호 중복으로 총 438개를 발송함.

마. 자료분석 및 해석

- 회수된 자료에 대한 자료확인 및 재코딩 작업을 통해 최종 확정된 자료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 분석방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 및 집단별평균비교를 통해 빈도, 비율, 평균 및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여 제시함.

③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절차를 수행함.

-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및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 예비문항 도출
- 델파이 조사(Delphi Method) 실시 및 평가지표 문항 도출
- 도출된 문항들에 대한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 확인 및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평가지표 개발

3) 조사단계에서 주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 참여 독려를 위한 공문과 참고용 조사표, 설문응답링크를 함께 발송함. 단, 일부 설문링크에 응답하지 않고 참고용으로 발송한 조사표에 직접 응답사항을 기입하여 메일로 보내온 경우가 있었음. 강사 3개, 기관 1개로 총 4개의 응답을 조사가 종료된 후 연구진에서 추가로 입력함.

2) 연구 절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다음 [그림 Ⅰ-1]과 같이 총 6단계의 연구 절차를 수립하여 단계별로 수행함.

절차	연구방법	연구내용
1단계	문헌조사·분석 및 정리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교육 비교분석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과 제도분석 시사점 도출
⬇		
2단계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문헌분석 결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인식, 교육내용, 효과, 제도 개선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설문 문항 도출 설문지 초안에 대한 내적타당도 검증 설문지 확정
⬇		
3단계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및 의무교육 대상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구글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SPSS를 활용한 분석 실시
⬇		
4단계	FGI 실시 및 분석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실시 및 분석 평가지표 예비문항 도출
⬇		
5단계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실시 평가지표 문항 도출 내적타당도 및 요인분석 실시 평가지표 개발
⬇		
6단계	발전방안 수립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 도출

[그림 Ⅰ-1] 연구 수행 절차

Ⅱ.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1.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분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교육대상자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존중의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식개선교육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의 업태와 근로자의 인원에 따라 5대 법정의무교육과 8대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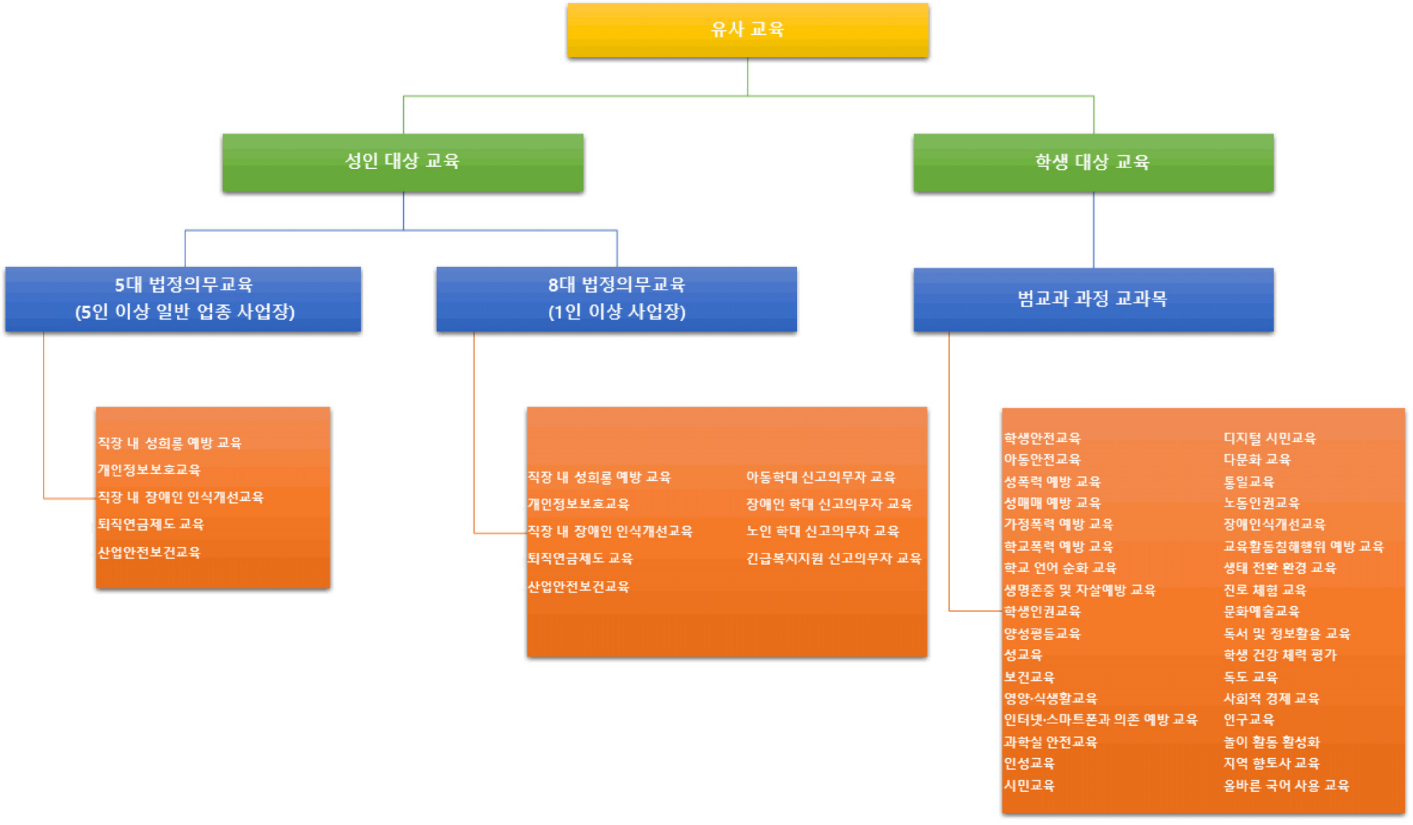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 업종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대표자 외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앞선 5대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실시해야 함.

○ 반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범교과 과정으로 진행되며, 주제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창체, 창체+창체 간의 통합 지도가 각급 학교의 실정에 따라 운영됨.

- 범교과 과정의 교과목은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학생안전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인권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33개 교과목으로 정해져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교육과 제도적으로 유사한 법정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운영 제도를 비교 분석함.

- 내용적으로 유사한 교육으로는 인권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이해교육으로, 제도적으로 유사한 교육으로는 폭력예방교육, 국민안전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으로 추렸음.



[그림 Ⅱ-1]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표 Ⅱ-1〉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운영 제도 비교

구분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적 유사 교육			제도적 유사 교육		
		인권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이해 교육	폭력예방 교육	국민안전 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등 교육별로 다름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구 국가정보화 기본법)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 대상	법 제25조 제2항	훈령 제375호 제5조	법 제5조의2 제6항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따라 교육 대상이 다름	법 제10조 ~제13조	법 제54조 제2항
교육 내용	시행령 제16조 제3항	훈령 제375호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등 교육별로 다름	-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강사 자격기준 및 양성	법 제25조 제7항	훈령 제375호 제2조 제4항	시행규칙 제4조의5 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름	법 제2조 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7
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 제25조 제7항	훈령 제375호	법 제5조의2 제7항	-	-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
교육 기관	법 제25조의2 제3항	훈령 제375호	법 제5조의3 제1항	-	-	법 제15조 제1항	-
교육 정보 플랫폼 유무	유	유	유	-	유	유	유

1)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제25조의2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대상, 강사양성 체계, 교육 내용, 교육기관의 위탁 운영 등에 대해 정하고, 세부 사항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명시하고 있음.

- **교육 대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5조 제2항)
- **교육 내용:**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제25조 제7항)
- **교육 정보 플랫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25조 제8항)
- **교육기관 위탁 운영:**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제25조의2 제1항)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제25조의2 제3항)
- **교육 정보 플랫폼:**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https://www.able-edu.or.kr)

2) 인권교육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하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대상, 강사양성 체계, 교육 내용, 교육기관의 위탁 운영 등에 대해 정하고, 세부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375호 통해 명시하고 있음.

- **교육 대상:** 공공 영역인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군 · 경,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분야, 학교 영역인 영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 시민 영역인 장애, 노인, 이주, 아동 ·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업, 언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5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375호 5조)
- **교육 내용**: 인권 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 태도 ·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
-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과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합교육과정으로 '인권강사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과 '전문교육과정' 및 '법정의무과정'을 두며, 각 과정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시에 위원회는 인권교육 관계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러닝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함.
    1. 인권강사과정: 인권교육 분야별로 인권보호 역량을 보유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
    2.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인권교육 분야별로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등을 통하여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과정
    3. 전문교육과정: 인권교육 분야별로 인권에 기반한 업무추진방안 등 직무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과정
    4. 법정의무과정: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을 위원회가 운영하기로 정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 과정
- **강사 자격 기준:** 학계, 법조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경력 10년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인권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저술 경력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375호 제2조 4항)
- **교육 운영:**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375호 제5조에 따라 인권교육운영과장은 인권교육기획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 조정 및 총괄한다. 다만, 군인권교육에 대하여는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수립함. 〈단서신설 2022. 6. 21.〉
    1. 인권교육과정 종합운영계획 및 평가
    2. 인권강사과정 운영
    3. 대상별 · 주제별 인권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 기관:**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지역별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정은 사무처

교육운영부서에서 담당함.

1. 인권교육기획과장 · 인권교육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개정 2021. 3. 15.〉
2. 부산인권사무소장: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 광주인권사무소장: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4.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5. 대전인권사무소장: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 강원인권사무소장: 강원도
7. 제주출장소장: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 정보 플랫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통해 의무적 교육 이행과 교육 대상, 강사 자격기준, 교육기관 위탁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명시하고 있음.

- **교육의 목적:**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5조의2 제1항)
-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5조의2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5조의2 제6항)
- **교육 내용:**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강사 자격기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함.(제5조의2 제4항) 법 제5조의2 제4항 및 제5조의3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함.(시행규칙 제4조의5 제1항)
- **교육 교재 개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제5조의2 제7항)

- **교육기관 위탁 운영:**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음.(제5조의3 제1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제5조의3 제3항)
- **교육 정보 플랫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

4) 장애이해교육

○ 장애이해교육은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등의 법적 근거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 실시됨.

- **교육 대상:**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 함에 있어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교육 내용:** 장애인들을 돕고 이해하는 법을 넘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장애 이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가지면서 타인과 같고 다름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그 안에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1항에 의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 폭력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근거하여 실시.

- **교육의 목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 **교육 별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교육이 진행되며, 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음.

1. 성희롱예방교육: 국가기관
2. 성매매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고등학생
3. 성폭력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단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4. 가정폭력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초·중·고·대학생

- **교육 내용:** 각 개별법에서 정한 교육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관심 제고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사례 중심, 사건 대응 절차 등으로 교육이 구성될 수 있도록 권장 각 교육별 내용은 아래 각호와 같음.

1. 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근거해 ①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②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③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⑤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근거해 ①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②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③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근거해 ①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②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③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 ⑤ (아동·청소년이 교육 대상인 경우)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4.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에 근거해 ①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⑤ (아동이 교육 대상인 경우)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 **교육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 강사, 일반강사 등
- **교육 방법:**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실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집합교육 권장하며,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 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통합교육 내용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하되, 2차 피해 방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등도 진행될 수 있음. 통합교육 시간은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

육 시간과 동일(공공기관종사자연4시간 이상, 초등·대학생 연 2시간 이상, 중·고생 연 3시간 이상 등)하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재구성하여 교과+창체, 창체+창체 간에 적극적으로 통합 교육이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운영한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

- **교육 정보 플랫폼:**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shp.mogef.go.kr)

6) 국민안전교육

○ 국민안전교육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법의 전반에서 국민안전교육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교육의 시행,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교육 대상:** 각급 학교의 교육대상자(제10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제11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제12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자.(제13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강사):**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함.(제2조 2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0조 제2항)
-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 · 보급하여야 함.(제1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 · 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제14조 제2항)
- **교육기관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15조 제1항)
- **교육 정보 플랫폼:** 행전안전부 국민안전교육플랫폼(https://kasem.safekorea.go.kr)

7)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인터넷 중독 발생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2013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의거해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하였고, 2022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시행을 통해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확대 실시.

- **교육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 서비스의 과의존으로 인한 중독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행.

- **교육 내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① 스마트폰·인터넷 시대로의 변화 과정 이해, ②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 점검 및 문제점 확인, ③ 과다 사용을 막고, 선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익히고 활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에 근거해 예방교육을 실시함.
- **예방교육 전문인력(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7에 따라 양성.
- **교육 정보 플랫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https://www.iapc.or.kr)

2.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과 제도 비교

1)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정책 동향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르면 전체 등록 장애 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 1인 가구,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 증가 등 장애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음(특히, 고령의 장애인 1인 가구가 증가).

- 국제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은 수동적 보호에서 능동적 참여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 개념 역시 기존의 의학적·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로 확장되는 추세임.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추진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따라 평등, 차별금지, 사회참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함.
- 주요 추진과제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차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추진’,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실시기관 및 대상별 교육콘텐츠 개발’, ‘지정교육기관 · 전문강사 확대 및 양성체계 내실화 지원’, ‘장애공감주간(12.1 ~ 10) 프로그램 다양화 및 국민 참여기회 확대’를 제시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를 위해 2021년 86%였던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을 2023년에는 94%, 2027년에는 100%로 높이겠다는 성과목표를 수립함.

○ 교육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통해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라 교육 약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기본 방향임을 확인함.

- 교육 약자들을 위한 미래교육 전환 시대와 맞물려 교육수요자의 맞춤형 교육의 확대를 목표로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고 통합교육(장애와 비장애 통합)과 장애인 권리를 국제적 기조(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를 반영하여 보편적 학습설계 가치를 교육계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국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과 제도 및 주요 프로그램 비교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장애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해야 함.

○ 미국과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애 관련 교육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독일 및 미국의 관련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1) 영국

○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평등(equal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을 근거로 교육정책개발 및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해 옴.

○ 영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포용력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기 위해 실시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등을 다루고 있음.

○ 1995년 제정된 영국의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후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에서는 '장애' 개념의 범주가 확대되고 법률이 규정하는 차별의 영역도 확대되면서 간접차별 개념이 추가로 도입되었으며, 직접차별을 금지하는 영역도 더욱 확대됨.

- 특히 장애인식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s)의 의무 조항으로, 평등법은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직업이나 고용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합리적 조정'을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률에 합리적 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한편 장애인식교육과 관련하여 평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인 '평등 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가 발행한 평등법 안내서에서는 '합리적 조정'의 사례로 장애인식교육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음.

- 이 안내서에 소개된 사례는 '합리적 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매니저에 대한 특별교육

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청각장애인식 교육 등으로 평등법의 '합리적 조정'에는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도 포함됨.

- 또한 평등법은 고용주로 하여금 장애인식을 포함하여 평등과 차별금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관련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만약 고용주가 합리적 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불법적인 차별을 한 것이고, 장애인근로자는 노동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갖게 되며, 기업체에서 장애 차별이 발생할 경우, 기업체의 담당자들이 장애인식교육을 이수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고용주는 합리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갖게 됨.

○ 영국의 경우 장애차별법과 평등법에서 '합리적 조정' 의무를 강조하고 장애인식교육이 '합리적 조정'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매우 다양함.

- 많은 민간 혹은 준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다양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기관으로 Centre for Accessible Environments(London), Churchill, Minty & Friend Limited(London), Capability Scotland-Training and Consultancy(Edinburgh), Equo Ltd.(Lowestoft) 등이 있음.

○ 영국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장애인 환자 환영하기(Welcoming Patients with Disabilities)' 프로그램이 대표적임.

- 이 프로그램은 보건부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직원들을 대상으로 함.
- 이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 환자를 환영하는 방법(Welcoming Patients with Disabilities)'으로, 개인이 아닌 국가보건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진료기관에서 신청을 함.
- 신청인원은 최소 5명, 참가비는 1인 당 13.50파운드로, 교육 참가자는 보건부에서 마련한 교재를 우편으로 받아 스스로 학습한 후, 전화로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하면 합격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재를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기간은 8주이며, 학습교재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식', '장애와 법',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으로 구성됨.
- 학습 기간이 끝나면 자동응답 전화테스트를 실시하며, 전화를 통해 12개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9문제 이상 정답을 맞추면 합격하게 되고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음.

○ 영국 Suffolk 지역 Lowestoft에 위치한 'Equo limited'도 '온라인 장애인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원래 Suffolk 지방정부의 '장애아동을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Aiming High for Disabled Children Programme)'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교육 신청을 하

면 개별 계정을 발급받고, 인터넷 접속 후 온라인 교육을 받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됨.

- 주요 교육내용은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의 종류, 장애 차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객 혹은 동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 등으로, 교육내용은 교육 신청자가 속한 종사 분야에 맞추어 일부 조정이 되기도 하며, 교육을 받은 후 평가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음.
-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장애를 알아가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치아 체험, 골볼 체험, 장애인 볼링 체험, 휠체어 럭비 체험 등이 있다.

○ 영국의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은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함.

- 영국에는 유명한 장애인 예술단체들 즉, 캔두코(Candoco)와 카루셀(Carousel)과 같은 단체들이 있으며, 이 단체는 오랜 역사적 전통하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하여 활동하는 통합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 이처럼 영국은 국가가 표방하는 평등, 다양성, 포용성의 가치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학교평가체계, 교원연수 및 교원기준 등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장애학생을 위한 이해와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개선하는 바탕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과정 지침 및 각종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평가체계는 학교로 하여금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양하는 교육결과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기제가 됨.

(2) 독일

○ 독일은 2001년 사회법전 제9권(Sozialgesetzbuch IX), 2002년 장애인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함.

- 할당고용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했으며 중증장애인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대표와 통합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근로지원인 제도를 사회법전 제9권에 명문화하고 통합합의제도를 의무화함.
- 중증장애인들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고용증진을 위한 전국적 차원의 프로젝트들을 전개하기 시작함.

○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중 베트스팔렌 지역통합사무소가 실시하고 있는 청각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함.

- 이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근로자와 비장애인 직장 동료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서 보통 청각장애인 한 명과 비장애인 직장 동료 세 명이 함께 참여하며, 일반적으로 금요일 15시에서 시작하여 일요일 15시 30분까지 2박 3일간 호텔에서 진행되는데,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수어 연습,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청각장애가 읽고 쓰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사 혹은 작업장에서 서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등임.

- 이 프로그램은 베트스팔렌 지역의 통합사무소와 '청각장애인 통합연구소'(Institut für Qualifizierung und Beratung zur Integration hörgeschädigter Menschen, QUINT)가 함께 협력하여 준비하고, 세미나 운영 및 강의팀 자체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어통역사가 세미나 진행에 함께 참여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비용은 통합사무소가 숙박, 식사를 비롯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며, 참가자들은 75유로씩 초과업무 수당을 지급받음.

○ 독일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서 비롯됨.

- 독일 정부는 2006년 12월 제정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2007년 3월 서명하였고, 2009년 2월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후 2011년 6월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행안(案)을 수립하였는데, 이 실행안에는 장애인식 관련한 프로그램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
- 이 실행안에는 향후 10년 동안 장애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약 200여개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식 제고에 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를 살펴보면 장애인식개선 관련 로고 작성, 장애인식개선 관련 인터넷 플랫폼(www.einfach-teilhbaen.de) 개설, 전국적 캠페인 전개(Deutschland wird inklusiv), 기업을 위한 권고안 작성(장애인단체와 연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언론(대중매체) 활동 강화, 교육과정 · 문화(영화, 무대예술, 문학, 미술 등) 장애인식개선 활동 강화, 장애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Disability Studies) 활성화 등이며, 이 밖에도 주(州)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음.

○ 독일의 대표적인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은 체험형으로 이루어짐.

- 독일인 안드레아스 하이네케는 1988년 함부르크 붉은 창고에서 교육과 전시형태의 '대화 사회적 기업(Dialogue Social Enterprise)'를 설립하여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청각장애를 체험하는 전시 체험 교육을 제공하여, 연간 100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음.

(3) 미국

○ 1981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고용위원회에서는 사업주가 지닌 장애인 태도가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 시킬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풍차(Windmills)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풍차(Windmills) 프로그램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풍차(Windmills) 진행자 양성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풍차(Windmills) 프로그램의 참여식 교육방법은 기존의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강의방식의 교육방법보다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참여자들이 스스로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며,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음.

○ 풍차(Windmills) 프로그램은 총 10개 과정으로 교육대상과 상황에 따라 별도의 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의 소요시간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로, 풍차(Windmills) 프로그램 각 과정의 기본 개요 및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1과정과 제2과정은 참여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과정은 '공감(Empathy)'이라는 주제로 참여자들이 카드에 적힌 장애 상태대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공감을 높이는 것으로 구성됨.
- 제1과정의 목적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고용현장에서 과제수행과정에 장애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로 인하여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데 있음. 제2과정은 '경험 나누기(The story)'로 제1과정처럼 참여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이지만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한 가지씩 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과정의 목적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장애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나', '친척', '친구' 또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로 분류되어지며, 결국 장애문제는 타인이 아닌 '나', 또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
- 제3과정~제6과정은 고용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됨.
- 제3과정은 '소문(Rumor)'을 주제로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왜곡되고 과장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으로, 제3과정의 목적은 장애와 관련된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집단토의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임.
- 제4과정은 '장애와 직업(Profile)'으로 참여자들이 장애에 적합한 직업을 찾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장애유형과 직업유형을 매칭하게 되는데, 제4과정의 목적은 지금까지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업을 매칭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러한 매칭이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임.
- 제5과정은 '퀴즈(Disability: Fact or Fiction)'로 장애에 대한 객관식 질문을 통하여 사

업체의 채용 면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제5과정의 목적은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것임.

- 제6과정은 '장애 선택하기(Pick a Disability)'로,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장애유형을 선택하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제6과정의 목적은 장애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장애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지 못하거나' 그리고 '장애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임.
- 제7과정과 제8과정은 장애에 대한 참여자들의 질문이나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7과정은 '솔직한 질문(Ask it Basket)'으로 참여자들이 평소 장애에 대해 궁금하였으나 장애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장애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어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으로 제7과정의 목적은 장애에 대한 개방적 논의를 통하여 장애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잘못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임.
- 제8과정은 '만남(Encounter)'으로 장애인 패널을 구성하여 참여자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제8과정의 목적은 참여자들은 실제 장애인이 지닌 불편함을 알게 되며, 장애인과 대화하는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있음.
- 제9과정과 제10과정은 참여자들이 팀별로 나뉘어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제9과정은 '누구의 잘못(Whose Fault)'으로 가상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고용상황과 장애인근로자, 그리고 상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책임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제9과정의 목적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합리적 해결방법을 참여자들이 함께 찾는 데 있음.
- 제10과정은 '편의제공(Resonable Accommodation)'으로 각기 다른 장애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사팀, 생산팀, 교육팀 그리고 시설팀에서 어떤 준비를 하여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제10과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장애인근로자에게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참가자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방법을 알아보는 데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풍차(Windmills) 프로그램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상황을 중심으로 장애체험, 장애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야기, 장애와 직업 매칭, 장애인과의 대화, 장애와 관련된 문제해결, 장애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3.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관련 연구 동향

1) 국내 연구 동향

(1) 장애인식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뜻하며,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임(표준국어대사전).

○ 다시 말해, 인식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아는 작용, 즉, 외적·내적 경험을 반성하며 이를 자기의 지식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통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확한 정보나 지식에 따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음(홍미웅, 2009; 남선화, 2019; 서종철, 2023).

○ 이러한 인식의 개념을 통해 장애인식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교육 혹은 장애인과의 접촉(직접적인 관계) 경험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해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갖게 된 장애인에 대한 태도로 정리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이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 UN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선포한 후 제8조 인식제고 조항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대,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대중 인식개선 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한 후 2007년 법정의무교육에 장애인식개선이 도입됨(박승희 외, 2022).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며 교육대상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업주 등의 소속 직원 및 학생으로까지 확대됨(최웅선, 2018).

○ 이에 따른 장애인식과 관련해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특정 프로그램이 장애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7건) 혹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3건) 등으로 진행됨(이대식, 2013).

○ 또한 장애인식과 관련해 양적연구로 진행된 선행연구로는 인식의 개념에서 의미하고 있는 '태도'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판단하는 연구(김금순 외, 2010; 노승현·김민석, 2010; 고웅규·박보람, 2013; 박수경 외, 2021)들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장애수용태도 등으로 인식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박지원 외, 2010; 장지원·이양희, 2015; 정혜경·추연구, 2016; 마성룡·홍은경, 2018)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장애인권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장애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남선화, 2019), 장애인식 관련 척도를 활용한 연구(김계옥 외, 2002; 손병덕 외, 2008; 신가인 외, 2017; 김하늘·신현기, 2019) 등이 진행되어 왔음.

○ 2007년 이후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되었지만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부족으로 교

육내용과 강사 등의 전문성, 질적 수준, 효과성에 있어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함(김용탁 외, 2019).

(2) 장애이해교육

○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체제의 문제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장애이해교육은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통합교육으로 진행되며, 무엇을 줄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전환이 일어남(정용석, 2013). 장애의 관점이 객관주의에서 주관주의로 변화하며, 통합교육 환경하의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강좌 개발의 필요성(조주희, 2022)과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다 세밀하게 부연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음(이영미외, 2022).

○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서 장애이해교육의 효과(박윤아 외, 2021),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임효종 외, 2022) 및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의 효과(박명화 외, 2022)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확인됨.

(3)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교육 현장의 상황, 교육 강사의 경험 및 역량, 분야별 교육과정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음.

○ 교육 현장의 상황에 대해 김영숙(2021)은 장애학생을 위한 성(性)과 성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의 분석을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실제적이고 질적인 성교육프로그램개발과 성교육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음. 박초협(2022)은 상황중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잠재적 성폭력 위험 상황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성폭력 예방 거절기술 및 신고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고, 김희란(2022)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김양지영(2023)은 젠더기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교육 강사의 경험 및 역량과 관련해 박에스더(2021)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 진행된 성폭력 예방교육 교수 경험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 연구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시 필요한 교수 역량 및 전문성에 관한 연구(김유리 외, 2021)와 발달장애인 성교육을 위해 자료 및 교재의 필요성(표윤희 외, 2023)연구가 이루어짐. 그리고 유아 성교육에 있어 유아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아 성교육의 필요성 및 대처 방법(최효정 외, 2023) 등에 대한 연구가 확인되었음.

○ 분야별 교육과정은 교정기관의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3단계 교육(기본·집

중·심화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과 출소 후 교육 효과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연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강춘희 외, 2021)과 엘리트스포츠 영역의 법정의무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 도출을 목적(임다연 외, 2022)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보고되었음.

(4) 장애인 인권교육

○ 2009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된 이후 장애인 인권교육이 확산되는 기조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특정 연령층에 속하는 교육기관에 한정되어 교육이 진행됨(강경숙, 2022). 이러한 현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 관련 연구 또한 주로 학생들의 인권수용 감수성 혹은 강사 역량 요인 분석 등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게 됨.

○ 김남순(2021)은 장애인 인권 강사의 인권 감수성 영향 분석을 통해 강사의 역량이 강의 경험, 근무 경험, 학력, 가족 내 장애인 존재 여부 등의 기본적인 요인들과 함께 교육기관의 역량에 따라 강사의 수준 차이가 드러남.

○ 학교 현장에서 일반학생들의 장애 인권 감수성과 장애 수용 태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교사들의 장애 인권에 대한 태도 및 인권 감수성의 선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와 더불어 장애 학생을 자신과 대등한 인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쌍방향 지원이 필요함이 보고됨(손성화, 2021). 동시에 비장애 중학생의 정서지능 유형에 따른 장애 인권 감수성과 장애 학생 수용 태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서지능 유형별 교육방안과 장애 인권 및 수용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손성화, 2022).

(5) 장애발생예방교육

○ 장애예방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히 최근 3년 동안의 연구에서는 전무한 실정임. 다만,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1편의 학술연구(박철우 외, 2008)와 3명의 석사학위논문(문지원, 2008; 김은수, 2008; 박영아, 2008)에서 장애예방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박철우 외(2008)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의 대화를 통한 교육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실천 자신감의 영향에 대해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문지원(2008)은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장애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의 확대와 장애예방교육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음. 김은수(2008)는 장애인 강사를 통해 장애예방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장애인 강사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일회성 교육이 아닌 연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제언함.

○ 박영아(2010)는 장애예방교육 강사에 따른 교육 효과성 비교 연구를 통해 장애인 전문 강

사의 교육이 학교 교사에 비해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함.

(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된 이후 최근 3년 동안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학술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22년과 2023년에 발표된 연구 3편이 확인됨.

○ 신동희 외(2022)는 고령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수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고용환경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가지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박승희 외(2022)는 직장인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지표를 개발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오수경(2023)은 장애인고용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고용 비용 인식이 고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7)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의 효과성

○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조혜진, 2004; 고선아, 2005; 박경옥, 2008; 김민화, 2012; 임영심 외, 2013)과 관련해 꾸준히 진행됨.

○ 사회의 변화와 함께 통합교육이 시행되면서 통합교육이 장애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소이, 2014; 김현진, 2014; 윤길옥, 2014; 정광조, 2017)가 주로 이루어짐

○ 2018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의무화에 따른 대상자들의 장애 인식에 대한 탐구와 장애 수용 태도에 대한 연구(박지연, 2018; 박주영, 2018)들이 진행됨.

○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요인들에 대한 연구(김경국, 2019; 김하늘, 2019; 고은정, 2020; 이미아, 2020)가 이루어짐.

○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활성화되면서 현장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강사들의 교수 효능감 및 교수 역량(2021, 김남순)과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이은주, 2022)와, 발달장애 파트너 강사와의 동반 활동 경험에 대한 연구(이은정, 2023),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박승희 외, 2022)가 이루어짐.

(8) 효과성 검증 및 성과 지표 개발

○ 앞선 선행연구 동향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한 유사 법정의무교육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 연구가 아주 미비한 실정임.

○ 보대 객관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 장애인식개선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타분야에서 진행된 효과성 검증 혹은 성과 지표 개발 연구들을 참고함.

○ 김교현 외(2016)는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을 위해 현저성, 기분전환, 갈등, 내성, 금단, 재발 등의 요인을 기반으로 요인분석을 진행함.

○ 김국현 외(2021)은 고등학생 진로적응력 척도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진로 적응과 결정의 적합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의 관심, 호기심, 자신감 등의 요인들과의 신뢰도를 측정을 진행함.

○ 남상희 외(2021)는 한국판 노화인식 척도의 타당성 연구를 위해 노화인식, 노화태도, 정서경험 등의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 및 탐색&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상관관계 및 회귀 분석을 진행함.

○ 김영준 외(2021)는 진정성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를 위해 삶의 질,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성격 특성, 사회적 바람직성, 동기 용인과 정서 등의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기술분석을 진행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록 확인함.

○ 문태호 외(2022)는 소셜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 성별, 범죄, 세대, 빈부, 노사, 정치, 지역, 종교, 성소수자 등의 요인을 기반으로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함.

○ 박성주 외(2023)는 유아용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을 만하다고 느끼는 가치 요인과 자신의 능력 및 행동에 대해 확신하는 유능성 요인으로 척도를 구성해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진행함.

2) 국외 연구 동향

(1) 장애인식개선교육

○ 미국

- 1960년대 미국의 민권 운동을 통해 장애인 평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물결이 나타났고, 영국에서도 1972년 장애인 분리 반대 연합(Union of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의 선언으로 장애인 운동이 시작됨(Susan Baglieri 외, 2011).
-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기반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서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진행됨(Samuel R. Bagenstos. 2003)
- 2001년(6월) 국립 루이스 대학이 주최한 '교육에서 장애 연구:정책, 실천, 이론 주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국 컨퍼런스를 통해 정립된 학문적 내용들을 기반으로 미국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 모든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통합 교육 과정으로 주류 교육으로 편입됨

(Beckett, 2009).

- 교육 및 인식 캠페인을 통해 정부 및 비영리 단체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접근성(건물, 교통수단, 웹사이트 등) 등의 요구사항 강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과 연계, 장애인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의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능력을 강조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Booth & Ainscow, 2002).

○ 영국

-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통해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 교육,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강화 진행됨(Hepple, Bob. 2010).
- 작업프로그램 접근(Access to Work Program)을 통해 장애인이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으로, 장애에 따른 추가지원 및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제공(Social Science & Medicine, 2005).
- 디지털 접근성(웹사이트 및 디지털 서비스 등)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모든 사용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Ferri, Delia, and Silvia Favalli, 2008).
-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증진시킴.
-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캠페인이 실시됨.

○ 호주

-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을 통해 장애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접근성을 촉진(Basser, Lee Ann, and Melinda Jones, 2002).
- 장애인을 위한 국가 장애 전략(National Disability Strategy)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Maras & Brown, 2000).
-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를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개인화하고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회 및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McDougall et al., 2004).
- 공공시설, 교통수단, 디지털 서비스 등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Nowicki & Sandieson, 2002)
- 기업들은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여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도록 노력함.
-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권리를 보호받으며,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의 접근성과 장애인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정책과 지원에 대한 국가 장애 전략이 프로그램으로 수립됨.

○ 유럽
- 장애인 차별 금지 법률 제정을 통해 근로,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 UN(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를 기반해 유럽 국가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진행(Mittler, Peter, 2015).
- 공공시설, 교통수단, 디지털 서비스 등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Ann Leahy & Delia Ferri, 2022).
-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 진행(Vornholt, Katharina, et al, 2018).
-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이 실시
-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향상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포용 정책 진행(Hvinden, Bjørn, and Rune Halvorsen, 2003).
- 장애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유럽 국가들 간에서 다양한 국가별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음(Maritz, Alex, and Richard Laferriere, 2016).

○ 일본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기반해, 근로, 교육, 공공시설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Lindqvist, Rafael, and Kamal Lamichhane. 2019).
- 공공시설, 교통수단, 건물 등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진행됨.
-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Ang, M. C, 2017).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 그들이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Inagaki, Tomoyuki. 2021).
-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인식 캠페인이 실시됨.(Heyer, Katharina, 2000)

(2) 장애인식개선 국가별 현장 교육 현황 및 내용

○ 스코틀랜드 장애인식개선교육(Sandra Charles, 2005)
- 스코틀랜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를 통해 지역 기반 시설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음.

- 특별히 도서관 등을 활용해 장애 유형별 도서관 활용 방법에 대한 현장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함.
-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인들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장애 보조 장치 등을 활용해 체험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함.

○ 장애인의 완전 통합과 참여를 위한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는 일본(Kenji Kuno, 2009)
-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인식교육(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DAT)에서 장애평등교육(Disability Equality Training, DET)으로 전환 중임.
- DAT는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느냐'하는 관점이라면, DET는 '사회 구조의 벽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교육'을 의미함.
-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장벽의 의미를 파악하고 장벽을 없애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교육 프로젝트를 설계함.
- DET 훈련사를 5일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양성하여 장애평등교육을 실시함.
- DET 매뉴얼 시리즈를 출간함("DET Manual Series" (DET Manual Series: all are published by Utsusan Publications (Kuala Lumpur) No. 1. Liz Carr, Paul Darke and Kenji Kuno(2008), Training Them and Us: A Guide to Social Equality for Society. No.2. Kevin McLaughlin and Kenji Kuno (2008) Promoting Disability Equality: From Theory into Practice. No. 3. Sue Rickell, Yuko Yokotobi and Kenji Kuno (2008) Disability Equality and Inclusion: Making a Difference – DET Resource Book).

○ 호주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단기 캠프 프로그램(Danielle Moore, 2013)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단기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해 캠프를 진행함.
- 패럴림픽 및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을 강사로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함.
- 장애인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장애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함.
-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하여 인식개선의 효과성을 측정해 이후의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음.

○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장애인 학교의 날 프로그램(IPC, PSDP: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Paralympic School Day Program) (Cathy McKay, 2013)
-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2004년 PSD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럽에서 진행하기 시작함.
- 장애 청소년의 삶과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패럴림픽의 이상과 가치를 스포츠

활동에 담아 시행함.
- PSD 프로그램은 성취에 대한 존중, 개인차에 대한 존중과 수용, 인권 존중,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됨.
- 주요 실행 프로그램으로 좌식배구, 휠체어 농구, 레슬링, 장애인 올림픽 선수들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됨.

○ 미국의 포용적 교실 운영(Cecelia Williamson, 2014)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본 학제에 편입되어 포용적 교실이라는 과목으로 운용됨.
- 장애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각 장애 유형별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과 교재가 마련되어 교육이 진행됨.
-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학제 교육을 바탕으로 인식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장애인식개선교육(Lisa Padden & Carol Ellis, 2015)
-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for Instruction, UDI)을 접목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평생학습을 활용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훈련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진행함.

○ 키프로스의 어린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Simoni Symeonidou & Eleni Loizou, 2018)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접목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음.
- 공연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함.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어린이 토론회를 진행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장애인인식 프로그램(Disability-awareness program) (Sandy Heyman, 2020)
- 인종 문제에 가려진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임상 전문가(Clinicians in disability awareness)를 양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함.
- 남아프리카 장애인 권리 운동(DRM: The South African Disability Rights Movement)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수법을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능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가 개발됨.
- 양성된 임상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토론을 기반한 장애 보조 장치들의 체험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3) 국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소결

○ 경험 중심 교육

- 해외 국가들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교육이 교실이 아닌 장애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됨.
- 법적 근거에 기반해 교실보다는 장애인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 직접적인 경험이 배움으로 쌓이고, 삶의 방식으로 체화되도록 돕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장애인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모순의 확인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 캠프와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형상교육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영·유아시기부터 노년까지 분절 교육이 아닌 연속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해 사회 전체 구조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의식이 담긴 사회로의 구조화를 꿈꾸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됨.
- 장애인식개선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사회 내에 구조화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사회 가치 기준으로 형상화 되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각인시키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찾아가려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됨.
-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가치 구조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형상화 되어 사회 무의식으로 존재하게 되어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의 지향을 꿈꿀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됨.

○ 평생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대상별, 상황별로 분절되어 교육되는 한국의 현실과 달리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방침에 따라 체계적인 커리큘럼 하에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게 됨.
- 특정 대상들만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아닌 국민 모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자로 여겨져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 각계각층이 콜라보를 통한 크로스 오버 프로그램이 운영됨
-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인문, 과학,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교육과 함께 녹여져 진행됨.
- 특별히 장애인 운동선수, 예술가 등을 강사로 활용해 장애에 대해 현실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사회가 장애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노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게 됨.

4.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에 대한 소결

1)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분석

○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범교과 과정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내용적·제도적으로 유사한 교육을 추려 분석함.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교육으로는 인권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이해교육이 해당되었음.

- 이들 교육은 장애를 비롯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교육의 목적에서 유사성을 보임.
- 그러나 인권교육의 경우 장애인의 인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장애인의 고용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반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제도적으로 유사한 교육으로는 폭력예방교육, 국민안전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이 해당되었음.

- 이들 교육은 내용적 측면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다른 분야이지만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운영되는 방식 등 제도적 측면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폭력예방교육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의 경우 교육내용이나 강사 자격기준 및 양성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각 교육의 추진 근거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기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민안전 교육의 경우에는 추진 근거 법령을 통해 교육대상부터 교육기관 운영 등에 대한 사항들을 대부분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과 제도 비교

○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정책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따라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함.

○ 한편, 교육부에서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교육약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기본 방향으로 두고 있음.

○ 영국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특징은 국가 차원의 평등과 다양성, 포용성

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부의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 도모를 위한 교육이 제공됨.

○ 독일의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중 베트스팔렌 지역통합사무소의 청각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직장 동료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으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81년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고용위원회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Windmill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상황을 중심으로 장애체험, 장애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야기, 장애와 직업 매칭, 장애인과의 대화, 장애와 관련된 문제해결, 장애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3)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관련 연구 동향

○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관련 연구 동향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발생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각각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교육들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 그리고 본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효과성 검증 및 성과 지표 개발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

- 각 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장애수용과 장애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장애수용과 장애인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성과적 차원에서 지표 개발을 한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한 모든 유사 교육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음.
-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이 아닌 타 분야에서 개발된 연구들을 고찰하고 참고하였음.

○ 국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경험 중심 교육', '형상교육', '평생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경험 중심 교육: 해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교육이 교실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함.
- 형상교육: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식개선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형상화 되어 장애인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해를 각인시키는 교육이 진행됨.

- 평생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분절되어 교육되는 한국의 현실과 달리 장애인식교육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체계화 되어 있고, 국민 모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해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Ⅲ.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1.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대상 설문조사

1) 일반적 특성

○ 응답자 183명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별 분포는 남자 36.1%, 여자 63.9%이며, 학력수준은 학사학위자가 49.2%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 41.0%, 전문학사 졸업 5.5%, 고졸과 기타가 각각 2.2% 순으로 나타나 고학력 비중이 상당히 높음.
- 연령대의 경우 40대가 31.5%로 가장 많았고, 50대 29.5%, 30대 25.1%, 60대 8.2%, 20대 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5세로 나타남.
- 지역 분포에서 응답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가 29.0%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4%, 대구 12.0% 순이었으며,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가 각각 1.1%로 응답자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강사와 다른 일과의 겸직여부에 대해 67.8%가 겸직이 아닌 전업 강사였으며, 장애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험에 대해 63.9%가 있다고 응답함.

〈표 Ⅲ-1-1〉 응답자 일반적 특성(N=183)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66	36.1	거주지역	서울	53	29.0
	여자	117	63.9		부산	10	5.5
학력	고졸	4	2.2		대구	22	12.0
	전문학사졸	10	5.5		인천	8	4.4
	학사졸	90	49.2		광주	2	1.1
	대학원졸	75	41.0		대전	4	2.2
	기타	4	2.2		울산	3	1.6
연령대	20대	11	6.0		세종	4	2.2
	30대	46	25.1		경기	43	23.4
	40대	57	31.1		강원	3	1.6
	50대	54	29.5		충북	2	1.1
	60대	15	8.2		충남	2	1.1
	평균연령: 45세				전북	2	1.1
겸직여부	네	59	32.2		전남	6	3.3
	아니오	124	67.8		경북	6	3.3
장애관련 직무	있음	117	63.9		경남	11	6.0
수행 경험	없음	66	36.1		제주	2	1.1

○ 응답자의 장애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가 있는 경우가 42.1%이며 57.9%가 장애가 없다고 응답함.
-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주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2.3%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 14.3%, 뇌병변장애 13.0%, 청각장애 5.2%, 자폐성장애 2.6%, 신장장애와 지적장애가 각각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응답자의 85.7%가 심한장애라고 응답함.

〈표 Ⅲ-1-2〉 응답자의 장애 관련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여부	있음	77	42.1
	없음	106	57.9
	합계	183	100.0
장애유형	지체장애	48	62.3
	뇌병변장애	10	13.0
	시각장애	11	14.3
	청각장애	4	5.2
	신장장애	1	1.3
	지적장애	1	1.3
	자폐성장애	2	2.6
	합계	77	100.0
장애정도	심한장애	66	85.7
	심하지않은장애	11	14.3
	합계	77	100.0

2) 강사 관련 특성

○ 응답자 183명의 장애인식개선 강사 경력은 38.3%가 5년 이상~10년 미만이었으며, 3년 이상~5년 미만이 25.1%, 3년 미만 19.7%, 10년 이상~20년 미만 15.3%, 20년 이상이 1.6%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강의경력은 5.9년임.

〈표 Ⅲ-1-3〉 응답자 강사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인식개선 강사 경력	3년 미만	36	19.7
	3년 이상 ~ 5년 미만	46	25.1
	5년 이상 ~ 10년 미만	70	38.3
	10년 이상 ~ 20년 미만	28	15.3
	20년 이상	3	1.6
	평균경력: 5.9년		

○ 응답자의 자격 현황 및 강사 유형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대한 복수응답 조사 결과, 응답자 중 148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자격이 56명, 평생교육사 42명, 장애인재활상담사가 14명 특수교사 4명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 강사 자격을 취득한 기관에 대한 복수응답 조사 결과, 116명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04명, 민간기관 76명, 기타기관 25명 순임.
- 응답자가 활동하는 강사 유형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인식개선 교육기관 소속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강사 94명, 무소속 강사 33명, 내부 강사 19명, 기타 4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Ⅲ-1-4〉 응답자 자격 현황 및 강사 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보유자격	사회복지사	148	81.3
	평생교육사	42	23.1
	특수교사	4	2.2
	장애인재활상담사	14	7.7
	기타	56	30.8
	합계	264	145.1
인식개선 강사 자격 취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116	63.4
	민간기관	76	4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4	56.8
	기타	25	13.7
	합계	321	175.4
강사 유형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강사	94	51.4
	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	115	62.8
	내부강사	19	10.4
	무소속강사	33	18.0
	기타	4	2.2
	합계	265	144.8

3)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제도 인식

○ 응답자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문항의 평균값이 5점 만점 4.3점에서 4.8점까지 매우 높게 나타남.

- 항목별 인식 수준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이 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의 인권' 4.7점,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이해'가 각각 4.6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와 '접근성의 개념과 범위' 및 '유사 교육의 차이점'이 각각 4.5점, '장애인 관련 법' 4.3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5〉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제도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평균
장애인에 대한 이해	0	0	4 (2.2)	37 (20.2)	142 (77.6)	4.8
장애인의 인권	0	0	7 (3.8)	51 (27.9)	125 (68.3)	4.7
장애인 관련 법	0	0	25 (13.7)	75 (41.0)	83 (45.4)	4.3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제도	0	1 (0.5)	17 (9.3)	59 (32.2)	106 (57.9)	4.5
다양성에 대한 이해	0	1 (0.5)	9 (4.9)	49 (26.8)	124 (67.8)	4.6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이해	0	2 (1.1)	12 (6.6)	51 (27.9)	118 (64.5)	4.6
접근성의 개념과 범위	0	3 (1.6)	11 (6.0)	61 (33.3)	108 (59.0)	4.5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0	0	5 (2.7)	29 (15.8)	149 (81.4)	4.8
유사 교육(직장 내/사회적, 인권 등)의 차이점	0	1 (0.5)	16 (8.7)	62 (33.9)	104 (56.8)	4.5

○ 응답자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 평균값이 4.8에서 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의 평균점수가 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증 정책입안자'의 경우 평균값이 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식 제고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5.1%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전문가'는 필요성 평균값이 4.8점으로 장애인식 제고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9.8%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인식은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주우민, 2012)으로,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행동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에 기반할 때, 장애인의 삶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련자의 경우 장애 인식의 제고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장애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동지원사와 간병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의 장애인식 제고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제도화된 사회에서 장애 인식 변화를 위해 미시적 차원을 넘어 거시적 차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됨.

〈표 Ⅲ-1-6〉 이해관계자별 인식제고 필요성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거의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평균
장애인 당사자	0	0	6 (3.3)	24 (13.1)	153 (83.6)	4.8
장애인 가족	0	0	5 (2.7)	22 (12.0)	156 (85.2)	4.8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0	0	4 (2.2)	15 (8.2)	164 (89.6)	**4.9**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0	0	4 (2.2)	16 (8.7)	163 (89.1)	**4.9**
공무원	0	2 (1.1)	5 (2.7)	28 (15.3)	148 (80.9)	4.8
교사, 교수, 강사 등 교육자	0	0	6 (3.3)	22 (12.0)	155 (84.7)	4.8
학생	0	0	6 (3.3)	24 (13.1)	153 (83.6)	4.8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전문가	0	0	9 (4.9)	28 (15.3)	**146 (79.8)**	4.8
판사, 검사 등 법률 집행관	0	0	8 (4.4)	24 (13.1)	151 (81.5)	4.8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	0	0	9 (4.9)	0	**174 (95.1)**	**4.9**
언론인	0	1 (0.5)	8 (4.4)	16 (8.7)	158 (86.3)	4.8

4) 장애인식개선교육 경험 및 교육내용

(1)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경험

○ 응답자들이 22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총 횟수는 평균 44.1회(월평균 3.7회)이며, 총 교육시간은 93.5시간(월평균 7.8시간)임.

〈표 Ⅲ-1-7〉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횟수 및 시간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교육횟수	183	44.1	67.910
교육시간	183	93.5	194.689

○ 응답자의 겸직 여부 응답자 176명의 겸직 여부에 따른 최근 1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횟수 및 시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Ⅲ-1-8〉과 같음.

- 최근 1년간 총 교육횟수의 경우, 겸직을 하는 59명의 최근 1년간 총 교육횟수는 평균 61.1회이며 겸직이 아닌 117명의 최근 1년간 총 교육횟수는 평균 35.5회로, 겸직 여부에 따라 연평균 25.6회 차이가 나타남.
- 최근 1년간 총 교육시간은 겸직의 경우 최근 1년간 총 교육시간이 평균 88.7시간이고 겸직이 아닌 경우 최근 1년간 총 교육시간 평균이 81.9시간으로 나타나 연평균 6.8시간 차이를 보임.

〈표 Ⅲ-1-8〉 겸직여부에 따른 최근 1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횟수 및 시간

(단위: 명, 점)

구분	겸직 여부								
	네			아니오			합계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년간 총 교육횟수	59	61.1	71.875	117	35.5	65.887	176	44.1	68.824
1년간 총 교육시간	59	88.7	143.123	117	81.9	141.828	176	84.2	141.891

○ 응답자들이 22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최근 1년간 강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는 〈표 Ⅲ-1-9〉와 같음.

-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유형의 경우, 공공기관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62명), 국가기관(59명), 지방공사 및 공단(46명), 특수법인(32명) 순으로 나타남.
- 학교에 해당하는 B유형의 경우, 초등학교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112명), 고등학교(89명), 대학교(55명), 각종학교(41명), 특수학교(32명) 순임.
- 유아교육기관에 해당하는 C유형의 경우, 유치원(71명), 어린이집(58명) 순임.

〈표 Ⅲ-1-9〉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유형별 대상(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A유형	국가기관	59	45.0
	지방자치단체	62	47.3
	공공기관	104	79.4
	지방공사 및 공단	46	35.1
	특수법인	32	24.4
	합계	303	231.3
B유형	초등학교	115	75.7
	중학교	112	73.7
	고등학교	89	58.6
	특수학교	32	21.1
	각종학교	41	27.0
	대학교	55	36.2
	합계	444	292.1
C유형	어린이집	58	69.0
	유치원	71	84.5
	합계	129	153.6

○ 교육기관인 B와 C유형 대상 교육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116명이 강의했으며, 학생 대상 강의는 143명으로 나타남.

〈표 Ⅲ-1-10〉 BC유형의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B, C유형	직원	116	71.6
	학생	143	88.3
	합계	259	159.9

○ 장애와 관련 있는 기관과 관련이 없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응답자들이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비교해보면, 장애와 관련이 없는 일반시설의 경우 일반학교에서 137명이 강의했고, 다음으로 회사 및 단체(101명), 공공기관(89명), 기타(1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관련 시설의 경우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95명이 강의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67명), 장애인거주시설(59명), 기타시설(57명), 특수학교(46명), 의료시설(10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Ⅲ-1-11〉 시설유형별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일반시설	일반학교	136	74.7
	회사 및 단체	101	55.5
	공공기관	89	48.9
	기타	18	9.9
	합계	344	189.0
장애 관련 시설	특수학교	46	25.7
	장애인거주시설	59	3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7	37.4
	지역사회재활시설	95	53.1
	의료시설	10	5.6
	기타	57	31.8
	합계	334	186.6

(2)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 및 내용

○ 응답자들이 최근 1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에서 활용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육방법으로는 대면 강의식 교육이 1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91명), 대면 체험식 강의(81명), 문화예술공연 강의(21명),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 강의(15명), 기타(2명) 순으로 나타남.
-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강의가 1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128명),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114명),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104명),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94명),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84명), 그리고 제시된 모든 내용을 강의했다는 응답이 78명으로 나타남.

〈표 Ⅲ-1-12〉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과 내용(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교육방법	대면 강의식	175	96.2
	대면 체험식	81	44.5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	15	8.2
	비대면 온라인 강의식	91	50.0
	문화예술공연교육	21	11.5
	기타	2	1.1
	합계	385	211.5
교육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134	73.6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94	51.6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128	70.3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84	46.2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104	57.1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114	62.6
	위 내용 모두	78	42.9
	합계	736	404.4

○ 응답자들이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사용한 교구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장애 체험 관련 교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81명), 다음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발·배포하는 교구(휠체어·경사로 키트, 유아용 교구 등)’(64명),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기관 네트워크 소개’(36명), 기타 교구(34명), ‘장애 당사자 공연’(27명), ‘기관에서 제작한 교구(휠체어키트, 보드게임 등)’(18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Ⅲ-1-13〉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사용한 교구(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사용한 교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발·배포하는 교구(휠체어·경사로 키트, 유아용 교구 등)	64	37.0
	기관에서 제작한 교구(휠체어키트, 보드게임 등)	18	10.4
	장애 체험 관련 교구	81	46.8
	장애 당사자 공연	27	15.6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기관 네트워크 소개	36	20.8
	기타	34	19.7
	합계	260	150.3

○ 응답자들이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활용한 자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강의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의 경우, ‘표준 교안(추천 콘텐츠. 표준 콘텐츠)’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고, ‘기타 영상자료 혹은 장애 관련 카드 뉴스’(28.4%), ‘보수교육, 워크숍 등의 집합 교육내용’(15.8%), 기타 자료(6.6%), ‘장애 관련 웰텍기기(사물인터넷, 로봇재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1.1%) 순으로 나타남.
-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활용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60% 미만’이 31.2%로 가장 많았고, ‘40% 미만’(27.3%), ‘20% 미만’(24.6%), ‘80%미만’(13.1%), ‘80% 이상’(3.8%) 순으로 나타남.

〈표 Ⅲ-1-14〉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활용한 자료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주된 활용자료	표준 교안(추천 콘텐츠. 표준 콘텐츠)	88	48.1
	기타 영상자료 혹은 장애 관련 카드 뉴스	52	28.4
	장애 관련 웰텍기기(사물인터넷, 로봇재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2	1.1
	보수교육, 워크숍 등의 집합 교육내용	29	15.8
	기타	12	6.6
개발원 교육자료 활용 정도	20% 미만	45	24.6
	40% 미만	50	27.3
	60% 미만	57	31.2
	80% 미만	24	13.1
	80% 이상	7	3.8

(3)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경험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시 강의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44.3%가 '인식의 변화'를 요청하였으며, 다음으로 '재미있는 강의'(26.2%), '시간을 짧게'(22.4%), '기타'(5.5%), '요청 기관 대표의 인사'(1.6%) 순으로 나타남.

〈표 Ⅲ-1-15〉 강의요청 기관의 요구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시간을 짧게	41	22.4
요청 기관 대표 인사 포함	3	1.6
재미있는 강의	48	26.2
인식의 변화	81	44.3
기타	10	5.5

○ 응답자들이 강의하면서 느끼는 현장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기대감, 즐거움, 유용함' 등의 다차원적인 의미로 조사한 결과,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유용하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63.4%로 가장 높았으며, '기대한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50.8%, 보통 수준이 37.8%이며, 즐거움 수준은 긍정적 수준이 49.8%, 보통 수준이 36.1%로 보통 이상의 즐거운 이미지로 나타남.

〈표 Ⅲ-1-16〉 현장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부정적	인식 수준					긍정적	종합	
	①	②	③	④	⑤		부정	긍정
부담스럽다	3 (1.6)	18 (9.8)	69 (37.8)	69 (37.7)	24 (13.1)	기대한다	11.4	50.8
지루하다	3 (1.6)	23 (12.5)	66 (36.1)	64 (35.0)	27 (14.8)	즐겁다	14.2	49.8
시간낭비다	0	15 (8.2)	52 (28.4)	73 (39.9)	43 (23.5)	유용하다	8.2	63.4

주: 부정합=① + ②, 긍정합 = ④ + ⑤

○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강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해, '바쁜 업무에 도움이 아닌 또 다른 일로 느껴져서'라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법정의무교육이 많아서'(19.1%), '기관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12.5%), '시간이 없고 돈이 들어서'(5.5%), '기타'(3.3%)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 친화적인 시스템의 활성화'(21.9%), '비슷한 법정의무교육의 일원화 필요'(17.5%), '지속적인 캠페인'(14.2%),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매칭시스템의 제도적 정착'(12.6%)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17〉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부담스러운 이유와 해소방안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이 부담스러운 이유	시간이 없고 돈이 들어서	10	5.5
	비슷한 법정의무교육이 많아서	35	19.1
	기관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23	12.5
	바쁜 업무에 도움이 아닌 또 다른 일로 느껴져서	107	58.5
	기타	6	3.3
	해당없음	2	1.1
부담감 해소 방안	지속적인 캠페인	26	14.2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매칭시스템의 제도적 정착	23	12.6
	현장 친화적인 시스템의 활성화	40	21.9
	비슷한 법정의무교육의 일원화 필요	32	17.5
	프로그램의 다양화	59	32.2
	기타	3	1.6

5)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

(1)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요도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내용별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중요도 평균이 4.4점에서 4.8점까지 매우 높았으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와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평균이 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과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4.7점),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4.6점),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4.4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Ⅲ-1-18〉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요도(N=183)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평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0	0	5 (2.7)	33 (18.0)	145 (79.3)	4.8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0	2 (1.1)	22 (12.0)	55 (30.1)	104 (56.8)	4.4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2 (1.1)	0	0	35 (19.1)	146 (79.8)	4.8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0	1 (0.5)	5 (2.7)	42 (23.0)	135 (73.8)	4.7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0	0	9 (4.9)	60 (32.8)	114 (62.3)	4.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0	0	7 (3.8)	47 (25.7)	129 (70.5)	4.7

(2)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내용별 효과를 확인한 결과, 분야별 평균이 4.0점에서 4.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평균이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4.4점),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4.3점),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4.2점),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4.0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Ⅲ-1-19〉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N=182)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평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0	0	14 (7.7)	70 (38.5)	98 (53.8)	4.5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2 (1.1)	7 (3.8)	44 (24.2)	66 (36.3)	63 (34.6)	4.0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2 (1.1)	0	13 (7.1)	72 (39.6)	95 (52.2)	4.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1 (0.5)	3 (1.6)	23 (12.6)	79 (43.5)	76 (41.8)	4.2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0	4 (2.2)	22 (12.0)	78 (42.9)	78 (42.9)	4.3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0	1 (0.5)	17 (9.3)	82 (45.1)	82 (45.1)	4.4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2013년 전국 중·고등학생 5,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57.7%P 증가하였다고 보고함(복지타임즈, 2013.07.16.).
- 김미옥 등(2021)은 발달장애인 참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연구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수용 태도와 장애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종남·한상미(2018)은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위한 실험설계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차별과 다름에 대한 지식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함.
- 하지만 장애인식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로 매우 제한적이며, 효과성 측정을 통한 장애인식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부재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선행연구 부재를 통해 확인함.

○ 현재 진행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50.8%가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매우그렇다'가 42.1%로 나타나 92.9%의 응답자가 현재의 교육이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함.

〈표 Ⅲ-1-20〉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인식개선 기여도(N=183)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2	1.1
보통이다	11	6.0
그렇다	93	50.8
매우 그렇다	77	42.1

6)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개선

○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Ⅲ-1-21〉 제도 개선 필요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 여부	그렇다	145	79.2
	그렇지 않다	38	20.8

○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역의 경우, 44.4%가 '교육내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방법'(18.3%), '교육횟수'(15.5%), '교육환경'(12.0%), '교육시간'(7.0%) 순으로 나타남.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 69.7%가 '교육내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방법' (52.6%), '교육환경'(29.1%), '교육횟수'(28.2%), '교육시간'(13.0%) 순으로 나타남.

〈표 Ⅲ-1-22〉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개선 필요영역

(단위: 명, %)

구분	응답전체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교육횟수	39	28.2	22	15.5	17	12.6
교육시간	18	13.0	10	7.0	8	6.0
교육내용	97	69.7	63	44.4	34	25.4
교육환경	40	29.1	17	12.0	23	17.2
교육방법	72	52.6	26	18.3	46	34.3
기타	10	7.3	4	2.8	6	4.5
계	-	-	142	100.0	134	100.0

○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적절한 교육횟수의 경우, 55.7%가 '연 2회'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 1회'(27.9%), '연 3회 이상'(16.4%)순으로 나타남.
- 적절한 교육시간의 경우, 60.6%가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1시간 미만'(30.1%),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7.7%), '3시간 이상'(1.6%) 순으로 나타남.

〈표 Ⅲ-1-23〉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절한 교육횟수	연 1회	51	27.9
	연 2회	102	55.7
	연 3회 이상	30	16.4
적절한 교육시간	1시간 미만	55	30.1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11	60.6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14	7.7
	3시간 이상	3	1.6

○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법으로 적절한 방식에 대한 복수응답 조사 결과, '대면 강의식'이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면 체험식 강의'(103명), '문화예술공연교육'(57명), '비대면 온라인 강의'(27명), '기타'(4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Ⅲ-1-24〉 적절한 교육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대면 강의식	163	89.1
대면 체험식	103	56.3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	13	7.1
비대면 온라인 강의식	27	14.8
문화예술공연교육	57	31.1
기타	4	2.2
합계	367	200.5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1%가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사의 전문성'(17.5%),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예산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16.9%),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13.7%), '강사 매칭을 위한 서비스 제공'(8.7%), 기타(1.1%) 순으로 나타남.

〈표 Ⅲ-1-25〉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예산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31	16.9
강사 매칭을 위한 서비스 제공	16	8.7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77	42.1
강사의 전문성	32	17.5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25	13.7
기타	2	1.1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을 위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2.1%가 '교육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강사 및 교육관리, 교재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23.0%), '프로그램 다양화'(15.8%), '교육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8.7%), '4차 산업과 장애에 대한 이해 및 교육 필요'(8.2%), 기타(2.2%)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김동일 등(2018)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분석 결과를 통해 교육내용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교육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교육안을 제시하되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체계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합 및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표 Ⅲ-1-26〉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해 개발 및 지원될 부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4차 산업과 장애에 대한 이해 및 교육 필요	15	8.2
교육 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	77	42.1
강사 및 교육관리, 교재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42	23.0
교육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	16	8.7
프로그램 다양화	29	15.8
기타	4	2.2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영역별 필요성을 복수응답 조사 결과, 각 영역별 필요성 평균이 4.2점에서 4.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 정도에 따른 교육 영역을 살펴보면, '이슈와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권'과 '교수 방법' 및 '강사의 자질 및 윤리'(4.4점), '강의 코칭'(4.3점), '법과 제도'(4.2점) 순으로 나타남.

- 최근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이 논의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김미옥 · 김지혜 · 김고은, 2021), 이러한 경향과 본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강사 역량강화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음.

〈표 Ⅲ-1-27〉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거의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평균
법과 제도	0	2 (1.1)	35 (19.1)	79 (43.2)	67 (36.6)	4.2
인권	0	0	15 (8.2)	72 (39.3)	96 (52.5)	4.4
교수 방법	0	2 (1.1)	26 (14.2)	51 (27.9)	104 (56.8)	4.4
이슈와 트렌드에 대한 이해	0	2 (1.1)	10 (5.5)	59 (32.2)	112 (61.2)	4.5
강사의 자질 및 윤리	0	3 (1.6)	17 (9.3)	62 (33.9)	101 (55.2)	4.4
강의 코칭	0	3 (1.6)	26 (14.3)	63 (34.4)	91 (49.7)	4.3

2. 의무교육 대상기관 설문조사

1) 일반적 특성

(1) 응답자 특성

○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 256명의 현재 직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234명이 교육담당 직원이며, 24명이 기관장이라고 응답함.

〈표 Ⅲ-2-1〉 응답자 현재 직위(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기관장	24	9.4
직원(교육 담당자)	234	91.4
합계	258	100.8

○ 응답자 256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의 경우 66.4%가 여자이고 33.6%가 남자이며, 연령대는 30대가 46.1%로 가장 많고, 40대(27.7%), 50대(13.7%), 20대(10.9%), 60대(0.8%) 순으로 나타남.
- 현 기관의 근속기간은 응답자의 32.4%가 '만 10년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년 이상 ~ 만 3년 미만'(24.2%), '만 5년 이상 ~ 만 10년 미만'(18.8%), '만 3년 이상 ~ 만 5년 미만'(17.2%), '만 1년 미만'(7.4%)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24.6%가 서울이며, 경기(18.7%), 경북(7.0%), 인천(6.3%), 부산(5.5%), 강원(5.1%), 대전과 경남(4.7%), 광주(4.3%), 충남(4.2%), 울산(3.9%), 전남(3.1%), 충북(2.7%), 대구(1.6%), 전북/제주(1.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장애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2.7%(7명)가 장애가 있으며, 주 장애유형은 시각장애(3명), 지체장애(2명), 지적장애(1명)이고, 장애정도의 경우 심한 장애가 3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3명으로 나타남.

〈표 Ⅲ-2-2〉 응답자 일반적 특성(N=256)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86	33.6	거주지역	서울	63	24.6
	여자	170	66.4		부산	14	5.5
연령대	20대	28	10.9		대구	4	1.6
	30대	118	46.1		인천	16	6.3
	40대	71	27.7		광주	11	4.3
	50대	35	13.7		대전	12	4.7
	60대	2	0.8		울산	10	3.9
	결측	2	0.8		경기	48	18.7
현 기관 근속기간	만 1년 미만	19	7.4		강원	13	5.1
	만 1년 이상 ~ 만 3년 미만	62	24.2		충북	7	2.7
	만 3년 이상 ~ 만 5년 미만	44	17.2		충남	11	4.2
	만 5년 이상 ~ 만 10년 미만	48	18.8		전북	3	1.2
	만 10년 이상	83	32.4		전남	8	3.1
장애여부	있음	7	2.7		경북	18	7.0
	없음	249	97.3		경남	12	4.7
장애유형	지체장애	2	0.8		제주	3	1.2
	시각장애	3	1.2		결측값	3	1.2
	지적장애	1	0.4	장애정도	심한 장애	3	50.0
	결측값	250	97.6		심하지 않은 장애	3	50.0

(2) 기관의 장애인 특성

○ 응답 기관 중 61.3%인 157개 기관에 장애인 구성원이 있으며, 이 중 148개 기관의 평균 장애인 수는 21.1명으로 장애인 직원 규모의 경우 64.2%가 10명 미만이며, '10명 이상 ~ 30명 미만' 20.9%, '50명 이상 ~ 100명 미만' 6.8%,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3.4%, '30명 이상 ~ 50명 미만' 2.7%, '200명 이상' 2%로 나타남.

○ 장애인 학생이 있는 113개 기관의 평균 장애학생 수는 9.8명이며, 장애학생 규모는 '10명 미만'이 90.3%(102개소)로 가장 많고, '10명 이상 ~ 30명 미만' 3.5%(4개소),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2.7%(3개소), '30명 이상 ~ 50명 미만' 1.8%(2개소), '50명 이상 ~ 100명 미만'과 '200명 이상'이 각각 1개소임.

○ 응답기관 담당자 256명의 경우 장애인과 함께 근무한 경험에 대해 58.6%가 있다고 응답함.

〈표 Ⅲ-2-3〉 기관의 장애인 구성원 및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인 구성원 여부	있음	157	61.3
	없음	99	38.7
장애인 직원 수	10명 미만	95	64.2
	10명 이상 ~ 30명 미만	31	20.9
	30명 이상 ~ 50명 미만	4	2.7
	50명 이상 ~ 100명 미만	10	6.8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5	3.4
	200명 이상	3	2
	합계	148	100.0
	평균 직원 수: 21.1명		
장애인 학생 수	10명 미만	102	90.3
	10명 이상 ~ 30명 미만	4	3.5
	30명 이상 ~ 50명 미만	2	1.8
	50명 이상 ~ 100명 미만	1	0.9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3	2.7
	200명 이상	1	0.9
	합계	113	100.0
	평균 학생 수: 9.8명		
장애인과 함께 근무한 경험 여부	있음	150	58.6
	없음	106	41.4
	합계	256	100.0

(3) 기관유형

○ 응답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유형의 경우, 전체 응답 기관 중 67.6%(173개소)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 해당하는 B유형은 16.8%(43개소), 유아교육기관에 해당하는 C유형은 15.6%에 해당하는 40개소로 나타남.

〈표 Ⅲ-2-4〉 기관 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빈도	백분율
A유형	국가기관	173 (67.6)	20	7.8
	지방자치단체		26	10.2
	공공기관		70	27.3
	지방공사 및 공단		54	21.1
	특수법인		3	1.2
B유형	초등학교	43 (16.8)	14	5.5
	중학교		8	3.1
	고등학교		9	3.5
	특수학교		3	1.2
	대학교		9	3.5
C유형	어린이집	40 (15.6)	32	12.5
	유치원		8	3.1
합계		256(100.0)	256	100.0

2) 교육현황

(1) 법정의무교육 현황

○ 기관에서 받고 있는 장애 관련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복수응답 조사 결과, 226개 기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146개소), '장애이해교육'(70개소), '장애인권교육'(45개소), '장애예방교육'(21개소), 기타(6개소) 순으로 나타남.

〈표 Ⅲ-2-5〉 기관에서 받고 있는 장애 관련 법정의무교육(복수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장애이해	70	27.3
장애예방	21	8.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146	57.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226	88.3
장애인권	45	17.6
기타	6	2.3
합계	514	200.8

○ 응답 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자의 39.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38.3%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77.8%로 나타남.

〈표 Ⅲ-2-6〉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필요성(N=256)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	0.8
아니다	6	2.3
보통이다	49	19.1
그렇다	101	39.5
매우 그렇다	98	38.3

○ 응답 기관 유형별 법정의무교육의 필요 인식 정도에 대한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 A유형과 C유형의 필요 인식 평균이 4.2점, B유형의 경우 3.9점으로 나타남.

- 하위 기관별 비교에서 A유형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법정의무교육 필요 인식 평균이 4.4점으로 하위 기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학교와 어린이집(4.3점), 공공기관(4.2점), 특수법인과 유치원(4.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의 경우 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Ⅲ-2-7〉 기관 유형별 법정의무교육 필요성 평균비교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A유형	국가기관	20	3.9	.8127
	지방자치단체	26	3.8	.9081
	공공기관	70	4.2	.8017
	지방공사 및 공단	54	4.4	.5923
	특수법인	3	4.0	1.7321
	계	173	4.2	.8026
B유형	초등학교	14	3.9	1.1411
	중학교	8	3.9	1.1260
	고등학교	9	3.9	.7817
	특수학교	3	4.3	1.1547
	대학교	9	3.8	1.0929
	계	43	3.9	1.0192
C유형	어린이집	32	4.3	.8799
	유치원	8	4.0	.7559
	계	40	4.2	.8533

(2)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현황

○ 응답 기관의 교육운영 현황을 최근 1년간 진행한 교육횟수와 인원 및 시간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 교육횟수의 경우 A유형 기관은 연 평균 2.3회, B와 C유형의 경우 직원은 3.1회, 학생은 15.3회 실시함.
- 총 교육인원은 A유형 기관은 연 평균 470.4명이며, B와 C유형의 경우 직원은 86.9명, 학생은 375.7명임.
- 총 교육시간은 A유형 기관은 연 평균 35.3시간(월평균 2.9시간), B와 C유형의 경우 직원은 27.9시간(월평균 2.3시간), 학생은 5.5시간(월평균 0.5시간)임.

〈표 Ⅲ-2-8〉 최근 1년간 진행한 교육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교육횟수	A유형	190	0	20	2.3
	BC유형_직원	112	0	116	3.1
	BC유형_학생	111	0	1,200	15.3
교육인원	A유형	187	0	5,500	470.4
	BC유형_직원	113	0	2,397	86.9
	BC유형_학생	109	0	7,753	375.7
교육시간	A유형	189	0	1,200	35.3
	BC유형_직원	87	0	1,547	27.9
	BC유형_학생	75	0	60	5.5

○ 응답 기관에서 실시한 1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교육이 157개소로 가장 많았고, '대면 강의식'(101개소), '비대면 온라인 강의식'(91개소), '대면 체험식'(18개소), '문화예술공연교육'(13개소), 기타(3개소)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계획 중인 교육방법은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교육이 143개소로 가장 많았고, '대면 강의'(125개소), '비대면 온라인 강의식'(73개소), '대면 체험식'(24개소), '문화예술공연교육'(19개소) 순으로 나타나 기존 실시한 교육방법보다 대면 비중과 활동 비중을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이종남·한상미(2018)는 선행연구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일방적인 강의와 같은 인지형 방식보다는 체험이나 참여형 방식의 경우 인식개선의 효과가 훨씬 높고, 다양한 방식을 혼합한 방식 즉, 참여와 체험을 포함한 강의형 프로그램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이를 토대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에 대한 방안 마련에서 교육과 활동을 혼합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적 접근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표 Ⅲ-2-9〉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복수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교육방법	대면 강의식	101	39.5
	대면 체험식	18	7.0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	157	61.3
	비대면 온라인 강의식	91	35.5
	문화예술공연교육	13	5.1
	기타	3	1.2
	합계	383	149.6
계획중인 교육방법	대면 강의식	125	48.8
	대면 체험식	24	9.4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	143	55.9
	비대면 온라인 강의식	73	28.5
	문화예술공연교육	19	7.4
	합계	384	150.0

○ 응답 기관에서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에 대한 복수응답 분석 결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가 185개소에서 실시되었으며,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128개소),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108개소),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99개소),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63개소), ‘내용 모두실시’(54개소),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39개소) 순으로 나타남.

〈표 Ⅲ-2-10〉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복수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185	72.3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108	42.2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128	50.0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63	24.6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39	15.2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99	38.7
위 내용 모두	54	21.1
합계	676	264.1

(3) 강사 섭외 관련 현황

○ 응답 기관에서 강사 섭외를 하는 경로는 '인식개선교육기관(보건복지부 지정)'에 의뢰하는 경우가 36.3%로 가장 많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21.9%), '지인 혹은 유관기관의 추천'(16.8%), '인터넷 검색'(14.8%), 기타(10.2%) 순으로 나타남.

〈표 Ⅲ-2-11〉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섭외 경로(N=256)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56	21.9
인식개선교육기관(보건복지부 지정)	93	36.3
인터넷 검색	38	14.8
지인 혹은 유관기관의 추천	43	16.8
기타	26	10.2

○ 응답 기관에서 강사 섭외를 위한 연간예산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55.9%의 기관이 연간 예산 수립 시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27.7%의 경우 연간 교육계획은 있으나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2.5%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1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섭외 예산계획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백분율
연간 계획에 예산과 함께 포함한다.	143	55.9
연간 계획은 있으나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71	27.7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진행한다.	32	12.5
기타	10	3.9

3)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인식개선 기여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조직 구성원들의 장애인식개선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그렇다'가 22.3%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68.3%로 나타남.

- 의무교육 기관과 강사들이 인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인식개선 정도를 비교한 결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긍정적 인식 수준은 강사의 경우 92.9%, 의무교육 기관의 경우 68.3%로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본 조사에서 의무교육 기관의 경우 의무교육 담당자의 의견으로 수집되어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강사의 자기보고 방식 조사의 편향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교육담당자의 인식과 강사의 큰 인식 수준 격차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임.

〈표 Ⅲ-2-1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애인식개선에 전반적인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의무교육 기관		강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아니다	3	1.2	0	0
아니다	9	3.5	2	1.1
보통이다	69	27.0	11	6.0
그렇다	118	46.0	93	50.8
매우그렇다	57	22.3	77	42.1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을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도움이 된 내용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로 75.3%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12.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 218명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내용이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134명),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63명),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35명),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29명),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23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Ⅲ-2-14〉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도움순위

(단위: 명, %)

구분	응답전체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18	85.8	192	75.3	26	10.5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63	25.3	16	6.3	47	19.0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134	53.9	31	12.2	103	41.7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35	14.1	6	2.4	29	11.7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23	9.2	6	2.4	17	6.9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29	11.7	4	1.6	25	10.1
계	-	-	255	100.0	247	100.0

(2)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

○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28.9%만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15〉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 조사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백분율
네	74	28.9
아니오	182	71.1

○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은 3.8점에서 3.9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과 '매우만족' 점수를 고려한 긍정적인 평가 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의 적절성'이 75.8%로 가장 높았고, '교육내용'(74.6%), '교육방법'(71.1%), '강사 전문성'(69.2%), '교육시간'(67.9%), '강의자료 및 교재'(66.7%), '교육횟수'(63.6%) 순으로 나타남

〈표 Ⅲ-2-16〉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과정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평균
교육횟수	3 (1.2)	3 (1.2)	87 (34.0)	109 (42.6)	54 (21.0)	3.8
교육시간	3 (1.2)	5 (2.0)	74 (28.9)	120 (46.9)	54 (21.0)	3.9
교육방법	5 (2.0)	6 (2.3)	63 (24.6)	120 (46.9)	62 (24.2)	3.9
교육내용	3 (1.2)	6 (2.3)	56 (21.9)	138 (53.9)	53 (20.7)	3.9
교육 적절성	3 (1.2)	5 (2.0)	54 (21.0)	136 (53.1)	58 (22.7)	3.9
강의자료 및 교재	4 (1.6)	5 (2.0)	76 (29.7)	118 (46.0)	53 (20.7)	3.8
강사의 전문성	2 (0.8)	6 (2.3)	71 (27.7)	120 (46.9)	57 (22.3)	3.9

○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내용 만족도 조사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은 3.9점에서 4.1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과 '매우 만족' 점수를 고려한 긍정적인 평가 순위를 살펴보면,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83.8%로 가장 높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79.7%),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75.7%),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74.0%),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72.9%),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71.2%) 순으로 나타남.

〈표 Ⅲ-2-17〉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내용 만족도(N=74)

(단위: 명, %, 점)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평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7	0	17.6	48.6	31.1	4.1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4.1	0	23.0	44.5	28.4	3.9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2.7	1.4	12.1	52.7	31.1	4.1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2.7	1.4	21.9	37.0	37.0	4.0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2.7	1.4	24.7	39.7	31.5	4.0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2.7	0	21.6	44.6	31.1	4.0

○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내용 만족도 비교를 위한 교차분석 결과, 교육방법 별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비대면 이러닝 콘텐츠'일 때 강의만족도가 79.1%로 가장 높았고, 대면 강의(67.4%), 비대면 온라인 강의(62.5%), 대면 체험형과 문화예술공연(33.3%) 순으로 나타남.

〈표 Ⅲ-2-18〉 교육방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내용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교육방법(복수응답)						합계
		대면 강의식	대면 체험식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	비대면 온라인 강의식	문화예술 공연교육	기타	
교육내용 만족도	전혀 아니다	0 (0.0)	0 (0.0)	1 (2.3)	1 (3.1)	1 (33.3)	0 (0.0)	3
	아니다	0 (0.0)	0 (0.0)	1 (2.3)	0 (0.0)	0 (0.0)	0 (0.0)	1
	보통이다	14 (32.6)	4 (66.7)	7 (16.3)	11 (34.4)	1 (33.3)	0 (0.0)	37
	그렇다	18 (41.9)	1 (16.7)	22 (51.2)	15 (46.9)	1 (33.3)	1 (100.0)	58
	매우 그렇다	11 (25.6)	1 (16.7)	12 (27.9)	5 (15.6)	0 (0.0)	0 (0.0)	29
계		43 (100.0)	6 (100.0)	43 (100.0)	32 (100.0)	3 (100.0)	1 (100.0)	128
긍정응답 계		67.4	33.3	79.1	62.5	33.3	100.0	

주: 긍정합 = ④ + ⑤

○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52.4%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15.2%가 매우만족으로 응답하여 67.6%가 긍정적인 만족감을 표현함.

〈표 Ⅲ-2-19〉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N=256)

(단위: 명, %,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	2 (0.8)	7 (2.7)	74 (28.9)	134 (52.4)	39 (15.2)	3.8

○ 응답 기관 유형별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A유형과 B유형의 만족도 평균은 3.8점으로 동일하며, C유형은 3.7점으로 나타남.

- 하위 기관별 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특수법인'과 '특수학교'의 만족도 평균이 4.0으로 가장 높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만족도 평균이 3.6점으로 낮게 나타남.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 감수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특히 학령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중요성이 높음. 이에 김수연(2013)의 제안과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시 학년(연령) 수준에 맞게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고, 주입식 강의보다는 새롭고 다양한 교수법 개발이 필요함.

〈표 Ⅲ-2-20〉 기관 유형별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비교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A유형	국가기관	20	3.6	.6806
	지방자치단체	26	3.6	.8521
	공공기관	70	3.9	.6925
	지방공사 및 공단	54	3.9	.6843
	특수법인	3	4.0	1.0000
	계	173	3.8	.7206
B유형	초등학교	14	3.6	1.0082
	중학교	8	3.9	.6409
	고등학교	9	3.8	.6667
	특수학교	3	4.0	1.0000
	대학교	9	3.8	.9718
	계	43	3.8	.8406
C유형	어린이집	32	3.8	.7184
	유치원	8	3.6	1.3025
	계	40	3.7	.8469

○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방법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 교육방법 별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은 '대면 강의식' 교육일 때 78.2%로 가장 높았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와 '문화예술공연'(69.2%), '대면 체험형'(66.7%), '비대면 영상콘텐츠'(65.6%), 기타(33.3%) 순으로 나타남.

〈표 Ⅲ-2-21〉 교육방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점)

구분		교육방법(복수응답)						합계
		대면 강의식	대면 체험식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	비대면 온라인 강의식	문화예술 공연교육	기타	
전반적인 만족도	전혀 아니다	0 (0.0)	0 (0.0)	1 (0.6)	1 (1.1)	1 (7.7)	0 (0.0)	3
	아니다	2 (2.0)	0 (0.0)	4 (2.5)	3 (3.3)	1 (7.7)	0 (0.0)	10
	보통이다	20 (19.8	6 (33.3)	49 (31.2)	24 (26.4)	2 (15.4)	2 (66.7)	103
	그렇다	61 (60.4	9 (50.0)	78 (49.7)	47 (51.6)	7 (53.8)	1 (33.3)	203
	매우 그렇다	18 (17.8	3 (16.7)	25 (15.9)	16 (17.6)	2 (15.4)	0 (0.0)	64
계		101 (100.0)	18 (100.0)	157 (100.0)	91 (100.0)	13 (100.0)	3 (100.0)	383
긍정응답 계		78.2	66.7	65.6	69.2	69.2	33.3	

주: 긍정합=④+⑤

(3)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알게된 내용

○ 응답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은 3.8점부터 4.3점까지로 나타남.

- 각 영역별로 알게된 것이 '조금 있음'과 '많이 있음'으로 응답한 점수를 고려한 긍정적인 응답률을 비교하면,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비중이 84.4%로 가장 높았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84.0%),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77.0%),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75.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74.6%),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65.2%) 순으로 나타남.

〈표 Ⅲ-2-22〉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조금 있음	⑤ 많이 있음	평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0	0	41 (16.0)	111 (43.4)	104 (40.6)	4.3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1 (0.4)	5 (2.0)	57 (22.3)	108 (42.1)	85 (33.2)	4.1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2 (0.8)	0	38 (14.8)	118 (46.1)	98 (38.3)	4.2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0	3 (1.2)	62 (24.2)	106 (41.4)	85 (33.2)	4.1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1 (0.4)	10 (3.9)	78 (30.5)	107 (41.8)	60 (23.4)	3.8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0	2 (0.8)	57 (22.2)	120 (46.9)	77 (30.1)	4.1

4)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요구

(1) 교육운영

○ 응답 기관에서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적정 횟수는 연평균 2.5회이며, 응답기관의 49.2%가 '연 1회'를 희망하고, 34.8%가 '연 2회', 15.6%가 '연 3회 이상'이라고 응답함.
- 의무교육 기관 담당자와 강사의 희망하는 교육횟수를 비교한 결과, 의무교육 기관은 연1회 빈도가 49.2%인 반면, 강사의 경우 연 2회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2-23〉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적정 횟수

(단위: 회, 점)

구분		의무교육 기관		강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절한 교육 횟수	연 1회	**126**	**49.2**	51	27.9
	연 2회	89	34.8	**102**	**55.7**
	연 3회 이상	40	15.6	30	16.4
	결측값	1	0.4	0	0

○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적정시간을 살펴보면, 성인에게 적정한 교육시간은 응답자의 71.0%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미만'(18.4%),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8.6%), '3시간 이상'(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및 학생에게 적정한 교육시간은 응답자 102명 중 65.7%가 '1시간 미만'으로 응답하였고,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26.5%),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5.9%), '3시간 이상'(1.9%) 순으로 나타남.

〈표 Ⅲ-2-24〉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적정시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희망교육시간 (성인)	1시간 미만	47	18.4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82	71.0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2	8.6
	3시간 이상	3	1.2
	결측값	2	0.8
	합계	256	100.0
희망교육시간 (유치원 및 학생)	1시간 미만	67	65.7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7	26.5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6	5.9
	3시간 이상	2	1.9
	합계	102	100.0

○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유형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79개소에서 '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강사를 희망하였고, '장애인개발원 위촉강사'(107개소), '내부 강사'(51개소), '무소속 강사'(18개소) 순으로 나타남.

〈표 Ⅲ-2-25〉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유형(복수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강사유형	장애인개발원 위촉강사	107	44.2
	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	179	74.0
	내부 강사	51	21.1
	무소속 강사	18	7.4
	기타	4	1.7
	합계	359	148.3

(2) 교육방법 및 내용

○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복수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육방법의 경우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 교육이 150개소로 가장 많았고, '대면 강의식'(117개소), '비대면 온라인 강의식'(82개소), '대면 체험식'(61개소), '문화예술공연교육'(42개소) 순으로 나타남.
- 교육내용의 경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내용이 170개소로 가장 많았고,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120개소),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82개소),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81개소),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70개소), '내용 모두'(68개소),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47개소) 순으로 나타남.

〈표 Ⅲ-2-26〉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과 내용(복수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케이스백분율
교육방법	대면 강의식	117	45.7
	대면 체험식	61	23.8
	비대면 이러닝 영상콘텐츠	150	58.6
	비대면 온라인 강의식	82	32.0
	문화예술공연교육	42	16.4
	합계	452	176.6
교육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170	66.7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82	32.2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120	47.1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81	31.8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47	18.4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70	27.5
	위 내용 모두	68	26.7
	합계	638	250.2

5)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 인식

○ 응답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은 3.7점에서 4.0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 '조금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긍정적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인식수준이 72.3%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71.1%), '다양성에 대한 이해'(70.7%), '장애인의 인권'(69.5%),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67.6%),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이해'(65.2%), '장애인 관련 법'과 '유사 교육(직장 내/사회적, 인권 등)의 차이점'(58.6%), '접근성의 개념과 범위'(58.2%) 순으로 나타남.

〈표 Ⅲ-2-27〉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제도 인식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평균
장애인에 대한 이해	0	5 (2.0)	66 (25.8)	126 (49.2)	59 (23.0)	3.9
장애인의 인권	0	7 (2.7)	71 (27.7)	124 (48.5)	54 (21.1)	3.9
장애인 관련 법	4 (1.6)	18 (7.0)	84 (32.8)	107 (41.8)	43 (16.8)	3.7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	1 (0.4)	16 (6.3)	66 (25.7)	127 (49.6)	46 (18.0)	3.8
다양성에 대한 이해	0	5 (2.0)	70 (27.3)	120 (46.9)	61 (23.8)	3.9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이해	0	12 (4.7)	77 (30.1)	118 (46.1)	49 (19.1)	3.8
접근성의 개념과 범위	2 (0.8)	14 (5.5)	91 (35.5)	104 (40.6)	45 (17.6)	3.7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1 (0.4)	4 (1.6)	69 (27.0)	107 (41.7)	75 (29.3)	4.0
유사 교육(직장 내/사회적, 인권 등)의 차이점	1 (0.4)	15 (5.9)	90 (35.1)	103 (40.2)	47 (18.4)	3.7

○ 응답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재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은 4.3점에서 4.5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긍정적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7%로 가장 높았고, '교사, 교수, 강사 등 교육자'와 '학생'(86.3%),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85.9%),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85.9%),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전문가'(85.5%), '언론인'(85.2%), '공무원'(84.8%), '판사, 검사 등 법률 집행관'(84.4%), '장애인 가족'(84.0%), '장애인 당사자'(82.4%) 순으로 나타남.

〈표 Ⅲ-2-28〉 이해관계자별 인식제고 필요성(N=183)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거의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평균
장애인 당사자	0	4 (1.6)	41 (16.0)	77 (30.1)	134 (52.3)	4.3
장애인 가족	0	4 (1.6)	37 (14.5)	70 (27.3)	145 (56.6)	4.4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0	1 (0.4)	35 (13.6)	69 (27.0)	151 (59.0)	4.4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0	5 (2.0)	29 (11.3)	67 (26.2)	155 (60.5)	4.5
공무원	0	2 (0.8)	37 (14.4)	78 (30.5)	139 (54.3)	4.4
교사, 교수, 강사 등 교육자	0	2 (0.8)	33 (12.8)	79 (30.9)	142 (55.5)	4.4
학생	0	1 (0.4)	34 (13.3)	88 (34.3)	133 (52.0)	4.4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전문가	2 (0.8)	1 (0.4)	34 (13.3)	79 (30.9)	140 (54.6)	4.4
판사, 검사 등 법률 집행관	1 (0.4)	2 (0.8)	37 (14.5)	59 (23.0)	157 (61.3)	4.4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	0	3 (1.2)	33 (12.9)	63 (24.6)	157 (61.3)	4.5
언론인	1 (0.4)	3 (1.2)	34 (13.3)	70 (27.3)	148 (57.8)	4.4

6)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방안

○ 응답 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 결과,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피로감'이 높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았고, '기관(조직)내 인식부족'(14.4%), '강사섭외'의 어려움(11.3%), '예산의 부족'(9.0%), '소속기관에 맞는 교육내용 미비'(6.3%), 기타(3.1%) 순으로 나타남.

〈표 Ⅲ-2-29〉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시 어려움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백분율
강사섭외	29	11.3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피로감	143	55.9
예산의 부족	23	9.0
기관(조직)내 인식부족	37	14.4
소속기관에 맞는 교육내용 미비	16	6.3
기타	8	3.1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0%이며, '강사 매칭을 위한 서비스 제공'(18.8%),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17.6%),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예산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15.6%), '강사의 전문성'(3.9%), 기타(3.1%) 순으로 나타남.

- 의무교육 기관 담당자와 강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공통적 응답함

〈표 Ⅲ-2-30〉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

(단위: 개소, %)

구분	의무교육 기관		강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예산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40	15.6	31	16.9
강사 매칭을 위한 서비스 제공	48	18.8	16	8.7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105**	**41.0**	**77**	**42.1**
강사의 전문성	10	3.9	32	17.5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45	17.6	25	13.7
기타	8	3.1	2	1.1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을 위해 개발하거나 지원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에 비교적 고른 분포가 나타남

- 응답자의 24.7%가 '강사 및 교육관리, 교재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교육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23.8%), '프로그램 다양화'(20.7%), '교육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14.8%), '4차 산업과 장애에 대한 이해 및 교육 필요'(10.9%), '강사비 가이드라인'(4.7%) 순으로 나타남
- 의무교육 기관 담당자와 강사가 인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분야의 경우, 의무교육 기관 담당자의 경우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강사의 경우 42.1%가 '교육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이라고 응답함.

〈표 Ⅲ-2-31〉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해 개발 및 지원될 부분

(단위: 개소, %)

구분	의무교육 기관		강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4차 산업과 장애에 대한 이해 및 교육 필요	28	10.9	15	8.2
교육 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	61	23.8	**77**	**42.1**
강사 및 교육관리, 교재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63**	**24.7**	**42**	**23.0**
교육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	38	14.8	16	8.7
프로그램 다양화	53	20.7	29	15.8
강사비 가이드라인	12	4.7	4	2.2
기타	1	0.4	0	0

7) 기타의견

○ 강사대상 설문조사와 의무교육기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타의견의 경우, 유사교육과의 차별성을 위한 의견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2-32〉과 같음.

〈표 Ⅲ-2-32〉 강사 및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가 제시한 기타의견

구분		강사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
유사교육과의 차별성을 위한 의견	교육 운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의 차별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일원화 강사 매칭 서비스 지원 대면교육 의무화 강사의 역량강화(보수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강사 매칭 서비스 필요
	교육 내용	프로그램 다양화(대상 및 연령대별, 장애유형별) 교육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및 교구개발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체험, 문화예술, 집단상담 등)	대면 체험교육 확대 사례 위주의 교육확대
	교육 방법	체험형 교육의 개발 및 확대 토론식 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방법 개발 다양한 교육방법 및 콘텐츠 개발
발전방안	정책	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확대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의무화 관련 법 강화 유사교육 강사제도 일원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비 국가 지원 장애인식개선 강사 처우개선(강사비 등)	유사교육 일원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교육의 일원화 또는 공통과정 개발
	교육 운영	법정교육 의무수강 여부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홍보 교육기관 모니터링 통한 교육의 질 확보 강사 선정 시 장애 관련 감수성 평가체계 도입 강사 지원 및 관리를 통한 강의시수 확보 강사 매칭 서비스 지원 강사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강사 규모 확대 강사비 지원
	교육 내용	교육 교재의 고도화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 및 보급	기관유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컨텐츠 개발 사례 중심교육 확대
	교육 방법	체험형 교육의 개발 및 확대 토론식 교육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 및 보급	공연 등 참여형 교육확대 교육 이수 방법의 다양화 필요

3. 실태조사에 대한 소결

1) 강사 대상 조사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고학력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은 45세이고, 67.8%가 겸직이 아닌 전업 강사이며, 63.9%가 장애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42.1%가 장애가 있음.

○ 평균 강사경력은 5.9년이며, 인식개선 교육기관 소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교육횟수는 44.1회(월평균 3.7회)이며, 총 교육시간은 93.5시간(월평균 7.8시간)으로 나타나, 평균 강사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이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차별성과 발전을 위한 자유의견에서 제시된 강사 매칭 서비스 및 관리를 통한 강의시수 확보와 관련된 다수 의견과 연동되는 결과로 강사 관리와 전문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강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 평균값이 4.8에서 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의 평균점수가 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2022년 9월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UN CRPD 최종견해 중 장애인식제고 관련 권고 사항에서 제시된 장애인 관련 전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분야별 장애관련 교육 필요성에 대한 권고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의 확대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응답자들이 최근 1년간 강의한 기관유형은 B유형이 가장 많았고, C유형이 상대적으로 강의 빈도가 낮게 나타남. C유형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유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한 자유의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대 별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교육내용에 대한 다수 의견을 고려하고 장애인식 조기교육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연령대를 고려한 교재·교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응답 강사들이 실시한 교육방법은 대면 강의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내용은 장애인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법과 제도 및 자립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나타남. 이는 교육내용 만족도에서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강사 및 기관대상 조사에서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과 연동되어 고려할 때, 법과 제도에 대한 강사들의 부담감이 강의 내용에 대한 선택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에서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용하는 교구는 장애체험교구(46.8%)와 개발원에서 배포하는 교구(37.0%) 비중이 높았으나, 표준교안 사용 비중(48.1%)과 개발원 교육자료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자료와

교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는 자유의견에서도 다수 확인되는데,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및 교안·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 교재의 고도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바쁜 업무에 도움이 아닌 또 다른 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과반수 넘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응답자 중 32.2%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 적절한 교육횟수로는 과반수 이상이 연 2회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한 시간은 1시간~2시간이 가장 많았고, 10명 중 9명이 대면 강의식 교육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4점 중반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식개선에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발전을 위해 '교육 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자유의견에서 제시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서의 개선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해 보임.

2) 기관대상 조사

○ 응답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유형이 67.6%(173개소)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 해당하는 B유형은 16.8%(43개소), 유아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C유형은 15.6%에 해당하는 40개소임.

○ 응답 기관에서 최근 1년간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이었으며,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8%로 높았고, 법정의무교육의 필요 인식정도는 A유형과 C유형이 B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실시한 교육방법의 경우, 대면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계획 중인 교육방법의 경우 대면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이는 교육방법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에서 확인되는데, 대면 강의식 교육일 때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반영으로 해석됨.

○ 강사 섭외 현황을 보면, 지인추천이나 인터넷 검색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섭외하는 비율이 41.8%로 나타나 강사 인력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유의견에서도 확인되는데, 강사 매칭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8.9%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교육과정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75.8%에서 63.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시간과 강의자료 및 교재, 교육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최근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경우 직원의 경우 모든 기관 월평균 2.6시간, 학생 및 유치원생의 경우 0.5시간인 반면, 희망교육시간의 경우 성인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유치원생 및 학생의 경우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현황과 희망시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 감수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특히 학령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중요성이 높음. 학령기 교육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으로 김수연(2013)의 제안과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시 학년(연령) 수준에 맞게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고, 주입식 강의보다는 새롭고 다양한 교수법 개발이 필요함.

○ 또한 교육횟수의 경우 희망하는 교육횟수는 연1회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2.5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에 대한 교육 및 강의만족도와 긍정적 답변 비율이 다른 내용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교육방법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이 41.0%에 달함. 이는 자유의견에서도 확인되는데, 교육대상별 교육방법의 개발과 다양한 교육방법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 등과 연동되는 내용으로 강사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높게 나타났으나 관련법과 유사교육의 차이점, 접근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응답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재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은 4.3점에서 4.5점으로 높게 나타나, 강사대상 동일 문항 분석 결과와 더불어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의 확대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유사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때 어려움으로 과반수 이상이 응답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피로감이 높다'는 의견과 연동되는데, 이는 자유의견에서 제시된 유사법정교육이 많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Ⅳ.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

1.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설계

1) 조사의 목적과 내용

○ 본 연구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해 진행된 설문조사를 기반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위한 질문지를 구성함.

○ 조사 참여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각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함.

(1)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를 중심으로 〈표 Ⅳ-1-1〉과 같은 질문내용을 담은 반구조화 질문지를 준비하여 진행함.

〈표 Ⅳ-1-1〉 강사 대상 초점집단면접 질문내용

구분	인터뷰 질문
유사 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	· 유사 법정의무교육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 · 현재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차이점 ·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 일원화 방식은 어떠한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현재의 운영체제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 교육의 효과라고 인식하는 실제 사례는 무엇인가? · 강의 후 강의에 효과가 있었음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방법	· 연 1회 의무교육의 한계는 무엇인가? · 교육내용과 범위, 교육방법 등의 문제점은? · 강사양성체계에 대한 의견은? · 강사보수교육에 대한 의견은? · 교육 시 맞닥뜨리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법령으로 정한 교육기관 자격기준은 적정한가? ☞ 교육기관 활성화 관련 운영·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구분	인터뷰 질문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의견 · ※ 법정의무교육 수준을 넘어서 대국민 대상 장애인식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 발전방안 ☞ 정책·제도적 측면 발전방안 - 범정부(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대한 의견 - 캠페인 활동(장애공감주간 등)의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 법적 측면(현재 장복법25조 개정) 발전방안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외 대국민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 현재 의무교육 측면 발전방안 - 정책·제도적 방안, 법 개정방안 등
기타 의견	· 마지막으로 연구진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되는 실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표 Ⅳ-1-2〉와 같은 질문내용을 담은 반구조화 질문지를 준비하여 진행함.

〈표 Ⅳ-1-2〉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질문내용

구분	인터뷰 질문
유사 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	· 유사 법정의무교육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 · 현재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차이점 ·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 일원화 방식은 어떠한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현재의 운영체제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 교육의 효과라고 인식하는 실제 사례가 있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방법	· 연 1회 의무교육의 한계는 무엇인가? · 교육내용과 범위, 교육방법 등의 문제점은? · 강사진 섭외와 사례제공, 강사양성체계 등에 대한 의견은? · 교육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 교육을 운영하며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낄 때는?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의견 · ※ 법정의무교육 수준을 넘어서 대국민 대상 장애인식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 발전방안 ☞ 정책·제도적 측면 발전방안

구분	인터뷰 질문
	- 범정부(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대한 의견 - 캠페인 활동(장애공감주간 등)의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 법적 측면(현재 장복법25조 개정) 발전방안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외 대국민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 현재 의무교육 측면 발전방안 - 정책·제도적 방안, 법 개정방안 등
기타 의견	· 마지막으로 연구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 자료수집방법

○ 초점집단면접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풍부히 줄 수 있는 강사 8명,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7명으로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활동하는 강사들과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중 1차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참여자 중에서 1차로 대상자를 확보한 후, 차례로 연락하여 연구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없는 참여자로 선정함.

○ 초점집단면접은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이메일로 설명문과 연구참여동의서를 배부하여 인터뷰 전까지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약 120분 동안 비대면(zoom 활용)으로 진행함.

○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추천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사의 연구진들과는 초면인 관계가 대부분이었음.

○ 따라서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맺기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 또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참여자가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진이 이들이 보이는 시선에서 항상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였음.

○ 이러한 노력들은 인터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 특별히 의무교육 담당자의 경우는, 기관의 상황과 업무의 차이로 인해 낯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초점집단면접이 진행될 수 있었음.

○ 강사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Ⅳ-1-3〉과 같이 확인됨.

〈표 Ⅳ-1-3〉 장애인식개선 강사 연구참여자 특성

순	이름	성별	연령	총 활동기간	장애 유무	비고
1	연구참여자 A-1	여	55	9년 10개월	지체장애, 심한장애	
2	연구참여자 A-2	남	35	9년 9개월		위촉
3	연구참여자 A-3	남	47	10년	지체장애, 심한장애	위촉
4	연구참여자 A-4	여	38	3년 10개월		위촉
5	연구참여자 A-5	여	40	7년 10개월	뇌병변장애, 심한장애	위촉
6	연구참여자 A-6	여	43	21년 5개월		위촉
7	연구참여자 A-7	여	47	18년		위촉
8	연구참여자 A-8	남	40	13년 8개월	지체장애, 심한장애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 담당자 연구참여자는 정부 기관 1명, 학교 4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1명 등 총 7명이 선정됨.

○ 의무기관 담당자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Ⅳ-1-4〉와 같이 확인됨.

〈표 Ⅳ-1-4〉 장애인식개선 의무기관 담당자 연구참여자 특성

순	이름	성별	연령	총 활동기간	직무	기관 유형
1	연구참여자 B-1	여	33	6년 10개월	인사팀 대리	A
2	연구참여자 B-2	여	54	25년 9개월	간호사, 보건교사	B
3	연구참여자 B-3	여	36	10년 8개월	간호사, 보건교사	
4	연구참여자 B-4	여	48	19년 8개월	중등특수교육 1급정교사	
5	연구참여자 B-5	여	40	17년 4개월	중등정교사1급, 사회복지사2급	
6	연구참여자 B-6	여	45	25년 7개월	유치원정교사1급, 유치원 원감	C
7	연구참여자 B-7	여	52	22년	유치원정교사1급 어린이집 원장	

3) 자료 분석 방법

○ 자료분석은 인터뷰 내용을 필사한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분석함.
○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읽고 난 뒤, 재독할 때에는 한 줄씩 읽고 떠오르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면담 내용을 분류시켜 나감.
○ 새로운 주제가 나타날 때마다 사전의 응답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함.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코드들 간에 연관성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중심 주제로 분석해 나감.
○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의도적으로 얻고자 하는 주요 정보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함.
○ 또한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편견이나 인식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수시로 검토하면서 전문가의 연구 자문을 병행하여 진행함.

4) 연구 윤리의 엄격성

○ 질적조사에서는 특별히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들이 중요함.
○ 본격적인 초점집단면접이 진행되기 전에 이메일로 설명문과 연구참여동의서를 배부하고 참여에 동의(비밀보장, 익명성,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기록 녹음·녹화 동의 등)를 구하는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침.
○ 또한 면접이 종료된 후에도 희망하는 경우 추가적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함.
○ 면접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진들 간에 주 1회 이상의 회합을 지속해 나갔으며, 사회복지학과 교수 3인에게 구체적인 연구 자문 및 피드백을 받으며 연구를 진행함.

2. 교육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1) 강사 대상 FGI

○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식'을 비롯한 15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음.
○ 이는 다시 '장점'을 비롯한 8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짐.
○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를 비롯한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대상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은 〈표 Ⅳ-2-1〉과 같이 확인됨.

〈표 Ⅳ-2-1〉 강사 대상 FGI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	장점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식
		당사자와 삶과 연계된 정보 중심 교육
	단점	의무교육이 주는 피로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기존 효과성 측정의 한계	연 1회 1시간의 효과성 측정의 무의미
		신뢰할 수 없는 효과성 조사방식
	신뢰할 수 있는 효과성 측정 방법	동일 기업·기관의 지속적인 강사 초빙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	교육 대상	장애 당사자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
		기관장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교육 시간	교육 시간 3-5회기 확대
	강사	강사양성의 일관성
		강점 중심 강사 관리 및 파견
		수준 높은 보수교육 필요
		행정의 일관성
		쌍방향 평가 필요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	미디어 활용	미디어 노출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필요

(1)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

○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의 하위범주로는 ‘장점’과 장점으로 나타남.

① 장점

○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와 관련된 하위범주 ‘장점’ 아래 첫째, 다른 교육들과 달리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방식’이 확인됨.

○ 교육대상자의 대상층이 넓어 대상자에 대한 강사의 전문적인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함을 드러냄.

연구참여자 A-1: 다른 법정교육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것 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하지 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A-6: 교육, 교사 대상, 학생 대상이 대상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하는 교육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 둘째, ‘당사자의 삶과 연계된 정보 중심 교육’으로 나타남.

○ 장애 당사자의 사례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의 특성상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전달 및 당사자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

연구참여자 A-7: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좋은 점은 이런 것이 아닐까, 당사자 학생이나 당사자의 힘든 점을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강의에 녹여서 이것이 어떻게 이 반에서, 이 학교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잘 녹여낼 수 있는가?

연구참여자 A-4: 우리 일상생활 속의 사례들이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4: 장애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을 때 정보 교육으로서도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단점

○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와 관련된 하위범주 ‘단점’ 아래 ‘의무교육이 주는 피로감’으로 나타남.

○ 유사법정교육과 비교해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수행기관의 입장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육 참여로 인한 피로감이 있음.

연구참여자 A-8: 기업체나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피로감이 있지요.~법정의무교육~레임에 속한 하나일 뿐

연구참여자 A-2: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의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

(2)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하위범주로는 '기존 효과성 측정의 한계', '신뢰할 수 있는 효과성 측정 방법'으로 나타남.

① 기존 효과성 측정의 한계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하위범주 '기존 효과성 측정의 한계' 아래 첫째, '연 1회 1시간의 효과성 측정의 무의미'로 확인됨

○ 장애인식 개선이 연 1회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효과성 측정 또한 무의미함이 드러남.

○ 연 1회 40분 교육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고, 빠르게 끝내줄 것을 요청하는 현실 상황상 효과성 측정의 한계점이 확인됨.

연구참여자 A-8: 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일단 법정의무교육 안에서의 인식개선교육은 1회기가 한 시간 안에 되다 보니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A-2: 단 한 번의 교육으로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A-1: 수업시간 40분이라는 초등학교 수업 안에 이 교육을 다 하기에는, 거기에다가 또 빨리 끝내달라고 선생님도 계셔서 30분 안에 이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가서요.

○ 둘째, 1년 한 번 교육으로 설문지를 통해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효과성 조사방식'임

○ 전문적인 다른 방식이 존재해야 함

연구참여자 A-5: 그리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저희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설문지를 받기도 하는데, 이 설문지에 대한 신빙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② 신뢰할 수 있는 효과성 측정 방법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하위범주 '신뢰할 수 있는 효과성 측정 방법' 아래 '동일 기업·기관의 지속적인 강사 초빙'으로 나타남.
○ 동일 교육을 위해 같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초청하는 사실 자체가 효과성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드러남.

연구참여자 A-4: 지금 같은 기관을 3년째 하고 있는데 ~ 저를 불러주시고 '좋은 교육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감을 표출해 주시니까 저도 거기에 부응하고자 강의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

(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의 하위범주로는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강사' 등으로 나타남.

① 교육 대상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의 하위범주로는 '교육 대상' 아래 첫째, '장애 당사자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가 확인됨.
○ 장애 당사자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로 확대되어야 함이 요구됨.

연구참여자 A-7: 장애인 또는 장애 아이들도 이런 교육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사자로서 자기 장애를 이해하지 못해요

○ 둘째, '기관장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또한 등장함.
○ 대부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되면, 기관장은 인사 후 떠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
○ 이에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보고됨.

연구참여자 A-3: 기관장이 참여한 경우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

질적인 교육 효과로 이어져야

② 교육 시간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의 하위범주로는 '교육 시간' 아래 '교육 시간 3-5회기 확대'의 필요성이 드러남.
○ 오랜 강사 활동 경험상 3-5회기 정도의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강의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연구참여자 A-6: 저는 3회기나 5회기 정도 하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효과가 훨씬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설득합니다.

③ 강사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의 하위범주로는 '강사' 아래 첫째, '강사양성의 일관성'이 나타남.
○ 일관성 있는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강사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드러남.

연구참여자 A-3: 여러 경로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가 양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모 기관에 가면 '전에 왔던 강사가 노래만 부르다 갔어요.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의 하위범주로는 '강사' 아래 둘째, '강점 중심 강사 관리 및 파견'이 등장함.
○ 교육 대상을 기업 혹은 일반으로 구분해 강사의 강점을 중심으로 관리와 파견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장애인개발원이 플랫폼 혹은 코디네이션 역할을 통해 강사 관리 및 파견을 통해 강의가 연결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드러남.

연구참여자 A-8: 기업체에 가는 강사 또는 일반 비장애인들에게만 가는 강사, 이런 식으로 조금 강사들의 강점에 따라서 이원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A-6: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개발원도 이런 코디네이션에 주 전문가가 있어서,~~제대로 된 정보들을 전달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의 하위범주로는 '강사' 아래 셋째, '수준 높은 보수교육 필요'가 나타남.
○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금보다는 품질 높은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됨.

연구참여자 A-6: 좀 더 품질이 높은 보수교육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의 하위범주로는 '강사' 아래 넷째, '행정의 일관성'의 필요성이 요청됨.
○ 행정적으로 기관 혹은 기업의 제출 서류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드러남.
○ 행정적으로 강사료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함

연구참여자 A-4: 서류가 기관서류가 아닌 자의적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서류로 해 주세요.'라는 기관도 상당히 많아요.

연구참여자 A-7: 내용은 똑같은데 어떨 때는, 지금 당사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당사자 선생님들이 30만원 받을 때 저는 10만원 받습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의 하위범주로는 '강사' 아래 넷째, '쌍방향 평가 필요'가 요청됨.
○ 교육대상자의 강사평가와 같이 강사의 대상자 평가가 쌍방향으로 진행될 때 교육의 효과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냄.

연구참여자 A-4: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사가 평가하는 쌍방향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의 하위범주로는 '미디어 활용'이 나타남.

① 미디어 활용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의 하위범주로는 '미디어 활용' 아래 '미디어 노출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필요' 개념이 나타남.
○ 대국민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위해서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장애인 수의 퍼센티지를 명확하게 법제화가 요청됨.

연구참여자 A-5: 외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든 영화든 예능이든 모든 프로그램에 법적으로 딱 장애인이 나오는 퍼센티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FGI

○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을 비롯한 15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음.
○ 이는 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고민'을 비롯한 6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짐.
○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를 비롯한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은 〈표 Ⅳ-2-2〉와 같이 확인됨.

〈표 Ⅳ-2-2〉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FGI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고민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
		교육의 중요도가 떨어짐
	대상별 인식개선 교육 필요	연령·대상 등 개별 교육과정 필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효과적	영유아에게 매우 효과적임
	비효율적	인식개선에 도움이 안 됨
		새로운 업무 부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교육에 노출된 이들에게 비효율적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	플랫폼 시스템 필요	실적관리 연계 필요
		인센티브 필요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	교육 방법 개발	경험중심 콘텐츠 개발 필요
		관리자급 교육의 필요
		범교과학습으로 편성 필요

(1)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

○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의 하위범주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고민’과 ‘대상별 인식개선교육의 필요’ 등으로 나타남.

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고민

○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의 하위범주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고민’ 아래 첫째,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으로 개념화됨.

○ ‘매년 반복’, ‘이것도 해’ 등의 워딩을 통해 의무교육기관 담당자들의 교육에 대한 피로감과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드러남.

연구참여자 B-4: 예, 요즘 저희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법정의무연수 때문에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이런 말 나오면 선생님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 또 하는 거야?’

연구참여자 B-2: ‘이것도 해야 해?’라는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 둘째, ‘교육의 중요도가 떨어짐’이 나타남.

○ 유사법정의무교육과 비교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함.

연구참여자 B-2: 다른 여타의 법정의무교육보다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② 대상별 인식개선교육의 필요

○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의 하위범주 ‘대상별 인식개선교육의 필요’ 아래 ‘연령·대상 등 개별 교육과정 필요’가 나타남

○ 기관, 대상 등의 구성원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이 확인됨.

연구참여자 B-4: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의 어떤 성격 내지는 구성원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하위범주로는 '효과적'과 '비효율적' 등으로 나타남.

① 효과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하위범주로는 '효과적' 아래 '영유아에게 매우 효과적임'의 개념이 나타남.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기에 교육이 진행되면 그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됨.

> 연구참여자 B-2: 장애인식개선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치원은 특수아가 전혀 없고 비장애아이들만 다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이들이 그 교육을 한 번 받고 나면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② 비효율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하위범주로는 '비효율적' 아래 첫째, '인식개선에 도움이 안 됨'으로 개념화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진행을 통해 인식개선이 이루어짐이 확인되거나 혹은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음.

> 연구참여자 B-5: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만 이것이 전혀 인식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 연구참여자 B-4: 이 교육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주관적으로 저희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없어요.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하위범주로는 '비효율적' 아래 둘째,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다가옴

○ 직무 외의 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활동하고 정리하는 상황들이 드러남.

> 연구참여자 B-7: 마음속으로 필요한데 바쁘다 보니까 숨으로 들으면 숨만 켜놓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하위범주로는 '비효율적' 아래 셋째,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교육에 노출된 이들에게 비효율적임'이 확인됨

○ 10년, 15년 이상 오래된 직원들에게 교육은 또다른 일로 인지될 뿐,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됨.

연구참여자 B-1: 과거에 했던 교육에 대해서 인지는 다들 하고 계시는데 새롭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인지가 어렵습니다.

(3)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

○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의 하위범주로는 '플랫폼 시스템 필요'로 나타남.

① 플랫폼 시스템 필요

○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의 하위범주로는 '플랫폼 시스템 필요' 아래 첫째, '실적관리 연계 필요' 개념으로 등장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플랫폼 시스템이 개발되어 모든 실적이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함.

연구참여자 B-3: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은 하나를 입력함으로써, 그런 부분은 좋았지만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과거의 교육과 그 이전의 교육과 다른 학교들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이나 연계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의 하위범주로는 '플랫폼 시스템 필요' 아래 둘째, '인센티브 활용'이 요청됨.

○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실적관리와 연동시켜 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기대가 확인됨.

연구참여자 B-7: 그다음에 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상벌이 있어야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4)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의 하위범주로 '교육 방법 개발'로 나타남.

① 교육 방법 개발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의 하위범주로 '교육 방법 개발' 아래 첫째, '경험

중심 콘텐츠 개발 필요'가 확인됨.

○ 일방적인 교실 교육에서 벗어나 실재적 경험, 체험형, 실감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 중심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보고됨.

연구참여자 B-5: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해 보면 '아, 이분들을 위해 우리의 배려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또는 저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B-7: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체험형 놀이 위주로 한다든지 동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현장에서 많이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B-4: 책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아니라 실감형으로 생활에서 체득이 되어야 정말 저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의 하위범주로 '교육 방법 개발' 아래 둘째, '관리자급 교육의 필요'가 부각 됨.

○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 관리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연구참여자 B-1: 저는 실제로 관리자급을, 고용주라고 하지요. 관리자급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의 하위범주로 '교육 방법 개발' 아래 셋째, '범교과학습으로 편성 필요' 개념이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1년 1시간 교육으로 처리될 수 없는 교육이므로, 범교과학습을 통한 교육으로 제도화에 대한 욕구가 나타남.

연구참여자 B-3: 범교과학습이라고 해서 영어 국어 이런 데에도 장애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영어교과에는 장애와 관련된 영어 단어 부분, 국어에는 '장애감수성'이라는 단어적인 용어 부분 해서 다양한 교과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교과서나 이런 자료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3. 교육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에 대한 소결

○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예비 문항 설계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강사와 비위촉 강사 총 8명으로 구성된 강사 그룹과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인 A, B, C유형에 해당되는 기관의 종사자 7명으로 구성된 의무교육 대상기관 그룹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함.

○ 인터뷰 질문 내용은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에 대한 세부 질문은 그룹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함.

○ 강사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질문 내용의 4개 영역인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이 상위범주로 도출되었고, '장점'과 '단점'을 비롯한 8개의 하위범주와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식'을 비롯한 15개의 개념이 도출됨.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유사 법정의무교육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장점으로는 교육 대상자의 층이 넓기에 강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장애 당사자의 삶이 곧 교육의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단점으로는 법정의무교육이 가지는 교육 대상 기관의 피로감을 지적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견으로 기존 효과성 측정의 한계로 연 1회 1시간의 교육으로는 효과성 측정이 무의미하며, 1회성 설문 방식의 효과성 측정으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효과성 측정 방법으로 동일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강사에게 교육의뢰를 하는 예를 제시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대상에 장애 당사자도 포함해야 하며, 교육 대상 기관의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며, 교육 시간 또는 횟수를 3~5회기 정도 진행했을 때 교육의 효과를 보이며,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강사 양성의 일관성과 강점 중심 강사 관리 및 파견, 그리고 수준 높은 보수교육, 행정의 일관성과 쌍방향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함.

○ 의무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강사 그룹과 동일한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고민'을 비롯한 하위범주 6개,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을 비롯한 15개의 개념이 도출됨.

- 유사 법정의부교육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어가고, 타 법정의무교육에 비해 교육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는 점을 지적하였고, 광범위한 교육 대상자의 특성(연령/대상 등)에 따른 개별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효과적인 반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느낌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은 직원들에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해 실적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등의 방식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시함.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일방적인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경험 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기관장과 같은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범교과학습으로의 편성이 필요gk다고 강조함.

4. 교육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1) 조사 방법 및 절차

○ 본 조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효과성 측정 및 평가지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초안에 대해 수 차례 연구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델파이 조사를 위한 평가지표(안)을 개발함.

○ 개발된 평가지표(안)에 대한 검증과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집단을 구성하여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함.

○ 델파이 조사는 평가지표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여건에서 관련 주제에 대하여 사전에 검증된 판단을 적용하여 가능한 대안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개발하는 데 유용함(Sandford, 2007).

○ 본 조사를 위해 다음 [그림 Ⅳ-1]과 같이 절차를 수행함.

1단계	문헌분석 및 초안 개발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교육 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분석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 개발
⬇		
2단계	연구진 검토 및 델파이 패널 구성	3차에 걸친 연구진 검토를 통해 개발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장애인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등 20명의 패널 구성
⬇		
3단계	델파이 조사	1차: 평가조사 초안에 대한 내용타당도 및 적합도 검증 2차: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 및 수정한 평가지표에 대한 동의도 검증
⬇		
4단계	평가지표 개발	문헌분석, 연구진 검토, 델파이 조사,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취한 평가지표' 개발

[그림 Ⅳ-1]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절차

2) 평가지표 개발과정

(1) 측정 대상의 규정

○ 특정 프로그램 또는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을 규정해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학생임.

○ 이에 본 평가지표의 측정 대상을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기관 소속 직원과 학생으로 규정함.

(2) 문헌분석 및 적용모델

○ 문헌분석 단계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교육, 교육프로그램 등의 성과 및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만을 선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은 2장(Ⅱ)에 제시됨.

○ 문헌분석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평가지표 개발이 장애라는 현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에 기반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내·외적으로 장애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 및 강화에 있음을 확인함(박승희 외, 2022).

○ 교육이 미래지향적 가치재이며, 적용 범위 광범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효과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을 상기하고, 공공재인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Kirkpatrick Model의 4단계 평가모델을 본 연구의 적용모델로 선정함(이전 등, 2021).

① 적용모델: Kirkpatrick Model

○ Kirkpatrick Model은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강소랑 외, 2022),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총 4단계로 구성됨.

○ Kirkpatrick, D.L. and Kirkpatrick, J.D.(2006)은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Kirkpatrick의 4단계 모형은 논리적이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단계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조직에서 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음(김경태 외, 2017; 박윤주, 2019; 김은지, 2023).

○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형은 교육프로그램, 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측정하는 데 주로

활용되며 순차적인 위계성을 가짐(Kirkpatrick, 2006, 2008; 박상옥 외, 2010; 전주성 외, 2011; 유재남 외, 2012).

- 반응(Reaction) 평가: 교육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했는가를 측정하는 것.
- 학습(Learning) 평가: 교육을 통해 실제로 무엇(지식, 기능, 태도)을 습득했는지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는 것.
- 행동(Behavior) 평가: 학습한 내용(지식, 기능, 태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평가. 실제 행동 평가나 실생활 적용도 평가라고도 하며, 교육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뒤에 하는 것.
- 결과(Result) 평가: 조직기여도 평가로 교육이 경영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에 대비한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효율성 평가라고도 함.



[그림 Ⅳ-2] Kirkpatrick 모델

참고: https://www.kirkpatrick.co.kr/kpmodel 접속일: 2023년 11월 10일

② Kirkpatrick Model의 용어 정의

○ Kirkpatrick Model의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 〈표 Ⅳ-4-1〉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Ⅳ-4-1〉 Kirkpatrick Model의 용어

용어	정의
Level 1(반응)	교육참여자가 교육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몰입하는지, 그들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찾는 정도
Level 2(학습)	교육참여자가 교육 목표에서 의도한 지식, 기술, 태도를 획득하고 자신감과 확신을 획득하는 정도
Level 3(행동)	교육참여자가 교육기간 동안 학습한 것을 현장 또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정도
Level 4(결과)	교육과 지지 및 책임감의 통합적 결과로 발생하는 목표 달성의 정도
지식	교육참여자가 특정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
기술	교육참여자가 교육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정도
태도	교육참여자가 교육에서 배우 것을 실생활(또는 현업)에 구현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
자신감	교육참여자가 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또는 현업)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확신	교육참여자가 교육 중에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현업에 적용하려는 정도
몰입	교육참여자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정도
관련성	교육참여자가 실생활(또는 현업)에 돌아갔을 때 교육에서 배운 것을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정도
모니터링과 조정	공식적인 교육이 완료된 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과 강화, 모니터, 격려, 보상체계와 과정 이행 정도

참고: Kirkpatrick(2016), Kirkpatrick's Four Levels of Training Evaluation 용어 재구성.

③ Kirkpatrick Model을 적용한 선행연구 측정지표정리

○ Kirkpatrick Model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의 측정지표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4-2〉와 같음.

〈표 Ⅳ-4-2〉 Kirkpatrick Model의 4단계 적용 측정지표 선행연구

	'반응' 측정지표	'학습' 측정지표	'행동' 측정지표	'결과' 측정지표
전주성 · 김소영 (2011)	전반적인 교육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만족도, 교육대상자의 만족도, 기대효과 충족 정도, 지속적인 참여 의사 등	전반적인 교육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만족도, 교육대상자의 만족도, 기대 효과 충족 정도, 지속적인 참여 의사 등	업무수행내용(업무수행과 관련된 직무내용 이해, 직무 숙련 기간, 지식기술 활용, 조직 적응 정도), 사회심리적 요소(직무만족도, 직무몰입도, 참여도, 협업	참여목적 달성 정도, 조직 채용성과 정도, 지식 기술 습득 향상 정도, 직무 교육부담 경감 정도, 조직성과 향상 등
성을현 외 (2014)	교육 행정사항, 교육 내용, 교육 진행과정, 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 등	교육을 통한 업무관련 지식 습득 정도, 교육을 통한 업무관련 기술 습득 정도, 교육을 통한 업무 태도의 긍정적 변화 등	교육 훈련 내용의 실제 업무 사용 정도, 교육을 통한 업무수행 향상 정도, 교육 내용의 업무 적용 시도 정도, 교육이 실제업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 등	생산성 증대와 조직몰입도 증대(회사 생산성 증대에의 기여, 충성 기업에 대한 충성심 증대, 기업과의 일치감 증대, 이직 의도의 감소 등)
이전 · 권선진 · 임정기 (2014)	전반적 만족도, 진행방식, 학습환경, 교육정도, 교육수준, 도움정도 등	교육의 가치나 윤리, 지식, 기술에 대한 충분성	실제 행동과 사고의 변화 정도	-
김경태· 최동연· 이보림· 윤성원 (2017)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의 적절성, 교수자 활동, 교수자로의 적절성, 교수법, 교수환경, 지원서비스, 교육대상자의 만족도	음악적 지식의 변화, 연주실력 향상, 태도 변화	-	-
강소랑· 이은정· 김영식 (2018)	교육 프로그램 기획,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방법, 피드백, 전반적 만족도	학습일반 달성도,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태도 변화, 자신감 배양, 삶의 방향성 설정 도움 정도, 지식 및 경험 공유 정도, 활동·일의 의미 고민, 동기 부여, 향후 활동 결정도움도	실제 행동과 사고의 변화 정도	-

3) 델파이 조사

(1) 전문가 패널 집단 구성

○ 본 조사를 위한 전문가 패널은 장애인 관련 학계 전문가 10명과 장애인 관련 현장 전문가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Ⅳ-4-3〉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 현황

구분	ID	분야	소속	직위	최종학력	전공	총경력	장애 여부
학계 전문가	C1	특수교육, 위기청소년	W대학교	교수	박사	특수교육	31년	
	C2	장애인복지	S대학교	교수	박사	사회사업학	18년	
	C3	장애인 평생교육	K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	소장	박사	특수교육	27년	
	C4	장애인복지	K대학교	교수	박사	사회복지학	29년	
	C5	장애인복지	D대학교	교수	박사	사회복지학	27년	
	C6	장애인복지	L대학교	교수	박사	사회복지학	20년	
	C7	장애인복지, 인권	J대학교	부교수	박사	사회복지학	22년	
	C8	장애인복지, 장애인고용	K장애인연구원	책임 연구원	박사	아동복지	6년	
	C9	장애인복지	C대학교	부교수	박사	사회복지학	14년	
	C10	장애인복지	G대학교	초빙 교수	박사	사회복지학	15년	
현장 전문가	D1	장애인인권, 권익옹호	D사회적협동조합	간사	대졸	사회복지학	8년	
	D2	사회복지	S복지재단	연구 위원	박사	사회복지학	15년	
	D3	장애인 연구 및 통계	K개발원	부장	박사 수료	통계학	21년	
	D4	지체장애	H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장	박사 과정	특수교육 사회복지	11년	
	D5	장애인복지	N뇌병변 장애인센터	센터장	석사	사회복지학	29년	
	D6	장애인복지	D장애인복지관	사무 국장	석사	상담복지	20년	
	D7	장애인고용 정책	K공단	실장	박사	재활공학	23년	시각 장애
	D8	장애인복지	C장애학생 지원센터	전문 연구원	박사	사회복지학	10년	
	D9	장애인정책	K시각장애인 연합회	팀장	석사 수료	사회서비스	17년	시각 장애
	D10	발달장애인	S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팀장	대졸	중등특수교육	10년	

(2) 델파이 조사를 위한 평가지표(안) 개발

○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문헌분석과 Kirkpatrick Model의 4단계 평가모델을 기초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예비문항을 개발함.

○ 개발된 예비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 및 문항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3차에 걸친 연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 49개의 문항으로 1차 델파이 설문 문항이 구성됨.

○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문항 초안은 다음과 같음.

〈표 Ⅳ-4-4〉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

영역	항목	세부항목	지표(안)
A 반응 평가	선호도	교육계획	1. 연간 사업계획(예산 포함)에 교육 포함
			2. 학습자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기획
			3.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강사 선정
		교육준비	4. 교육 장소 및 환경 적절성
			5. 교구 및 교재의 적절성
			6. 장애인(강사, 구성원 등)에 대한 고려
		교육운영	7. 연간 교육 횟수와 시간(산출)
			8. 수강인원 적절성
			9. 교육 시간 적절성
			10. 교육내용 적절성
		교육 선호도	11. 교육이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
			12. 교육 참여에 대한 기대
	몰입도	교육 참여 정도 및 촉진요소	13. 교육 참여 수준
			14. 교육내용의 계획했던 요구와 수준 적합도
			15. 교육 방법의 교육참여자 참여 촉진 정도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16. 전반적 만족도
			17. 교육 추천 의사
			18. 심화된 유사 교육 재 수강 여부
B 학습 평가	지식	교육내용 이해도	19. 교육내용 이해도
		내용 적절성	20.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구성
		도움 적절성	21. 장애인식에 긍정적 도움
	기술	기술인식	22.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 적용 방법 인식
		적용기술	23.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 적용 기술 습득
		실행기술	24.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실용 기술 습득
	태도	가치와 태도의 변화	25.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의 사회적인 가치
			26.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의 개인적 가치
	자신감	실행 동기 형성	27. 실천 동기 형성
			28. 교육내용 추천 동기
	확신	실행 경험	29. 교육내용 실천

C 행동 평가	조직 차원 변화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	30. 장애 감수성 증진
			31. 편의시설 증진
			32. 장애인 구성원과 소통 증진
	개인 차원 변화	장애에 대한 이해	33.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
			34.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35. 장애 관련 뉴스나 보도 내용 관심 증진
			36. 장애인과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음
		적용도	37. 장애인 관련 참여 활동에 관심
		실행도	38. 장애인 관련 활동에 참여
	관련성	실생활(업무) 관련성	39. 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 여부
			40. 교육에서 배운 내용의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 여부
			41.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도움 여부
	모니터링	보상	42. 교육을 통한 성장
		환류	43. 교육 재참여 욕구
D 결과 평가	기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44. 교육의 사회변화 기여도
			45. 교육 참여의 사회변화 기여도
	효율성	투입 대비 효과	46. 교육에 투자한 시간 대비 성과
			47. 교육에 투입한 예산 대비 성과
			48. 교육에 참여한 노력 대비 성과
			49.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포기한 기회 대비 성과

(3) 1차 델파이 조사

○ 1차 델파이 조사는 2023년 10월 27일부터 202년 11월 5일까지 실시됨.

○ 1차 델파이 문항은 총 49개의 폐쇄형 문항으로 Kirkpatrick Model의 4단계를 적용하여 A. 반응평가 18개 문항, B. 학습평가 11개 문항, C. 행동평가 14개 문항, D. 결과평가 6개 문항으로 구성됨.

- 각 문항은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문항으로 타당한 정도를 5점 평정척도(1=전혀타당하지않다, 2=타당하지않다, 3=보통이다, 4=타당하다, 5=매우타당하다)를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을 적용할 대상을 교육담당자, 교육대상자(직원, 학생)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구성함.
- 또한, 각 문항과 단계별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추가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자유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문항을 추가함.

○ 1차 델파이 설문지는 총 2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모든 응답자로부터 응답된 설문지를 회수함.

-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문지 발송 시, 연구목적과 전문가 구성에 대한 기준, 조사기관 및 연구진 정보제공을 통해 연구참여에 대한 사전 고지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 및 개인정보수집 및 비밀보장에 대한 동의를 구함으로써 연구 윤리에 대한 고려사항을 이행함.
- 또한,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방법을 고지함으로써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함.

○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양적분석과 자유 의견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문항의 유지와 수정, 삭제 및 추가 등을 통해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이 개발됨.

○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 및 조정된 2차 델파이 문항은 〈부록 6〉 참조.

(4) 2차 델파이 조사

○ 2차 델파이 조사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년 11월 16일까지 실시됨.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2차 델파이 문항은 총 41개의 폐쇄형 문항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반응평가 16개 문항, B. 학습평가 12개 문항, C. 행동평가 9개 문항, D. 결과평가 4개 문항으로 구성됨.
- 2차 델파이 설문에는 먼저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된 내용타당도와 신뢰도 수준을 제시하고, 각 문항의 유지, 수정 및 삭제된 문항과 자유 의견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한 문항의 근거와 비교표를 부록으로 제시함.
- 또한, 문항별로 1차 조사의 집중경향치인 평균과 중앙값을 제시하고, 1차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수렴 도와 합의 도를 제시함으로써 전문가 패널이 이를 참고하여 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함.

○ 2차 조사는 수정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1=비동의, 5=동의)으로 배치하여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을 적용할 교육대상자를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구성하고, 각 문항과 단계별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추가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자유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문항을 추가함.

○ 2차 델파이 설문지는 총 2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출장으로 인해 응답이 어려운 학계 전문가 1명을 제외한 총 19명으로부터 응답지를 회수하여 결과 분석을 통해 최종 평가지표를 완성함.

(5) 자료분석

○ 1,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는 기술통계를 통한 집중경향 치(평균, 중앙값)과 산포도(표준편차, 사분위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은 Microsoft Excel 2019 Program을 사용함.
- 문항의 타당도 기준은 Murry와 Hammons(1995)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문항 평균이 4점 이상인 경우 타당하다고 간주하였으며, 표준편차는 1.0 미만인 경우 의견 일치도

가 높다고 분석함(박광옥 외, 2020; 박승희·양여경·이현주, 2022 재인용).

○ 개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값을 확인함.

- 아래의 내용타당도 비율 공식에서 N은 전체 패널 수이며, ne는 문항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임.
- Lawsh(1975)가 제시한 CVR 공식에 근거하여, 본 조사 참여 인원인 20명을 기준으로 할 때의 CVR값인 0.42 이상인 문항의 경우 내용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분석함.

$$\text{내용 타당도 비율(CVR)} = \frac{ne - N/2}{N/2}$$

[그림 Ⅳ-4-3] 델파이 조사 문항 내용 타당도 비율(CVR) 공식

○ 의견의 수렴도(degree of convergence)와 합의도(degree of consensus)를 산출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은 Microsoft Excel 2019 Program을 사용함.

- 전문가 패널집단의 의견에 대한 수렴도와 합의도를 산출하는 공식은 [그림 Ⅳ-2-3]과 같음.
- 공식에서의 Mdn은 중앙값, Q1과 Q3은 각각 제 1사분위와 3사분위 계수로써 전체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 75%의 값을 의미함.
- 수렴도는 의견이 한 점에 수렴되었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커지면 수렴도도 커지는 특성이 있음. 즉, 수렴도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전문가 패널집단의 의견이 수렴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합의도는 Q1과 Q3이 일치하여 완전히 합의되었을 때 1의 값을 가지며, 의견 편차가 커질수록 수치가 감소하는 특성을 가짐. 즉,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 패널집단의 의견이 합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qquad \text{합의도} = 1 - \frac{(Q_3 - Q_1)}{Min}$$

[그림 Ⅳ-4-4] 델파이 조사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 공식

4) 분석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① 양적분석

○ 문항의 집중경향치

- 1차 델파이 조사 전체 문항 평균은 4.17이며, 각 문항별 평균은 3.6~4.75으로 확인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시된 문항에 대한 가장 높은 평균값은 16번 문항인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함하였다.'(4.75)이며, 가장 낮은 평균값은 7번 문항인 '7. 1년간 진행된 교육 횟수는 적절하였다.'(3.89)임.
- 또한, 각 문항의 중앙값은 4~5로 나타남.

○ 문항의 타당도 분석

- 개별문항의 내용타당도 비율(CVR)값을 분석한 결과, Lawsh(1975)가 제시한 전문가 패널 20명일 때 최소값인 0.42 이상인 문항이 총 49개 문항 중 40문항에서 내용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패널들이 제시한 의견의 수렴도와 합의도 분석을 위해 중앙값과 사분위 범위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총 40개 문항에서 수렴도가 0.5 이하이며, 합의도가 0.75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가 높아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됨.

○ 문항의 신뢰도 분석

- 문항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한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0.936으로 나타남.

○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4-5〉와 같음.

〈표 Ⅳ-4-5〉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영역	하위영역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안)	평균	표준편차	수렴도	합의도	CVR	결과
A 반응평가	선호도	교육계획	1. 연간 사업계획(예산포함)에 교육이 포함되었다.	3.95	1.02	0.625	0.69	0.5	삭제
			2. 학습자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4.5	0.59	0.5	0.8	0.9	유지
			3.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강사로 선정되었다.	4.5	0.50	0.5	0.78	1	유지
		교육준비	4. 교육 장소 및 환경 적절성	4.1	0.70	0.5	0.75	0.6	유지
			5. 교구 및 교재의 적절성	4.1	0.70	0.5	0.75	0.6	유지
			6. 장애인(강사, 구성원 등)에 대한 고려	4.25	0.77	0.5	0.75	0.8	유지
		교육운영	7. 연간 교육횟수와 시간(산출)	3.90	0.83	1	0.5	0.2	삭제
			8. 수강인원은 적절하였다.	4.20	0.75	0.5	0.75	0.6	유지
			9. 교육시간은 적절하였다.	4.35	0.57	0.5	0.75	0.9	유지
			10. 교육내용은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다.	4.55	0.74	0.5	0.8	0.9	유지
		교육	11. 교육이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3.65	1.01	0.5	0.75	0.2	삭제

		선호도	12. 교육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있다.	3.65	1.01	0.5	0.75	0.2	삭제
	몰입도	교육 참여 및 촉진요소	13.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45	0.74	0.5	0.8	0.9	유지
			14. 교육내용은 계획했던 요구와 수준에 맞게 이루어졌다.	4.25	1.04	0.5	0.78	0.8	수정
			15. 교육방법은 교육참여자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이루어졌다.	4.40	0.86	0.5	0.8	0.7	유지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16.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75	0.54	0	1	0.9	유지
			17. 본 교육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4.60	0.58	0.5	0.8	0.9	유지
			18. 심화된 유사교육이 개설되면 또 수강하고 싶다.	4.50	0.59	0.5	0.8	0.9	수정
B 학습 평가	지식	교육내용 이해도	19.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였다.	4.45	0.59	0.5	0.78	0.9	유지
		내용 적절성	20. 교육내용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55	0.59	0.5	0.8	0.9	수정
		도움 적절성	21. 교육은 긍정적인 장애인식에 도움이 되었다.	4.65	0.48	0.5	0.8	1	수정
	기술	기술습득	22.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4.55	0.59	0.5	0.8	0.9	수정
		적용기술	23. 학습한 내용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게 되었다.	4.55	0.67	0.5	0.8	0.9	수정
		실천기술	24. 학습한 내용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기술을 얻게 되었다.	4.50	0.67	0.5	0.8	0.8	수정
	태도	가치와 태도의 변화	25.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55	0.59	0.5	0.8	0.9	기존 문항 통합
			26.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개인의 삶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40	0.66	0.5	0.78	0.8	
	자신감	실행동기	27. 교육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동기가 생겼다.	4.45	0.92	0.5	0.8	0.9	수정
			28. 교육받은 내용을 주변에 공유할 마음이 생겼다.	4.50	0.74	0.5	0.8	0.9	유지
	확신	실행결심	29.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였다.	4.10	1.09	0.5	0.75	0.6	수정
C 행동 평가 3)	조직 차원 변화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	30. 장애 감수성이 증진되었다.	4.25	0.94	0.5	0.78	0.7	수정
			31. 편의시설이 늘어났다.	3.30	1.19	0.5	0.75	0.1	삭제
			32. 장애인 구성원과 소통이 늘어났다.	4.05	0.92	0.5	0.75	0.6	유지
	개인 차원 변화	장애에 대한 이해도	33.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4.10	0.94	0.5	0.75	0.6	이동: C-)B
			34.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4.10	0.94	0.5	0.75	0.6	
			35. 장애 관련 뉴스나 보도 내용에 관심이 늘어났다.	4.10	0.62	0.125	0.94	0.7	수정
			36. 주변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4.15	0.70	0.5	0.8	0.6	수정
		적용도	37. 장애인 관련 참여 활동에 관심이 생겼다.	4.25	0.70	0.5	0.75	0.7	유지
		실행도	38. 장애인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다.	3.75	1.13	1	0.5	0.3	삭제
	관련성	실생활 (업무) 관련성	39. 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가 있었다.	3.55	1.28	0.75	0.63	0.3	삭제
			40.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25	0.77	0.5	0.75	0.8	수정

			41.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4.05	0.97	0.5	0.75	0.7	유지
	모니터링	보상	42. 교육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다.	4.15	0.73	0.5	0.75	0.6	유지
		환류	43. 교육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4.05	0.97	0.5	0.75	0.6	삭제
D 결과평가	기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44. 교육은 사회변화에 기여한다.	3.95	1.02	0.5	0.75	0.6	수정
			45. 교육 참여는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3.75	1.09	0.625	0.69	0.4	삭제
	효율성	투입 대비 효과	46. 교육에 투자한 시간 대비 얻은 것이 많다.	4.00	1.00	0.5	0.75	0.7	유지
			47. 교육에 투입한 예산 대비 얻은 것이 많다.	3.45	0.95	0.5	0.75	0.1	삭제
			48. 교육에 참여한 노력 대비 얻은 것이 많다.	3.60	0.92	0.5	0.75	0.3	유지
			49.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포기한 기회 대비 얻은 것이 많다.	3.25	0.94	0.5	0.67	0.1	삭제

② 질적분석

○ 1차 전문가 패널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각 문항에 대한 자유의견을 종합하면 〈표 Ⅳ-4-6〉과 같음.

〈표 Ⅳ-4-6〉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구분	내용
A. 반응평가	· '대상자 특성'은 '교육참여자 특성'으로 수정 제안. · 온라인교육인지 오프라인 교육인지에 따라 교육 장소의 타당도 정도가 달라짐. 교구 또한 온라인 강의면 큰 의미가 없음. · 교육 준비 및 연간 교육 횟수 문항들의 서술 형태 수정 필요.
B. 학습평가	·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요인들로서, 매우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 29번 문항인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였다.'의 경우 실천 기회가 없으면 실천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실천하였다. 혹은 실천할 의지가 생겼다."로 수정 제안. · 기술→적용→실행은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순차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겠음. · 기술 영역의 문항이 실제적인 내용과 적용점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적용하는 방향이 매우 긍정적임. · 21번 문항의 경우 장애인식이 지식인지 의문이 있음. 이를 장애와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등으로 수정 검토 필요. · 22번 문항 수정제안: 장애인과 협력 또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 23번 문항 수정제안: 장애인과 협력 또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 24번 문항 수정제안: 장애인과 협력 또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기술을 얻게~
C. 행동평가	· 30번 문항인 장애 감수성이 증진되었다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는 등의 추상적 표현보다는 '장애인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 '장애인 친구를 사귈 마음이 생겼다.', '장애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주면 좋겠음. · 31번 문항인 '편의시설이 늘어났다'의 응답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해결'(41번)을 '장애와 관련하여 어렵게 생각했던 점들을 해소하는데'로 수정 제안. · 33번과 34번 문항의 경우 학습 평가로 이동 제안.

	· 36번의 경우 '불편하다'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함. · 38번 '장애인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활동이 있다면 참여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이 적절하지만, 참여기회가 없었다면 질문이 타당하지 않음. · '증진되었다'를 '높어졌다'로 수정 제안.
D. 결과평가	· 기여도 문항인 41번과 42번은 같은 질문으로 이해됨. · 기여도의 경우 교육, 교육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를 묻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긍정적임. · '참여한 노력', '포기한 기회'라는 표현이 애매해 보여서 수정 제안. · 47번의 경우 "교육에 투입한 예산 대비 얻은 것이 많다."는 참여자들이 예산을 알기 어려우므로 적절치 않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수준을 높이며 사회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관한 질문이 타당함으로 생각.
추가의견	측정대상에 대한 의견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 후 평가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이 문항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대상에 따라 문항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주요 대상인 교육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구성해야 할 것 같음. · 현재 지표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 생각지만, 장애인의 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절실히 필요한바, 이에 대한 지표의 필요성을 제언에 언급해 주시거나, 별도로 개발해 주시면 좋겠음. 측정내용에 대한 의견 · 지표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하므로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주시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됨. · 다소 모호한 개념이나 기준에 대한 명료화 요구됨. · 지표간 중복성(가령 "다시 참여하고 싶다"-"또 수강하고 싶다", 교육 효과 관련 문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효과성 측정시점에 대한 의견 · 교육의 효과성 측정 시점에 따라 질문항목의 타당성이 유동적임. 교육 종료 이후라도 교육을 받고 나니 바로 자신의 생각이 바뀐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미래 시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임. 그러므로 현재(과거)형과 미래형을 구분할 필요가 이어 보임. ·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구성하고 있음. 단 성과지표 평가의 검토를 위해 평가 시기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함. 교육 직후 평가가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문항과 교육 후 어느 정도 시간 경과를 요구하는 문항이 혼재되어 있음. 내용구성에 대한 의견 · 교육대상자 폭이 넓은 만큼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음, 그럼에도 불구, 학생과 성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사항들을 매우 잘 도출했다고 판단됨.

③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표 조정내용

○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수정, 삭제, 조정하기로 결정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문항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10개의 문항(1, 7, 11, 12, 31, 38, 39, 45, 47, 49번 문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함.

- 43번 문항인 '교육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평균 4.05. 표준편차 0.97, CVR 0.6)의 경우 분석 결과가 모든 기준에 충족되었으나, 전문가 패널의 추가 의견에서 18번 문항(심화된 유사교육이 개설되면 또 수강하고 싶다.)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기로 결정함.
- 13개의 문항(14, 18, 20~24, 27, 29, 30, 35, 36, 40, 44)의 경우 전문가 패널의 문항에 대한 중복된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명확한 문항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함.
- B영역의 25, 26번 문항의 전문가 패널들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한 문항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함.
- C영역(행동평가)의 33번과 34번 문항의 경우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B영역(학습평가)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함.

○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유지, 수정, 삭제 및 추가한 내용은 〈표 Ⅳ-4-7〉과 같음.

〈표 Ⅳ-4-7〉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표조정 현황

영역	하위영역		1차 델파이 문항(49문항)		2차 델파이 문항(41문항)	반영결과
A 반응 평가	선호도 ▼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계획	1. 연간 사업계획(예산포함)에 교육포함		-	삭제
			-		1. 교육 안내(교육계획서) 자료에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	추가
			2. 학습자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기획		2. 학습자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기획	유지
			3.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강사선정		3. 교육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강사선정	수정
		교육준비	4. 교육 장소 및 환경 적절성		4. 교육 장소 및 환경 적절성	유지
			5. 교구 및 교재의 적절성		5. 교구 및 교재의 적절성	유지
			6. 장애인(강사, 구성원 등)에 대한 고려		6. 장애인(강사, 구성원 등)에 대한 고려	유지
		교육운영	7. 연간 교육횟수와 시간(산출)			삭제
			-		7. 1년간 진행된 교육횟수 적절	추가
			8. 수강인원 적절성	▶	8. 수강인원 적절성	유지
			9. 교육시간 적절성		9. 교육시간 적절성	유지
			10. 교육내용 적절성		10. 교육내용 적절성	유지
		교육 선호도	11. 교육이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		-	삭제
			12. 교육 참여에 대한 기대		-	삭제
	몰입도	교육 참여 및 촉진요소	13. 교육참여수준		11. 교육참여수준	유지
			14. 교육내용의 계획했던 요구와 수준 적합도		12. 교육내용 유용성	수정
			15. 교육방법의 교육참여자 참여촉진 정도		13. 교육방법의 교육참여자 참여촉진 정도	유지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16. 전반적 만족도		14. 전반적 만족도	유지
			17. 교육추천 의사		15. 교육추천 의사	유지
			18. 심화된 유사 교육 재수강 여부		16. 교육 재수강 욕구	수정
B 학습 평가	지식	교육내용 이해도	19. 교육내용 이해도		17. 교육내용 이해도	유지
		내용 적절성	20.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구성	▶	18.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구성	수정
		도움 적절성	21. 장애인식에 긍정적 도움		19. 장애인식에 긍정적 도움	수정

	기술	기술습득	22.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 적용방법 인식		20.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하는 상황과 방법 인식	수정
		적용기술	23.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 적용기술 습득		21.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하는 상황에 적용기술 습득	수정
		실천기술	24.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실용기술 습득		22.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할 때 구체적인 실천기술습득	수정
	태도	가치와 태도의 변화	25.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의 사회적인 가치		23.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가치있다고 생각	한 문항으로 통합
			26.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의 개인적 가치			
			-		24. 교육 전과 비교 시 장애에 대한 이해증진	C에서 이동하여 추가
			-		25. 교육 전과 비교 시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	
	자신감▶동기	실행동기	27. 실천동기 형성		26. 교육받은 내용 실생활에서 실천동기 형성	수정
			28. 교육내용 추천 동기		27. 교육내용 추천 동기 형성	유지
	확신	실행결심	29. 교육내용 실천		28. 교육내용 실천	수정
C 행동 평가3)	조직 차원 변화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	30. 장애 감수성 증진		29. 장애 감수성 증진	수정
			31. 편의시설 증진		-	삭제
			32. 장애인 구성원과 소통 증진		30. 장애인 구성원과 소통 증진	유지
	개인 차원 변화	장애에 대한 이해도	33.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		-	이동: C-)B
			34.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	
			35. 장애 관련 뉴스나 보도 내용 관심증가		31.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 관련 뉴스나 보도 내용에 관심증가	수정
			36. 장애인과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음		32.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편안함	수정
		적용도	37. 장애인 관련 참여 활동에 관심		33. 장애인 관련 활동에 관심형성	유지
		실행도	38. 장애인 관련 활동에 참여	▶	-	삭제
	관련성	실생활(업무) 관련성	39. 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 여부		-	삭제
			40. 교육에서 배운 내용의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 여부		34.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활용	수정
			41.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도움 여부		35.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인과 관련되어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에 도움 여부	유지
	모니터링	보상	42. 교육을 통한 성장		36. 교육을 통한 성장	유지
		환류	43. 교육 재참여 욕구		-	삭제
			-		37. 교육에 대한 환류 체계마련	추가
D 결과 평가	기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44. 교육의 사회변화 기여도		38. 교육의 장애인식 개선 기여도	수정
			45. 교육 참여의 사회변화 기여도		-	삭제
	효과성	교육효과	-		39. 교육 효과	추가
	효율성	투입 대비 효과	46. 교육에 투자한 시간 대비 성과	▶	40. 교육에 투자한 시간 대비 성과	유지
			47. 교육에 투입한 예산 대비 성과		-	삭제
			48. 교육에 참여한 노력 대비 성과		41. 교육에 참여한 노력 대비 성과	유지
			49.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포기한 기회 대비 성과		-	삭제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① 양적분석

○ 문항의 집중경향치

-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조정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하였으며, 전체 문항 평균은 4.45로 1차 조사(4.1)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각 문항별 평균도 3.89~4.95으로 1차 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상향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평균값은 25번 문항인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로 4.95이며,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7번으로 '1년간 진행된 교육 횟수는 적절하였다.'의 평균이 3.89로 나타남.
- 각 문항의 중앙값은 4~5로 나타남.

○ 문항의 타당도 분석

- 개별문항의 내용타당도 비율(CVR)값을 분석한 결과, Lawsh(1975)가 제시한 전문가패널 20명일 때 최소값인 0.42를 적용하여 2차 델파이 총 41개 문항 중 39문항에서 내용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번 문항인 '1년간 진행된 교육횟수는 적절하였다.'와 33번 문항인 '교육은 효과적이었다.'의 경우 CVR값이 0.4로 타당도 충족요건 이하로 나타남.
- 전문가 패널들이 제시한 의견의 수렴도와 합의도 분석을 위해 중앙값과 사분위 범위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수렴도가 0.5 이하이며, 합의도가 0.75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됨.

○ 문항의 신뢰도 분석

- 문항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한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0.951으로 나타나 개발된 평가지표의 신뢰도가 확보됨.

○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각 문항에 대한 집중경향치와 타당도 분석 결과를 통해 총 41개 문항 중 평균이 4 미만이고 CVR값이 0.42 미만인 2개의 문항을 탈락시키고 총 39개의 문항을 최종지표로 확정함.

○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4-8〉과 같음.

〈표 Ⅳ-4-8〉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영역	하위영역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안)	평균	표준편차	수렴도	합의도	CVR	결과
A 반응평가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계획	1. 교육 안내 자료에는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4.74	0.44	0.25	0.90	0.9	확정
			2. 학습자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4.74	0.44	0.25	0.90	0.9	확정
			3. 교육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강사로 선정되었다.	4.47	0.50	0.50	0.75	0.9	확정

		교육준비	4. 교육 장소 및 환경 적절성	4.37	0.48	0.50	0.75	0.9	확정
			5. 교구 및 교재의 적절성	4.53	0.50	0.50	0.80	0.9	확정
			6. 장애인(강사, 구성원 등)에 대한 고려	4.47	0.60	0.50	0.80	0.8	확정
		교육운영	7. 1년간 진행된 교육횟수는 적절하였다.	3.89	0.79	0.25	0.88	0.4	삭제
			8. 수강인원은 적절하였다.	4.21	0.77	0.50	0.75	0.5	확정
			9. 교육시간은 적절하였다.	4.47	0.68	0.50	0.80	0.7	확정
			10. 교육내용은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다.	4.74	0.44	0.25	0.90	0.9	확정
	몰입도	교육 참여 및 촉진요소	11.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58	0.49	0.50	0.80	0.9	확정
			12. 교육내용은 유용하였다.	4.58	0.49		0.80	0.9	확정
			13. 교육방법은 교육참여자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이루어졌다.	4.58	0.59	0.50	0.80	0.8	확정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14.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63	0.48	0.50	0.80	0.9	확정
			15. 본 교육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4.53	0.50	0.50	0.80	0.9	확정
			16. 교육에 또 참여하고 싶다.	4.63	0.48	0.50	0.80	0.9	확정
B 학습 평가	지식	교육내용 이해도	17.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였다.	4.58	0.49	0.50	0.80	0.9	확정
		내용 적절성	18. 교육내용은 교육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4.74	0.44	0.25	0.90	0.9	확정
		도움 적절성	19.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4.74	0.44	0.25	0.90	0.9	확정
	기술	기술습득	20.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하는 상황과 방법을 알게 되었다.	4.63	0.58	0.50	0.80	0.8	확정
		적용기술	21. 학습한 내용을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하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4.47	0.68	0.50	0.80	0.7	확정
		실천기술	22. 학습한 내용을 통해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할 때 구체적인 실천기술을 얻게 되었다.	4.42	0.75	0.50	0.80	0.6	확정
	태도	가치와 태도의 변화	23.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21	0.83	0.50	0.75	0.6	확정
			24.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4.84	0.36	0	1	0.9	확정
			25.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4.95	0.22	0	1	0.9	확정
	동기	실행동기	26. 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동기가 생겼다.	4.63	0.58	0.50	0.80	0.8	확정
			27. 교육받은 내용을 주변에 공유할 마음이 생겼다.	4.58	0.67	0.50	0.80	0.7	확정
	확신	실행결심	28.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해보고 싶다.	4.47	0.75	0.50	0.80	0.6	확정
C 행동 평가 3)	조직 차원 변화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	29. 장애 감수성이 높아졌다.	4.37	0.67	0.50	0.75	0.7	확정
			30. 장애인과 소통이 늘어났다.	4.16	0.92	0.50	0.75	0.6	확정
	개인 차원 변화	장애에 대한 이해도	31.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 관련 뉴스나 보도 내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4.26	0.71	0.50	0.75	0.6	확정
			32.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4.47	0.75	0.50	0.80	0.6	확정
		적용도	33. 장애인 관련 활동에 관심이 생겼다.	4.37	0.81	0.50	0.80	0.7	확정
	관련성	실생활 (업무) 관련성	34.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활용하였다.	4.11	0.85	0.50	0.75	0.5	확정
			35.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인과 관련되어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에 도움이 되었다.	4.05	0.83	0.50	0.75	0.5	확정

	모니터링	보상	36. 교육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다.	4.26	0.64	0.50	0.75	0.7	확정
		환류	37. 교육에 대한 환류(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었다.	4.05	0.89	0.25	0.88	0.7	확정
D 결과평가	기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38.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4.56	0.50	0.50	0.80	0.8	확정
	효과성	교육효과	39. 교육은 효과적이었다.	3.94	1.18	0.50	0.75	0.4	삭제
	효율성	투입대비 효과	40. 교육에 투자한 시간 대비 얻은 것이 많다.	4.22	0.71	0.50	0.75	0.7	확정
			41. 교육에 참여한 노력 대비 얻은 것이 많다.	4.17	0.69	0.38	0.81	0.7	확정

② 질적분석

○ 2차 전문가 패널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각 문항에 대한 자유의견을 종합하면 〈표 Ⅳ-4-9〉와 같음.

〈표 Ⅳ-4-9〉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구분	내용
A. 반응평가	· 1번의 경우 '교육 안내(교육계획서) 자료에는 ~' ▶ 교육계획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 · 10번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는 17번 문항 등으로 유추가능하고, "교육운영"의 차원이니 "교육내용의 구성은 적절하였다"제안
B. 학습평가	· 23번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가치 있다고 생각'에서 '~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로 수정의견
C. 행동평가	· 30번의 경우 장애인 구성원과 소통을 할 기회가 없거나 적었다면 응답값에 대한 오류 가능 ▶ '장애인과 소통이 늘었다.'로 수정 제안
D. 결과평가	· 37번의 경우 '환류(피드백)체계'가 모호하며,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 39번의 '교육은 효과적이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를 수 있음. 삭제 검토 필요 · 38번과 39번 문항이 사실상 중복되는 것 같음.
추가의견	· 장애인 구성원과의 소통의 기회가 증가하고, 비장애인 동료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정리되어 반영됨 · 대부분 교육참여자에게 알맞은 질문으로 구성(수정)되었다고 생각함. · 학습평가와 행동평가의 내용이 효과를 잘 반영하고 있음. · 모든 문항의 흐름과 구성이 적절함 ·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타당한 척도라고 생각하며, 교육 성과의 핵심적, 공통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범용적 척도인 것으로 보임.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세분화된 추가 척도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면 좋을 것 같음.(초등생용, 중고등생용, 성인(교사용, 공무원, 공공기관용)
발전방안	·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 집체교육을 지향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체험, 단체활동, 문화활동 등을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정 필요하며, 특히 사기업, 단체 등에서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했다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 · 강사별로 교육방법과 내용, 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교

	안/교육방식 마련, 강사의 역량 강화/유지 방안 마련, 교육 효과성 검증 시스템을 통한 교육 품질 보완 등이 필요 ·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교육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공헌 참여와 실생활에서 접근이 가능한(공익광고, 포스터 등) 정책이 다양하게 필요함. · 교육내용 세분화(연령별, 직업별, 경력별, 장애 접촉 경험 등), 일방향적 강의를 벗어나 교육 방법 다양화(참여형, 접촉형, 소그룹 토의 등), 다수 대상 집체 교육에서 적정 인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에서 보편적 인권 개념에 기초한 장애인 차별금지교육으로 이동, 추상적 개념에서 실제적 상황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법정의무교육으로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과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와 변화 모색 노력 필요함.

5)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 문헌분석과 연구진 검토를 거쳐 개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명의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평가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평가지표는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등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됨
- 반응평가(A)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교육 계획 및 운영, 몰입도, 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15개의 지표로 확정됨.
- 학습평가(B)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지식, 기술, 태도, 동기, 확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의 지표로 확정됨.
- 행동평가(C)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조직차원 변화, 개인차원 변화, 관련성,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개의 지표로 확정됨.
- 결과평가(D)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기여도와 효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개의 지표로 확정됨.

○ 또한, 개발된 지표를 적용할 측정대상에 대한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 문항별 적용 대상을 제시하였으며, 6번과 36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의무교육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학생에게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정된 최종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와 적용 대상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Ⅳ-4-10〉 최종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영역	하위영역		NO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안)	적용대상	
					직원	학생
A 반응 평가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계획	1	A-1. 교육 안내(교육계획서) 자료에는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O	O
			2	A-2. 학습자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O	O
			3	A-3. 교육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강사로 선정되었다.	O	O
		교육준비	4	A-4. 교육 장소 및 환경은 적절하였다.	O	O
			5	A-5. 교구 및 교재는 적절하였다.	O	O
			6	A-6. 장애인(강사, 구성원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O	△
		교육운영	7	A-7. 수강인원은 적절하였다.	O	O
			8	A-8. 교육시간은 적절하였다.	O	O
			9	A—9. 교육내용의 구성은 적절하였다.	O	O
	몰입도	교육 참여 및 촉진요소	10	A—10.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O	O
			11	A—11. 교육내용은 유용하였다.	O	O
			12	A—12. 교육방법은 교육참여자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이루어졌다.	O	O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13	A—13.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O	O
			14	A—14. 본 교육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O	O
			15	A—15. 교육에 또 참여하고 싶다.	O	O
B 학습 평가	지식	교육이해도	16	B-1.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였다.	O	O
		내용 적절성	17	B-2 교육내용은 교육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O	O
		도움 적절성	18	B-3.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O	O
	기술	기술습득	19	B-4.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하는 상황과 방법을 알게 되었다.	O	O
		적용기술	20	B-5. 학습한 내용을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하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O	O
		실천기술	21	B-6. 학습한 내용을 통해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할 때 구체적인 실천기술을 얻게 되었다.	O	O
	태도	가치와 태도의 변화	22	B-7.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O	O
			23	B-8.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O	O
			24	B-9.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O	O
	동기	실행동기	25	B-10. 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동기가 생겼다.	O	O
			26	B-11. 교육받은 내용을 주변에 공유할 마음이 생겼다.	O	O
	확신	실행결심	27	B-12.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해보고 싶다.	O	O
C 행동 평가3)	조직차원 변화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	28	C-1. 장애 감수성이 높아졌다.	O	O
			29	C-2. 장애인과 소통이 늘어났다.	O	O
	개인차원 변화	장애에 대한 이해도	30	C-3.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 관련 뉴스나 보도 내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O	O
			31	C-4.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O	O
		적용도	32	C-5. 장애인 관련 활동에 관심이 생겼다.	O	O
	관련성	실생활(업무) 관련성	33	C-6.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활용하였다.	O	O
			34	35.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인과 관련되어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에 도움이 되었다.	O	O
	모니터링	보상	35	C-7. 교육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다.	O	O
		환류	36	C-8. 교육에 대한 환류(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었다.	O	-
D 결과 평가	기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37	D-1.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O	O
	효율성	투입대비 효과	38	D-2. 교육에 투자한 시간 대비 얻은 것이 많다.	O	O
			39	D-3. 교육에 참여한 노력 대비 얻은 것이 많다.	O	O

5.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소결

1) 교육 관계자(강사/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예비 문항 설계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강사와 비위촉 강사 총 8명으로 구성된 강사 그룹과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인 A, B, C유형에 해당되는 기관의 종사자 7명으로 구성된 의무교육 대상기관 그룹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함.

○ 인터뷰 질문 내용은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에 대한 세부 질문은 그룹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함.

○ 강사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질문 내용의 4개 영역인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이 상위범주로 도출되었고, '장점'과 '단점'을 비롯한 8개의 하위범주와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식'을 비롯한 15개의 개념이 도출됨.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유사 법정의무교육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장점으로는 교육 대상자의 층이 넓기에 강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장애 당사자의 삶이 곧 교육의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단점으로는 법정의무교육이 가지는 교육 대상 기관의 피로감을 지적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견으로 기존 효과성 측정의 한계로 연 1회 1시간의 교육으로는 효과성 측정이 무의미하며, 1회성 설문 방식의 효과성 측정으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효과성 측정 방법으로 동일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강사에게 교육의뢰를 하는 예를 제시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대상에 장애 당사자도 포함해야 하며, 교육 대상 기관의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며, 교육 시간 또는 횟수를 3~5회기 정도 진행했을 때 교육의 효과를 보이며,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강사 양성의 일관성과 강점 중심 강사 관리 및 파견, 그리고 수준 높은 보수교육, 행정의 일관성과 쌍방향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함.

○ 의무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강사 그룹과 동일한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고민'을 비롯한 하위범주 6개,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을 비롯한 15개의 개념이 도출됨.

- 유사 법정의부교육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어가고, 타 법정의무교육에 비해 교육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광범위한 교육 대상자의 특성(연령/대상 등)에 따른 개별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효과적인 반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크게 도움이 안되는 느낌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 오랜 기간동안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은 직원들에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해 실적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등의 방식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시함.
-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일방적인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경험 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기관장과 같은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범교과학습으로의 편성이 필요다고 강조함.

2) 교육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의 검토로 평가지표 초안을 개발하고, 장애인 관련 학계 전문가 10명, 현장 전문가 10명 총 20명의 전문가 패널 집단을 구성하여 1차, 2차 델파이조사를 진행함.

○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본 평가지표의 측정 대상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학생으로 규정함.

○ 평가지표는 Kirkpatrick Model을 적용하여 ‘반응 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4단계 평가 모형으로 구성함.

○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의 문항은 A. 반응평가 18개 문항, B. 학습평가 11개 문항, C. 행동평가 14개 문항, D. 결과평가 6개 문항 총 49개의 폐쇄형 문항으로 구성됨.

○ 2023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2차 델파이 조사의 문항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A. 반응평가 16개 문항, B. 학습평가 12개 문항, C. 행동평가 9개 문항, D. 결과평가 4개 문항 총 41개의 폐쇄형 문항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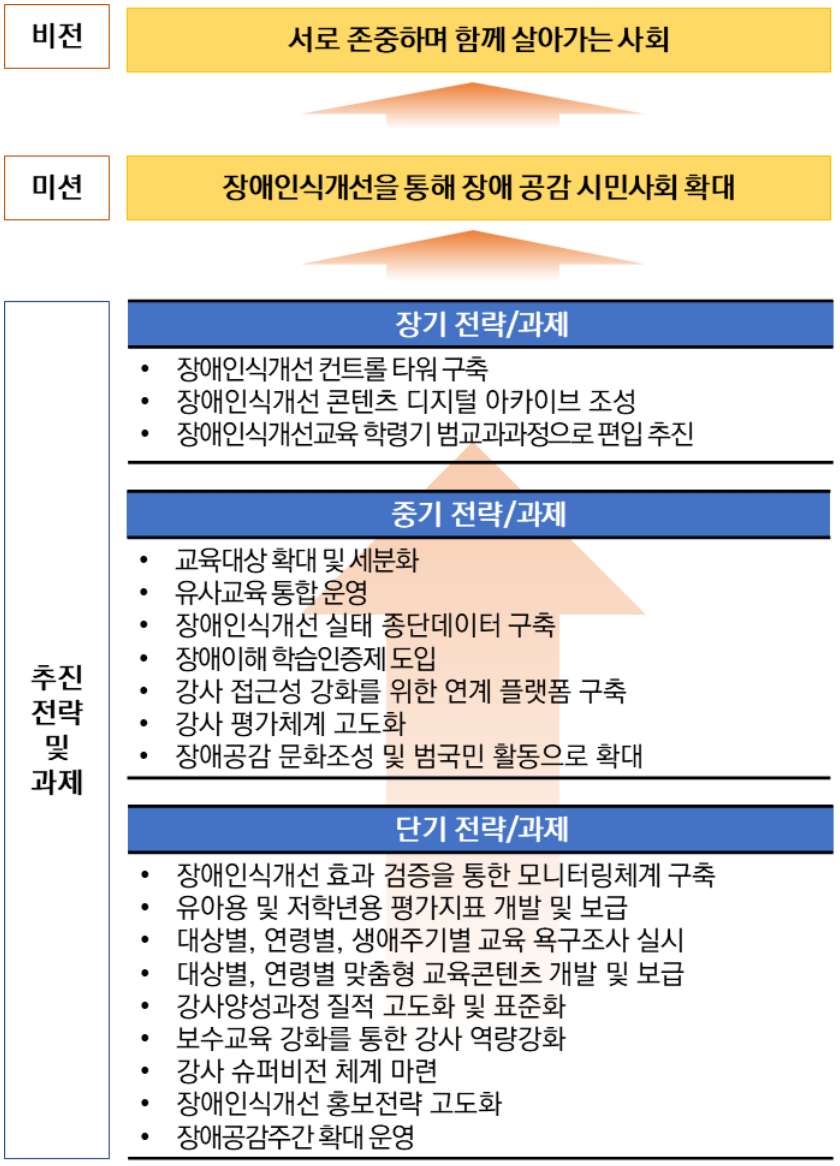
○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한 최종 평가지표는 4개 영역 총 39개 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반응평가(A)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교육 계획 및 운영, 몰입도, 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15개의 지표로 확정됨.
- 학습평가(B)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지식, 기술, 태도, 동기, 확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의 지표로 확정됨.
- 행동평가(C)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조직차원 변화, 개인차원 변화, 관련성,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개의 지표로 확정됨.
- 결과평가(D)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기여도와 효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개의 지표로 확정됨.

Ⅴ. 장애인식개선 발전방안 제안

1. 중장기 로드맵 제시

○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중장기 로드맵(2019~2023)을 보완한 내용은 [그림 Ⅴ-1]과 같음.



[그림 Ⅴ-1] 장애인식개선 중장기 로드맵

2. 단계별 발전방안 제언

1. 단기 추진전략 및 과제

1.1. 장애인식개선 효과 검증을 통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본 연구를 통한 성과지표 개발로 제한적이지만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학생(고학년)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가능해짐.

- 교육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넘어 장애인식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도록 검증함으로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 더불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유의미한 함의를 가짐.
- 이를 통해 실증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게끔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토대로 모니터링 체계를 반영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임.

1.2. 유아용 및 저학년용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의 포괄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의 세분화 필요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이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층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대상군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은 현실적인 한계가 따름.
-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조기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현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문정화 외, 2019), 특히, 장애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 대해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장애인식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령별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3. 대상별, 연령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욕구조사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과 연령별로 어떤 교육을 선호하고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조사는 2008년 실시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유일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별 연령대는 유아부터 성

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전 생애주기를 아우름.

- 김동일 등(2018)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분석 결과를 통해 교육내용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의 FGI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
- 연령별, 대상별 차별화된 다양한 접근을 위한 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에 있어서 실제 교육대상자들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의무교육 대상자의 장애인식 수준과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를 확인하여 교재개발과 교수방법 등에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장애인식개선 효과로 연동될 수 있을 것임.

1.4.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실시기관 및 대상별 교육콘텐츠 개발'을 제시함.

-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현장의 부담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GI 결과에서도 강사 및 기관의 교육담당자 모두에서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교재개발의 필요성과 강의에서 활용하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이를 위해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 커리큘럼을 다르게 구성하고, 장애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미디어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제 장애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학령기 학생들이 디지털 세대인 점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등 디지털 가상공간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단편적인 교육을 벗어나 다양하고 흥미로운 디지털 활용교육과 활동을 통해 학령기 대상자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디지털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학생용, 성인용 등 인식개선 교육 대상 연령별과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호주

1. Disability Ambassadors in Schools 프로그램

·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내로 와서 다양한 장애 이슈들에 관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증진시킴

2. Glen Eira시의 Disability Awareness in Schools 프로젝트

· 지역사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5,6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 이슈에 대해 토의해보는 활동, 교사를 위한 책자 보급, 핵심 교육 과정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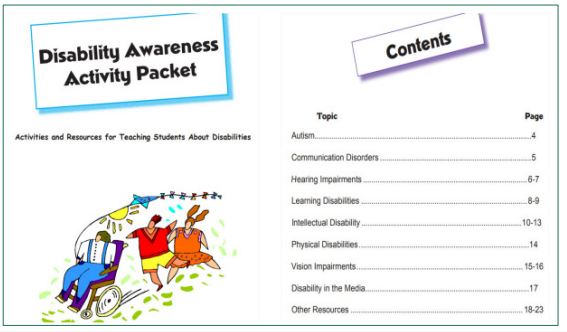
○ 미국

1. 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Handicapped Children and Youth의 웹사이트

· 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페이지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 관련 미국 전역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음

2. Disability Awareness Activity Packet

· 학생들이 다양한 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담은 소책자



책자에는 자폐, 의사소통 장애, 청각 장애, 학습 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 장애 등 각 장애의 특징과 학생들이 각 장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담겨져 있음(예시: “이 활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활동입니다”).
출처 : Bev Adcock and Michael L. Remus. Disability Awareness Activity Packet, (Possibilities, Inc. 2006).

[그림 V-2] 외국의 체험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

1.5. 강사양성과정 질적 고도화 및 표준화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로 ‘전문강사 확대 및 양성체계 내실화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위 계획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의학적 장애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적 장애모델 도입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 표준화 교육자료를 개발하였으나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국제협력 등의 경향을 반영한 정기적인 리뉴얼 필요.
-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사양성 커리큘럼에 강의 유형(강의형, 체험형, 토론형, 참여형, 혼합형 등)별 강의기술 등을 포함.

○ 교재편찬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강사양성용 맞춤형 교재 전문성 고도화 작업 및 교육 대상 연령별 맞춤형 강의 교안 표준화 작업 진행

○ 강사양성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경우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장애 이해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들의 전문성, 즉 강사들이 장애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거나 충분한 교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이대식·김수연, 2014; 전지예, 2018; 최혜영, 2018; 김용탁 외, 2019 재인용), 본 연구결과에서도 강사의 전문성에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은 공공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강사양성기관으로 인증된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원과 민간기관의 교육대상과 교육시간, 수료조건 등이 상이한 양상을 보임.
- 이에 강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개선 사항 점검 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6.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강사 역량강화

○ 최근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이 논의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음(김미옥·김지혜·김고은, 2021).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보수교육은 자격취득 후 2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보수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격을 갱신하여야 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장애 관련 지식과 전문성 및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내용 전달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교수효능감은 강사의 전문성을 구성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김아영, 2012; 김남순·박환보, 2021 재인용).
- 본 연구의 FGI 결과에서도 다양한 강사양성 경로로 인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보수교육 등을 통한 강사 역량강화와 교안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됨.
- 이에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 보수교육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강사의 역량강화 관련 수요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그 욕구를 세분화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1.7. 강사 슈퍼비전 체계 마련

○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외에 체계적인 슈퍼비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슈퍼바이저 양성: 강사 양성과정 외에 별도의 슈퍼바이저(리더십) 과정을 개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 혹은 기존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파견 및 운영 방안: 기존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조건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강사' 1인 이상 보유한 교육기관을 우선적인 조건으로 정한 방식과 같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슈퍼바이저'를 각 교육기관에 보유하게끔 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별도 기구로써 슈퍼바이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사들이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강사들이 원활하고 적절히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후자(한국장애인개발원에 별도 슈퍼비전 시스템 마련)보다 전자(교육기관에 슈퍼바이저 보유)가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며, 보건복지부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슈퍼바이저, 즉 자문과 교육활동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과 운영 등을 수행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1.8. 장애인식개선 홍보전략 고도화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홍보전략 개발

- 미디어 세대라고 불리는 최근 경향은 2024 트렌드 키워드에도 반영되어 있음. 가령, 도파밍(De Dopamine Farming)이라는 용어는 재미를 좇는 일이 일상이 된 시대를 반영한 용어로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가 익숙한 경향을 일컫는 용어로 제시됨.
- 이러한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를 트렌드화 하여 활용하는 것은 10대~20대의 성인전후 세대를 아우르는 홍보 전략일 수 있음.

○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 SNS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시대에서 소셜미디어는 주요 소통 및 상호작용의 도구로 일상화된 사회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매체접근성이 활발한 일반대중에게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를 노출하기에 매우 유용한 창구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FGI결과,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의견에서 활발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긍정적인 삶의 이야기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아지는 것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이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실천 사례 발굴 및 미디어 노출,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 공유, 시민참여 장애인식개선 활동 관련 영상 공모전, 장애인식개선 숏츠 영상 제작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정기업로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릴레이 캠페인 진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나의 장애는 내 인생의 +α이다! [수어 통역 영상 링크는 설명글에] | 이진영 장애인식개선...

조회수 18만회 • 2년 전

세바시 강연 Sebasi Talk

※ 이 강연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제작지원을 받았습니다.
강연자의 강연 소개 : 저는 선천적 근육 장애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영 강사(지체장애1급/선천성 근육장애)의 세바시 1239회 방송의 경우 18만회 조회를 기록함

출처: 유튜브 채널 “나의 장애는 내 인생의 +a이다”

[그림 V-3] 미디어 출연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효과 사례

1.9. 장애공감주간 확대 운영

○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공감 주간 확대 운영으로 장애감수성 증진

- 문정화 등(2019)의 연구에서 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거나 단체활동을 하는 경우 장애수용의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12월 열흘 동안 ‘장애공감주간’으로 선포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는 『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연 1회 진행되는 ‘장애공감주간’을 분기별 또는 월별 단위로 확대하여 장애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https://www.culture.go.kr/wday)

[그림 V-4] 문화가 있는 날

2. 중기 추진전략 및 과제

2.1. 교육 대상 확대 및 세분화

○ UN CRPD 최종 견해 권고 사항(2022년) 이행을 위해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 및 분야별 장애 관련 교육의 필요성 논의에 기반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 확대 필요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강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 평균값이 4.8에서 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의 평균점수가 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의무교육기관 대상 동일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은 4.3점에서 4.5점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필요도를 확인함.
- 이러한 결과는 2022년 9월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UN CRPD 최종견해 중 장애인식제고 관련 권고 사항에서 제시된 장애인 관련 전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분야별 장애 관련 교육 필요성에 대한 권고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의 확대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이에 UN CRPD 최종견해의 권고 사항에서 명시된 "장애인단체의 긴밀한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 및 보건 그리고 다른 종사자"를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대의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UN CRPD 최종견해의 세부내용 중 6-c에서 제시된 직군인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사를 비롯하여 18-b의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집행관, 언론인,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혹은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 30-d의 법관과 집행 공무원, 36-d의 장애인 가족과 돌봄 제공자, 활동지원사, 간병인 및 사법 종사자 등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을 논의 및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2022년 9월 5일 개최된 제614차 회의에서 채택됨. 위원회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그중 세 번째(c) 내용에서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와 보건, 그 밖의 종사자 사이에서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장애인단체의 긴밀한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 및 보건 그리고 다른 종사자에게 협약상의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 6-c. (일반 원칙 및 의무)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사, 보건 및 기타 장애인 관련 전문 업무 종사 대상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협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18-b. (인식제고)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집행관, 언론인,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혹은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 일반대중 대상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인식제고 교과목을 교육의 전 단계에서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입할 것
- 30-d. (사법접근) 법관과 법 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약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 강화
- 36-d. (폭력, 학대) 장애인 가족과 돌봄제공자, 간병인 및 사법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 제공,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고 폭력의 피해자인 장애인과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 50-a. (교육) 교육 시 필요사항 및 필요한 편의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의 포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포용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포용적 교육에 대해 교사 및 비교육 인력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자료: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유엔 최종 견해

[그림 V-5] UN CRPD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 견해 중 장애인식 제고 권고 사항

○ 교육의무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의 교육참여 의무화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자료에 제시된 교육 참여 대상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기관의 기관장, 소속 직원, 학생(원생)으로 명시되었지만, 실제 교육에 기관장 또는 임원의 참여 실태는 조사된 바 없음.
- 이에 의무교육기관장 및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교육참여를 의무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참여율 평가를 통한 환류 체계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에 장애당사자 및 가족 포함

- 실제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인 장애인과 가족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이해관계자별 장애인식제고 필요성에서 장애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성이 매우 높게(평균 4.8) 나타났으며, FGI결과에서도 교육 대상에 장애당사자와 가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확인됨.
- 연구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인식은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주우민, 2012)으로,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행동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에 기반할 때, 장애당사자가 이 사회와 함께 하는 방법과 의무와 권리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 장애당사자와 가족을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연령별, 기관유형별 교육 세분화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별 연령대는 매우 포괄적이며,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기관의 경우 본 연구에서 구분한 A, B, C유형 별로 소속기관이 매우 다양하며 직업군도 매우 포괄적임.
- 이렇듯 연령별, 기관별, 직업별 다양성과 포괄성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을 표준화 하는데 큰 한계로 작용함.
- 이에 연령별, 의무교육 기관별로 교육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재편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2.2. 유사교육 통합운영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이해교육의 통합운영

-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많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피로도가 매우 높고,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의무교육들로 인해 교육집중도 및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이해교육의 경우 〈표 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이 중복됨으로 인해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표 Ⅴ-1〉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이해교육 내용 비교

구분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이해교육
관련 법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근거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 대상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소속직원 및 학생	교육기관 학생
교육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장애, 알아보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의 이해, 장애인의 개념 · 장애, 이해하기: 장애유형 및 유형별 의사소통방법, 에티켓 · 장애, 존중하기: 인권과 차별,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2.3. 장애인식개선 실태 종단데이터 구축

○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식은 교육 혹은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해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갖게 된 장애인에 대한 태도로 장애인식개선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정착됨.

○ 본 연구의 의미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의 장애인식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지속적인 효과성 측정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데이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한 것임.

○ 결론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연령별, 대상별 성과지표가 세분화되어 개발되고, 실용화되는 과정을 거쳐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효과성 측정을 통해 연령별, 대상별, 직종별, 기관별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구축된다면 장애인식개선의 변화추이를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됨으로써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실천적으로 함의를 담은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임.

2.4. 장애이해 학습인증제 도입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학습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이해 학습인증제 도입과 실행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질적·양적으로 향상되게끔 촉진할 수 있게 해야 함.
- 장애이해 학습인증제를 신청한 기업 및 기관 등에는 인증 마크 부여와 사회적 이미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 발굴과 기존 인증 기업 및 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지원을 체계화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장애이해 학습인증을 부여받는 것이 기업과 기관의 긍정적 브랜드 확보로 이어지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2.5. 강사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연계 플랫폼 구축

○ 현행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공공 및 민간기관 소속 강사의 정보를 연동하여 제공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및 강사 정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지원.

-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문강사 찾기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해 위촉된 전문강사의 정보만 검색 가능하며, 민간기관 위촉 강사의 정보는 별도 제공되지 않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기관 의무교육 담당자 조사에서 희망하는 강사의 경우 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 강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사 섭외의 경우 인식개선교육기관 의뢰(36.3%)와 추천 및 인터넷 검색(31.6%)이 높게 나타남. 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에 비해 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 강사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강사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먼저 모든 강사 인력풀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이 필요함. 즉,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양성한 전문강사를 비롯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 강사 등 모든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소속기관, 강사 이력과 특징, 지역, 접근성 등의 정보를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임.

2.6. 강사 평가체계 고도화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주관 부처의 이원화와 강사양성과정의 다원화 등으로 인해 강사평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 법정의무교육의 지위를 가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강사의 자질과 역량 등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대상별, 연령별 강의 전달력과 강의 운영은 장애인식이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강사 지원 및 강사 인센티브제, 지정강사제 등을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강사의 동기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2.7. 장애공감 문화조성 및 범국민 활동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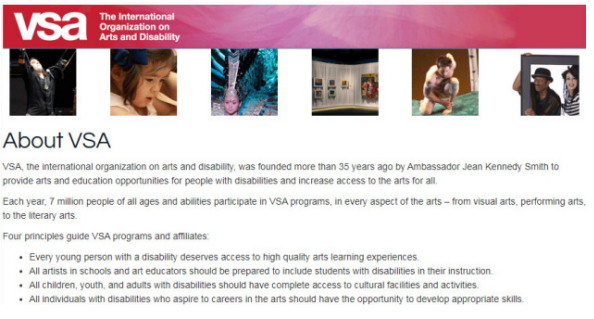
○ 장애공감 문화조성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됨.
- 2019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롯데컬쳐웍스와 함께 펼친 '문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됨. 이는 4월 문화가 있는 날(24일)과 장애인 주간(20~26일)을 기념해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되었으며, 4차원(4D) 영화관에 입장해 관람석에 앉아 영화 상영을 기다리던 관객들은 극장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 시각장애인이 거리를 걸으며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4D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람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수상함(연합뉴스, 2019.06.10).
- 이처럼 문화를 통한 장애인식개선은 분야와 세대를 아우르며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범국민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공감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범국민 활동 확대

- 캠페인은 일반 대중의 장애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문정화, 2019).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과 민간주도형, 지역사회 단체 및 장애인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기획되고 진행될 수 있음.

- 이에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 및 모니터링 활동,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광고, 지역사회 내 예술·문화 활동을 활용한 캠페인 활동, 장애인 투표권 향상을 위한 접근성 향상 캠페인 등 국민참여 및 체감형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활성화 지원 필요.



미국의 'VSA(Very Special Arts)'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배우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예술 관련자들을 위해 장애에 대한 이해, 그들을 대하는 에티켓, 장애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자료: VSA 홈페이지
(http://education.kennedy-center.org/education/vsa/) 접속일: 2023.12.04.



한국: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해치 이모티콘'
2020년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시의 공식 캐릭터인 해치의 이모티콘에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감정을 직관적으로 담아 제작하여 배포함
비슷한 사례로 대구시에서는 지난 2021년 휠체어 탄 수달 이모티콘을 배포함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세계적인 완구업체인 레고사가 판매예정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인도견 피규어(미니 인형). 다양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장애인식개선임을 완구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을 실현하는 사례임

출처 : 에이블뉴스(2016.03.04.)
(https://www.ablenews.co.kr)

[그림 V-6] 장애인식개선 문화 활동 사례

3. 장기 추진전략 및 과제

3.1. 장애인식개선 컨트롤 타워 구축

○ 장애인식개선교육 주관 부처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컨트롤 타워 구축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교육이 부처,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교육내용 중복과 연계의 한계, 인식개선사업 실적취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연구결과에서도 부처 간 이원화로 인한 유사교육의 높은 피로감과 강사양성과 보수교육 등 강사 관리 이원화로 인한 어려움, 강사 처우의 차이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차지함.
- 이에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된 자원 수집 및 정보제공, 성공사례 공유 등 일원화된 창구 역할과 교육 체계 전반을 관리하고 장애 인식 개선사업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 장애인식개선 관련 자료구축 및 연구개발(R&D) 등 총괄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3.2.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기술발전으로 VOD, OTT, 개인미디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는 매우 제한적임.

- 장애인식개선 관련 방송 및 동영상, 방송콘텐츠 등과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자료 등을 업로드하고 집약할 수 있는 온라인 도서관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 접근성 지원 강화 필요.
- 이와 함께 장애이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접근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시민들이 장애 관련 콘텐츠와 미디어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시민의식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3.3.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령기 범교과과정으로 편입 추진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이해교육을 통합하여 정규교과에 편입하여 장애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필요

-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 즉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다루고 있는 교육 주제 외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와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조금 더 장애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인식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강사 대상 FGI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등의 인식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가 높고, 교육 현장에서 교과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차지함.
- 이에 학령기 범교과 과정에 장애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과목을 편성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과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범교과 편입을 통한 교과개발을 후속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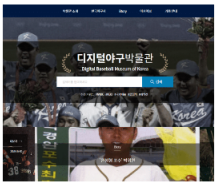


154년의 역사_영국 세인즈버리(Sainsbury's) 디지털 아카이브

All 기업 사례 디지털아카이브 해외

150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의 역사는 곧 그 산업의 역사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마트 체인 세인즈버리Sainsbury's가 그러한데요. 세인즈버리는 1869년 존 제임스 세인즈버리가 런던에 설립한 가게에서 출발해 오늘날

CA 에디터



한국야구의 역사를 온라인에 담았습니다_디지털야구박물관

All 국내 기업 사례 디지털아카이브

한국 프로스포츠의 역사는 1982년 프로야구의 탄생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2023년) 기준으로 벌써 41년이 되었는데요. KBO는 40여 년의 야구 역사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디지털 야구 박물관을 2019년에 구축하였습니다. 어떻게

CA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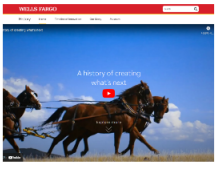


우리 기업을 소개합니다_막스 앤 스펜서 그룹(Marks and Spencer group)

All 기업 사례 디지털아카이브 해외

Marks and Spencer 그룹을 들어보신적 있나요? 창업자 두명의 이름이 Marks, Spencer구나 하는 것은 유추 가능한데 어떤 기업인지는 상상이 잘 안가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M&S가 2012년부터

CA 에디터



기록으로 브랜딩하는 방법_웰스 파고 은행의 디지털아카이브

All 기업 사례 디지털아카이브 해외

"우리 회사는 말보로 맨 같은 가상의 캐릭터나 석유 업체 셰브론의 '동의합니다' 광고와 같이 가짜 캠페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중략) 이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지만 그건 가짜다."_파타고니아 창립자 이본 쉬나드

CA 에디터

출처: https://cliparchive.k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는 인터넷에 디지털로 이루어진 거대한 문서 저장고이자 콘텐츠 저장고이다. 인터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생산되는 동시에 저장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올려놓은 디지털 콘텐츠는 그것이 저장되는 물리적 장소(서버)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안에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가상의 공간 안에 축적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정보의 생산과 전달, 공유 속도를 극대화하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백욱인, 2011).

[그림 V-7]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Ⅵ. 결론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의무교육기관의 교육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총 439개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183명의 평균연령은 45세이고, 67.8%가 전업강사이며, 최근 1년간 강의한 기관 유형은 B유형(학교)이 가장 많았고, C유형(어린이집,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강의 빈도가 낮게 나타남. 교육방법은 대면 강의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하는 교구는 장애체험교구(46.8%)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배포하는 교구(37.0%)의 비중이 높았으나, 표준교안 사용 비중(48.1%)과 개발원 교육자료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응답자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 평균값이 4.8에서 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의 평균점수가 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대한 현장의 부담 해소방안으로 32.2%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적절한 교육횟수는 2회가 가장 많았고, 10명 중 9명이 대면 강의식 교육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4점 중반 전후로 매우 높았으며,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식개선에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함.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의무교육기관 256개소 중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67.6%, 학교 16.8%, 유아 교육기관 15.6%이며, 최근 1년간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많았고, 실시한 교육방법은 비대면 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대면 강의식 교육일 때 전

반적인 교육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강사 섭외의 경우, 지인 추천, 인터넷 검색 등의 비중이 높았으며, 희망하는 교육횟수는 연간 1회가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때 어려움으로 과반수 이상이 응답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피로감이 높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8.9%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교육과정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69.7%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시간과 강의자료 및 교재, 교육횟수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의 만족도 비중이 높았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이 41.0%에 달함. 또한, 현재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이 4.3점에서 4.5점으로 나타나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 확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강사 및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가 제시한 기타의견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책적으로 유사교육을 일원화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일원화를 제시함. 교육운영에서 강사매칭서비스 구축과 강사 규모를 확대하고 강사비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의 경우 대면 체험교육과 사례중심 교육확대, 기관유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제시됨. 교육방법의 경우 교육대상별 교육방법 개발, 다양한 교육방법 및 콘텐츠 개발, 공연 등 참여형 교육확대와 교육이수 방법의 다양화가 제시됨.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및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Zoom) 접속을 통해 2차에 걸쳐 실시된 초점집단인터뷰(FGI)는 '유사법정의무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과의 비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방법 개선점',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짐. FGI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강사 대상 FGI 분석 결과,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점은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식이며, 단점은 정보와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로는, 기존 효과성 측정의 한계로 연 1회 1시간 교육의 효과성 측정은 무의미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간단한 만족도 중심의 신뢰할 수 없는 효과성 조사방식과 동일 기업·기관의 지속적인 강사 초빙으로 인한 효과저하 등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의 경우, 장애당사자와 가족 및 의무교육기관의 장을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교육시간을 3~5회기로 확대, 강사양성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강점 중심 강사 관리 및 파견, 수준 높은 보수교육 필요, 교육관련 행정 및 강사비

일원화, 쌍방향 평가 필요 등으로 집약됨.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미디어 노출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필요로 범주화됨.

-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FGI 분석 결과,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에서 유사한 교육내용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교육의 중요도가 떨어지며, 연령·대상 등 개별 교육과정 필요 등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로는, 영유아에게 매우 효과적인 반면, 법정의무교육의 피로감이 높아 인식개선에 도움이 안 되며,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교육에 노출된 이들에게 비효율적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실적관리 연계 필요, 인센티브 필요로 집약되었으며,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경험 중심 콘텐츠 개발, 관리자급 교육의 필요, 범교과학습으로의 편성으로 범주화됨.

○ 문헌분석과 연구진 검토를 거쳐 개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명의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평가지표는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등 총 4개 영역에 총 39개의 지표로 구성됨.

- 반응평가(A)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교육 계획 및 운영, 몰입도, 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15개의 지표로 확정됨.
- 학습평가(B)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지식, 기술, 태도, 동기, 확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의 지표로 확정됨.
- 행동평가(C)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조직차원 변화, 개인차원 변화, 관련성,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개의 지표로 확정됨.
- 결과평가(D)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기여도와 효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개의 지표로 확정됨.

2. 결론

○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장애 현상과 그로 인한 다양한 생활경험 속에 내재된 혐오와 차별 및 배제 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도입된 현행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됨.

○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FGI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며 결론을 맺고자 함.

-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현장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피로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법정교육 중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교육들이 많으며, 특히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된 중복된 내용들이 다른 형식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사교육을 일원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각 주관 부처 간 조율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유사한 장애이해교육을 통합하고,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물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조율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각 교육의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교육대상자 측면에서 유사교육 수강에 대한 피로감과 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교육 운영 측면에서 강사양성 및 관리의 편의와 표준화된 교재개발과 적용으로 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무엇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와 일원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전술 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채택된 UN CRPD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 사항 이행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사회참여와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은 전 국민의 장애인식이 개선되고 장애가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어야 가능할 것임.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은 의무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유사 교육과 내용이 중복되고 다원화되어 있는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FGI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장애당사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UN CRPD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 및 보건 그리고 다른 종사자(장애인 가족과 돌봄 제공자, 활동지원사, 간병인 및 사법 종사자 등) 등을 포괄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으로 편입하고, 장

기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되도록 점증적인 대상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강사의 전문성과 대상별 강의 전달력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전문적인 강사 관리 측면에서 강사양성과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함.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과정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양성과정과 강사양성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과정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또한, 각 운영주체 별로 양성과정 전문인력과 교재 및 교구, 양성교육 기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다원화된 양성과정 운영으로 인해 강사의 전문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FGI 결과에서도 확인됨.
- 이에 강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 점검 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강사 인준기준과 교육 교재 및 교구의 표준화를 통해 강사양성과 관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강사파견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사 섭외 및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앱 개발 및 보급을 논의해 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강사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강사 응답자의 높은 교육수준과 전업 비중과 비교하여 평균 강의횟수는 월평균 3.7회이며, 강사비 기준이 교육기관마다 다름으로 인해 평균 강사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라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의시수와 적정한 처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차별성과 발전을 위한 자유 의견'에서 제시된 강사 매칭 서비스 및 관리를 통한 강의시수 확보와 관련된 다수 의견과 연동되는 결과임.
-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활용되는 교육 교재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함. 실태조사 결과 및 FGI 결과에서 동일하게 교육 교재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먼저 강사양성 교재의 경우 최근 이슈와 장애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이론과 정책 및 제도를 깊이 있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또한, 강의교재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연령별, 기관별 특성이 다양하고 포괄적임을 고려하여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재로 재편되어야 함.
-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교육내용에 대한 다수 의견을 고려하고 장애인식 조기교육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연령대를 고려한 교재·교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및 교안·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 교재의 고도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교육방법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은 유아부터 성인 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상기관별 특성도 다양함. 따라서 단일한 교육방법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따름. 이에 강의형에서 체험형과 문화예술 공연 및 캠페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이 개발되고 적용된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넘어 장애공감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먼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 439명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에 대한 실증적인 의견을 확인하고, 교육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강사와 교육담당자로부터 심층적인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에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임.
- 또한, 문헌분석과 전문가 패널조사를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임.

○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 대상의 포괄성으로 인한 한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직원 및 학생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표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지만, 유치원 및 초등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름.
- 장애인식개선 효과의 범위적 한계: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반적인 운영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됨. 장애인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삶의 경험과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연 1회 1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 개선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따름. 따라서 정량적인 지표와 더불어 정성적인 지표를 함께 개발함으로써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의 결과 및 한계를 통한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이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층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대상군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은 현실적인 한계가 따름. 따라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장애인식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령별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제시한 발전방안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을 학령기 교과과정으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먼저 교육부 차원에서 범교과 편입을 통한 교과개발을 후속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강경숙, 이승민(2022), 장애인인권 연구 주제 동향 분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전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적용하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3(4), 235-253.

강소랑, 이은정, 김영식(2018), 50+교육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강춘희, 권재환(2021), 재범위험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충동성, 분노표현, 강간통념, 자기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1(3), 707-719.

고선하(2005),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웅규, 박보람(2013),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장애인복지연구, 4(1), 117-140.

고은정(2020), 체험교육을 통한 대학생의 장애인식개선 효과 연구, 한국복지상담실천학회지, 1, 33-58.

고재윤, 정미란(2006), 소믈리에 자격증 평가항목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0(5), 133-151.

김경국(2019), 장애인스포츠 기반의 장애이해교육을 통한 중·고등학교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개선 효과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태, 최동연, 이보림, 윤성원(2017), 꿈의 오케스트라 평가 내용 및 방법 개선, 음악교육공학, 30, 117-142.

김교현, 변서영, 임숙희(2016),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사회과학연구, 27(1), 131-154.

김국현, 김진숙(2021), 한국판 고등학생 진로적응력 척도 타당화: 한국판 진로성숙도 적응력 양식, 청소년학연구, 28(2), 239 269.

김금순, 박연환, 이범석, 김정이(2010),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장애정책에 대한 인식, 재활간호학회지, 13(1), 13-22.

김남순(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남순, 박환보(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교수효능감과 장애인권감수성 관련 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17(4), 147-173.

김대명(20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NARS 현안분석, 46, 국회입법조사처.

김동일 외(2018),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김미옥, 김지혜, 김고은(2021), 발달장애인 참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초중고학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53, 27-53.

김민화, 조영숙(2012),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장애인관과 장애인식개선의 관련성 고찰, 장애아동인권연구, 3, 1-17.

김양지영(2023), 학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문제-가정폭력이 사라진 교육, 페미니즘연구, 23(1), 45-79.

김영숙(2021), 장애학생을 위한 성(性)과 성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2011년~2020년), 지적장애연구, 23(3), 137-159.

김영준, 김영일, 이홍철, 김경일(2021), 진정성 척도 개발과 타당화, 인지과학, 32(3), 141-167.

김용탁, 박주원, 백영은(20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평가 및 사업주 이행지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유리(2021), 발달장애 성인의 성과 성교육에 대한 장애복지기관 종사자의 경험 및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실천, 22(1), 51-78.

김은수(2008), 장애인 강사에 의한 장애예방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지(2023), Kirkpatrick 평가모형에 준거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평가지표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하늘, 신현기(2019),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수용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20(3), 113-132.

김현진(2014),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이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에 미치는 효과,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란(2022),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9(8), 317-343.

남상희, 김지연(2021), 한국판 노화인식 척도의 타당화 연구: 서울시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1(11), 692-710.

마성룡, 홍은경(2018), 장애인관련봉사활동 수업을 통한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장애인식 및 장애인수용태도에 대한 변화,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8), 241-248.

목명화, 최윤희(2011), 장애를 주제로 한 통합어린이집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일반유아 어머니의 장애유아에 대한 이미지와 통합교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2(4), 655-676.

문정화, 유선치, 조민수(2019),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문지원(2008), 장애예방교육의 효과에 관한 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태호, 송원영(2022),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 전염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문화 및 사회문제, 28(4), 717-748.

박경옥(2008),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명화, 서유진(2022), 장애이해교육과 연계한 초등학교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0), 217-232.
박상옥, 유성상, 현영섭, 리상섭, 박소연(2010), 평생교육 정책 사업 성과분석 연구 : 2009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6(3), 131-159.
박성주, 이영선, 이승연(2023), 유아용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유아교육연구, 43(4), 45-71.
박수경, 서경주, 남혜령, 임정우(2021),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과 성인 비장애 형제의 동반낙인감의 관계: 성인 비장애 형제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53, 187-212.
박승희, 양여경, 이현주(2022), 직장인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지표 개발: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구체적 수준, 한국장애인복지학, 56, 299-332.
박에스터(2020), 한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교수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쭈구리'에서 '원더우먼'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3(2), 67-96.
박영아(2010), 後天的 障碍人 當事者가 進行하는 障碍豫防理解敎育프로그램이 非障碍兒童의 障碍兒童에 대한 受容態度 및 事故警覺心에 미치는 影響,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아, 최하영(2021),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서 장애이해교육내용을 삽입한 교과교육이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와 반편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연구, 16(2), 53-76.
박윤주(2019),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형에 기반한 서비스 교육 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콜센터 상담원 교육을 중심으로, 기업과혁신연구, 42(2), 66-87.
박자경, 김종진, 염희영(201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과제보고서, 1-117.
박주영(2018), 융합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비장애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연(2018),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에 따른 보육교사의 인식탐색,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원, 강영심, 조혜선(2010), 장애관련 창작동화를 활용한 토의활동이 일반아동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12(4), 343-361.
박철우, 이범석, 이자경, 박형근, 임문희, 김선홍, 김형준, 최수원, 김승수(2008), 장애예방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실천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32(2), 160-168.
박초엽, 박승희(2022), 발달장애 아동의 성폭력 예방 거절기술 및 신고기술 수행을 위한 상황중

심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8(4), 95-125.
백상수, 박영근(2018), 메타분석을 이용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효과 분석, 지적장애연구, 20(4), 1-24.
백영은(202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태조사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백영은, 유은주(2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본과제 보고서, 1-123.
백욱인(2011), 빅데이터를 둘러싼 전유 싸움: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SK 위험정보사회 연구팀 8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pp. 3-4.
성을현, 안기돈, 염명배(2014), 혁신클러스터 내 인력양성사업에서 교육훈련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37(2), 139-167
손병덕, 조영길, 최대환, 이선화, 손민아(2008)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손성화, 강영심, 리이씬(2021), 일반중학생의 장애인권감수성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7(4), 145-165.
손성화, 강영심, 전인주(2022), 정서지능 유형에 따른 비장애중학생의 장애인권감수성과 장애학생 수용태도의 차이, 통합교육연구, 17(2), 21-43.
신동희, 김여주, 김기연(2022), 고령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 고용환경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2(1), 99-128.
신순자, 박정민, 강삼성(2010),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 인식 및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차이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9(3), 171-197.
오수경(2023). 장애인고용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고용비용 인식이 고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연구, 33(1), 147-167.
유재남, 김윤신, 이영진, 김영우, 송기민(2012), 은퇴지식인 사회참여 교육프로그램 성과평가, 한양고령사회논집, 3(2), 19-39.
윤길옥(2014), 수업용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수업참여도와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대식, 김수연(2013),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교육논총, 33, 113-136.
이대식, 김수연, 김종호, 김은주, 권택환, 박성우(2011), 정규 교과교육시간을 이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일반학생의 장애이해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8(1), 25-45.
이미아(2020), 장애인식개선 UCC 제작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예비특수교사의 UCC 교육적 효용성 인식 변화, 통합교육연구, 15(1), 113-131.
이미지, 지은(202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척도 개발 및 표준화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바울, 이성규(2020), 보육교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경험이 통합교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보육복지연구, 24(4), 135-159.
이성규, 이지항(202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영미, 정용석(202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가설 및 모형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연구, 26(2), 173-189.
이은정(202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는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2022), 중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전, 권선진, 임정기(2014), Kirkpatrick의 교육평가모델을 적용한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317-346.
이종남, 한상미(2018),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재활복지, 22(2), 103-126.
임다연, 임효성(2022), 엘리트스포츠 영역의 법정의무교육 현황 및 개선방향: 스포츠지도자의 학습피로를 중심으로, 스포츠사이언스, 40(3), 167-174.
임명희, 양승희(2008), 일반 유아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8(2), 49-72.
임영심, 전순한, 류기덕(2013),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비장애 유아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691-709.
임효종, 김자경, 강장애(2022),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활동이 비장애유아의 장애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24(2), 53-73.
장지원, 이양희(2015), 비장애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인권감수성이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아동인권연구, 6(1), 1-26.
전동일, 원종필, 조문순, 은종군, 송남영, 최희정, 노경희, 김재왕(2014), 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공무원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주성, 김소영(201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모델의 타당성 검증: Kirkpatric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모델의 응용, 교육과학연구, 42(1), 125-150.
정광조, 김동일(2017), 일반 중학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교육의 효과와 개선 사항 - 비장애 중학생 대상 포커스 그룹 면담을 중심으로 -, 특수교육연구, 24(1), 266-290.
정용석(2013), 통합교육은 좋은 것이고 분리교육은 나쁜 것인가?, 특수교육학연구, 47(4), 189-206.
정혜경, 추연구(2016),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20(1), 69-86.
조소이(2014),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들의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주희(2022),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회학 과목 연계 비교과 장애이해교육 강좌 실행 연구 -디아스포라적 관점, 인문사회21, 13(6), 843-858.

조혜진(2004), 독서활동을 통한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인식 및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웅선(2018), 장애인식개선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 방안: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34, 237-269.

최효정, 이근영(2023), 유아 성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경험, 요구 분석, 유아교육학연구, 43(1), 291-313.

표윤희, 김유리, 서민경(2023), 발달장애 성인의 성교육 실태 및 기관 종사자의 성태도: 장애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5(2), 187-213.

Ang, M. C. (2017), The challenges and benefits of emplo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japan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and Technology, 8(5), 359-366.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Cathy McKay. (2013), A Disability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James Madison university.

Cecelia Williamson. (2014), Effects of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al Programs on an Inclusive Classroom,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Charles, S. (2005), Person first, disability second: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in libraries. Library Review, 54(8), 453-458.

Creswell, J. W., Plano. Clark, V. L., Gutmann, M., & Hanson, W. (2003), Advanced mixed Methods designs. In A. Tashskkori & C. Teddlie (Ed.)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pp. 209-240), Thousand Oaks, CA:Sage.

Danielle Moore & Ted Nettelbeck. (2013), Effects of short-term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on attitudes of adolescent schoolboys toward persons with a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38(3), 223–231.

Heyer, Katharina. (2000), Between equality and difference: The politics of disability in Japan, Japanstudien, 11(1), 105-133.

Hvinden, Bjørn, and Rune Halvorsen. (2003), Which way for European disability policy?, 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5(3), 296-312.

Inagaki, Tomoyuki. (2021), Practical Challenges of Creating and Managing the "Barrier-Free Basic Plan" for Better Accessibility in Cities by Local Governments in Japan, Univers. Des. 2021 Spec. Mainstream Solut. 282, 333.

Kirkpatrick, D. L., & Kirkpatrick, J. D. (2006), Implementing the Four Level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Kirkpatrick, D. L., & Kirkpatrick, J. D. (2008).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Kirkpatrick, J.D. and Kirkpatrick, W.K. (2016), Kirkpatrick's Four Levels of Training Evaluation, Alexandria, VA: ATD.

Kitzinger, J. (1994), The methodology of focus groups: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 between research participants,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16(1), 103-121.

Kuno, K. (2009). Disability equality training (DET): Potentials and challenges in practice in developing countries, Asia Pacific Disability Rehabilitation Journal, 20(1), 4-51.

Leahy, Ann, and Delia Ferri. (2022),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ultural lif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urope: Where is the paradigm shift?, Alter. Europe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Lindqvist, Rafael, and Kamal Lamichhane. (2019), Disability policies in Japan and Sweden: A comparative perspective, Alter, 13(1), 1-14.

Lisa Padden & Carol Ellis. (2015), Disability Awareness and University Staff Training in Ireland(Practice Brief).

Maritz, Alex, and Richard Laferriere. (2016), Entrepreneurship and self-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5(2), 45-54.

Parker, Kenneth. (2001), Changing attitude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21(4).

Sandra Charles. (2005), Person first, disability second: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in libraries, Emerald Research Register.

Sandy Heyman. (2020), A transformative approach to disability awareness, driven by persons with disability,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Johannesburg.

Simoni Symeonidou & Eleni Loizou. (2018), Disability studies as a framework to design disability awareness programs: no need for 'magic' to facilitate children's understanding, Disability & Society, 33(8), 1234-1258.

Vornholt, Katharina, et al. (2018), Disability and employment-overview and

highlight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7(1), 40-55.

〈기사자료〉

복지타임즈(2013.07.1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 크다.

비마이너(2022.10.18.), [전문]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에이블뉴스(2016.03.04.),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콘텐츠 다양화 필요: 정부 지원, 사회의 지지, 장애인단체 노력 필수 요소.

연합뉴스(2019.06.10.), 4D효과 활용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온라인서 화제.

〈온라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s://edu.humanrights.go.kr

문화가 있는 날. https://www.culture.go.kr/wday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https://www.able-edu.or.kr

클립아카이브. https://cliparchiv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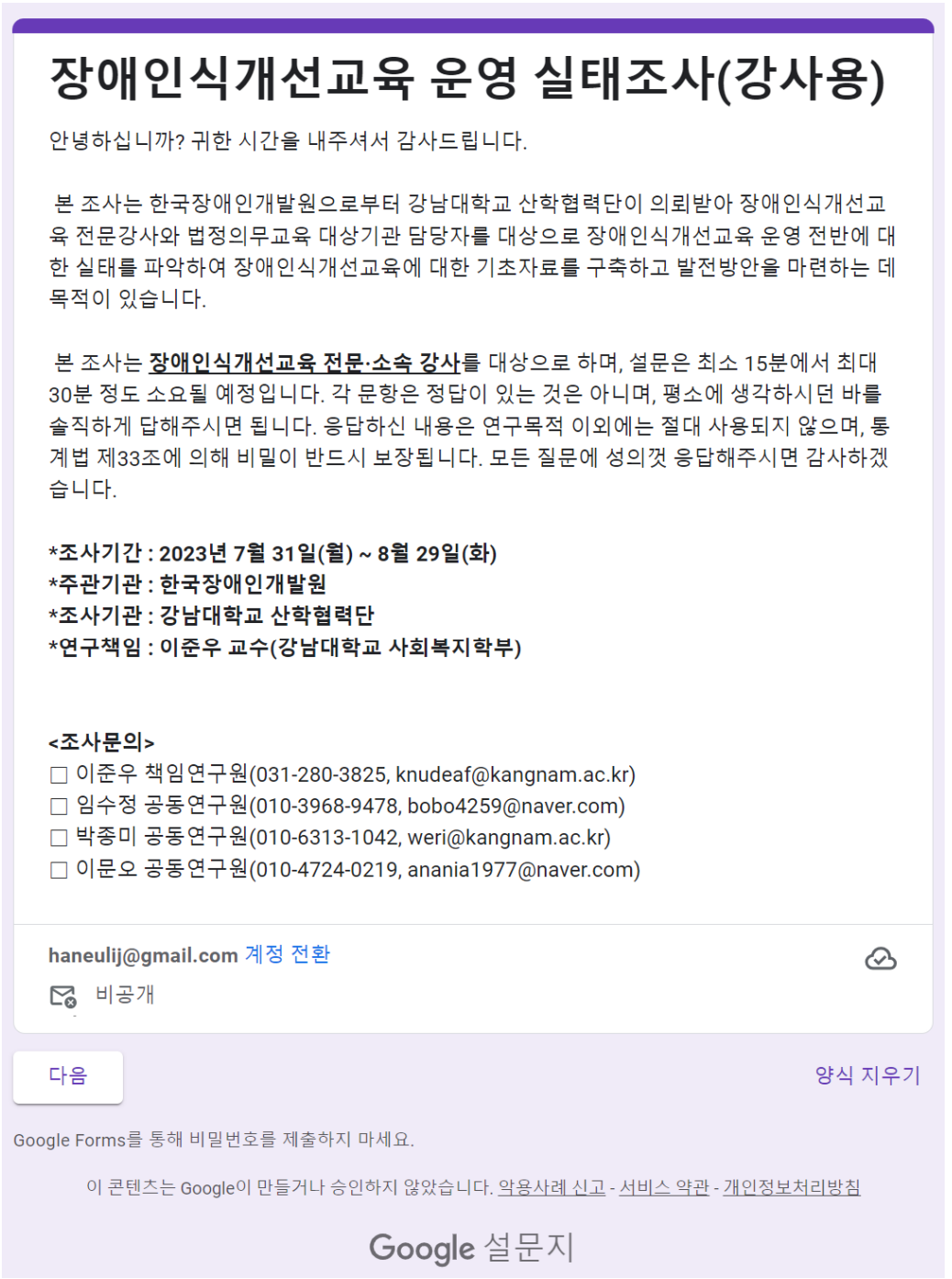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https://www.iapc.or.kr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플랫폼. https://kasem.safekorea.go.kr

VSA(Very Special Arts). http://education.kennedy-center.org/education/vsa

부록 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강사용 설문지 표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실태조사(강사용)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의뢰받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은 최소 15분에서 최대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를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반드시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23년 7월 31일(월) ~ 8월 29일(화)**
***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기관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사문의>
☐ 이준우 책임연구원(031-280-3825, knudeaf@kangnam.ac.kr)
☐ 임수정 공동연구원(010-3968-9478, bobo4259@naver.com)
☐ 박종미 공동연구원(010-6313-1042, weri@kangnam.ac.kr)
☐ 이문오 공동연구원(010-4724-0219, anania1977@naver.com)

haneulij@gmail.com 계정 전환

비공개

다음

양식 지우기

Google Forms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악용사례 신고 -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Google 설문지

부록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강사용 설문지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ID	A	_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실태조사

(강사용)

https://forms.gle/XSFgUMaVkomtGga89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의뢰받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은 최소 15분에서 최대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를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반드시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사문의>
☐ 이준우 책임연구원(031-280-3825, knudeaf@kangnam.ac.kr)
☐ 임수정 공동연구원(010-3968-9478, bobo4259@naver.com)
☐ 이문오 공동연구원(010-4724-0219, anania1977@naver.com)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본인은 설문조사가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고, 설문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비밀보장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인이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엄격하게 관리되며, 익명화된 연구자료는 연구목적으로 제3자(조사기관)에게 제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되며, 보관기관이 지난 즉시 파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 조사에 참여 및 설문을 완료하시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신 분에게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응답 방법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해당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내용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 )세
3. 장애 여부와 정도	① 있음 (주 장애유형: _____ / 장애 정도 _____) ② 없음
4. 학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졸업 ③ 학사졸업 ④ 대학원졸업 ⑤ 기타( )
5. 거주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6. 경력사항	①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경력: 총_____년 _____개월 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위촉년도: _____년
7. 보유자격 *중복응답 가능	① 사회복지사 ② 평생교육사 ③ 특수교사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기타 _____
8.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취득기관 *중복응답 가능	① 한국장애인개발원 ② 민간(비영리) 기관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④ 기타 _____
9. 강사 유형 *중복응답 가능	① 개발원 위촉강사 ② 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강사 ③ 내부직원강사 ④ 무소속강사 ⑤ 기타 _____
10. 겸직 여부	① 강사를 주업으로 한다 ② 강사를 부업으로 한다 ③ 기타
11. 장애 관련 직무수행 경험	① 있음 (수행한 직무: _____) ② 없음

B.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제도 인식

1. 귀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구분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 관련 법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					
다양성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이해					
접근성의 개념과 범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유사 교육(직장 내/사회적, 인권 등)의 차이점					

2. 귀하는 현재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거의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공무원					
교사, 교수, 강사 등 교육자					
학생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전문가					
판사, 검사 등 법률 집행관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					
언론인					
기타 _____					

C. 장애인식개선교육 경험 및 교육 내용

1. 최근 1년(22년 8월~23년 7월)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table>
<tr><td>교육횟수</td><td>총 _____ 회</td></tr>
<tr><td>교육시간</td><td>총 _____ 시간</td></tr>
<tr><td>교육대상(연령기준)
*중복응답 가능</td><td>
<table>
<tr><td>A유형</td><td>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
④ 지방공사 및 공단 ⑤ 특수법인</td><td rowspan="3">① 직원 대상 교육
② 학생 대상 교육</td></tr>
<tr><td>B유형</td><td>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각종학교 ⑥ 대학교</td></tr>
<tr><td>C유형</td><td>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td></tr>
</table>
</td></tr>
<tr><td rowspan="2">교육대상(장애관련)
*중복응답 가능</td><td>① 일반학교 ② 일반 회사/기업/단체 ③ 공공기관 ④ 기타 _____</td></tr>
<tr><td>① 특수학교 ② 장애인거주시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등) ⑤ 장애인의료시설
⑥ 기타 _____</td></tr>
<tr><td>교육방법</td><td>① 대면교육(강의식)
② 대면교육(체험형)
③ 비대면교육(이러닝 영상 콘텐츠)
④ 비대면교육(강의식_온라인)
⑤ 문화예술 공연 교육
⑥ 기타 _____</td></tr>
</table>

2. 다음은 최근 1년(22년 8월~23년 7월)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table>
<tr><td>교육내용
*중복응답 가능</td><td>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②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③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④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⑤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⑥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_____
⑦ 위 내용 모두</td></tr>
<tr><td>교육 시 사용하는 교구</td><td>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발·배포하는 교구(휠체어·경사로 키트, 유아용 교구 등)
② 기관에서 제작한 교구(휠체어 키트, 보드게임 등)
③ 장애 체험 관련 교구
④ 장애 당사자 공연
⑤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기관 네트워크 소개
⑥ 기타 _____</td></tr>
</table>

주된 활용자료 (콘텐츠)	① 표준 교안(추천 콘텐츠, 표준 콘텐츠) ② 기타 영상자료 혹은 장애 관련 카드 뉴스 ③ 장애 관련 웰텍기기(사물인터넷, 로봇재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④ 보수교육, 워크숍 등의 집합 교육 내용 ⑤ 기타_____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활용정도	① 20% 미만 ② 40% 미만 ③ 60% 미만 ④ 80% 미만 ⑤ 80% 이상

3.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를 원하는 기관에서 가장 많이 주문하는 요청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시간을 짧게 ② 요청 기관의 대표 인사 포함 ③ 재미 ④ 인식의 변화
⑤ 기타_____

4. 현장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4-1.	부담스럽다	1	2	3	4	5	기대한다
4-2.	지루하다	1	2	3	4	5	즐겁다
4-3.	시간낭비다	1	2	3	4	5	유용하다

5.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간이 없고 돈이 들어서
② 비슷한 법정의무교육이 많아서
③ 기관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④ 바쁜 업무에 도움이 아닌 또 다른 일로 느껴져서
⑤ 기타 _____
⑥ 해당없음

6. 현장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속적인 캠페인 ②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매칭 시스템의 제도적 정착
③ 현장 친화적인 시스템의 활성화 ④ 비슷한 법정의무교육의 일원화 필요
⑤ 프로그램의 다양화 ⑥ 기타 _____

D.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

1. 귀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도와 효과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따른 중요도와 효과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중요도					구분	효과성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2. 귀하는 현재 진행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 2-1 응답) ② 아니다 (☞ 2-1 응답)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E. 제도개선

1.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3번으로 이동하여 응답)

2.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교육횟수 ② 교육시간 ③ 교육내용 ④ 교육환경 ⑤ 교육방법
⑥ 기타( )

3. 다음은 교육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횟수는 연 몇 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연 1회 ② 연 2회 ③ 연 3회 이상

3-2.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3-3.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어떤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대면교육(강의식) ② 대면교육(체험형) ③ 비대면교육(이러닝 영상 콘텐츠)
④ 비대면교육(강의식_온라인) ⑤ 문화예술 공연 교육 ⑥ 기타 _____

4.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예산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② 강사 매칭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③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④ 강사의 전문성
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⑥ 기타 _____

5.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해 개발·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4차 산업과 장애에 대한 이해 및 교육 필요
② 교육 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
③ 강사 및 교육관리, 교재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④ 교육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
⑤ 프로그램 다양화
⑥ 기타 _____

6.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분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1	**법과 제도**					
2	**인권**					
3	**교수 방법**					
4	**이슈와 트렌드에 대한 이해**					
5	**강사의 자질 및 윤리**					
6	**강의 코칭**					
7	**기타(_____)**					

7. 다른 유사교육과의 차별성을 위해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8.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록 3.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의무교육 기관 담당자용 설문지 표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실태조사(법정의무교육 기관 담당자용)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의뢰받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은 최소 15분에서 최대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를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반드시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23년 7월 31일(월) ~ 8월 29일(화)**
***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기관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사문의>
□ 이준우 책임연구원(031-280-3825, knudeaf@kangnam.ac.kr)
□ 임수정 공동연구원(010-3968-9478, bobo4259@naver.com)
□ 박종미 공동연구원(010-6313-1042, weri@kangnam.ac.kr)
□ 서성제 공동연구원(010-8967-7787, seongje45@hanmail.net)

haneulij@gmail.com 계정 전환

비공개

다음 양식 지우기

Google Forms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악용사례 신고 -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Google 설문지

부록 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의무교육 기관 담당자용 설문지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ID	B	_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실태조사

(법정의무교육 기관 담당자용)

https://forms.gle/16z14AoerrSuSEPd6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의뢰받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은 최소 15분에서 최대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를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반드시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사문의>

☐ 이준우 책임연구원(031-280-3825, knudeaf@kangnam.ac.kr)
☐ 임수정 공동연구원(010-3968-9478, bobo4259@naver.com)
☐ 서성제 공동연구원(010-8967-7787, seongje45@hanmail.net)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본인은 설문조사가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고, 설문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비밀보장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인이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엄격하게 관리되며, 익명화된 연구자료는 연구목적으로 제3자(조사기관)에게 제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되며, 보관기관이 지난 즉시 파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 조사에 참여 및 설문을 완료하시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신 분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응답 방법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해당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일반적인 사항

문항	내 용
1. 현재 직위(중복체크)	① 기관장 ② 직원(교육 담당자)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연령	( )세
4. 현 기관 근속기간	① 만 1년 미만 ② 만 1년 이상 ~ 만 3년 미만 ③ 만 3년 이상 ~ 만 5년 미만 ④ 만 5년 이상 ~ 만 10년 미만 ⑤ 만 10년 이상
5. 장애 여부와 정도	① 있음 (주 장애유형: _____ / 장애 정도 _____) ② 없음
6. 귀 기관은 장애인 구성원이 있습니까?	① 있음 (직원:_____명 / 학생:_____명) ② 없음
7. 귀하는 장애인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8. 귀 기관이 해당하는 유형 *기관 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기관 기준표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ABC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A유형: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 ④ 지방공사 및 공단 ⑤ 특수법인 ⑥ 해당 사항 없음 B유형: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각종학교 ⑥ 대학교 ⑦ 해당 사항 없음 C유형: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해당 사항 없음
9. 귀 기관이 위치한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B. 교육 현황

1. 귀 기관에서 받고 있는 교육 중 장애와 관련한 법정의무교육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주세요.

① 장애이해교육 ② 장애예방교육 ③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⑤ 장애인권교육 ⑥ 기타 _____

2.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A유형	총 _____ 회 / 총 ( )명 중 ( )참여
B/C 유형	직원: 총 _____ 회 / 학생(원생) 총 _____ 회 직원: 총( )명 중 ( )참여 / 학생(원생: 총( )명 중 ( )참여

4.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A유형	총 _____ 시간
B/C 유형	직원: 총 _____ 시간 / 학생(원생) 총 _____ 시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음

5. 최근 1년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방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대면교육(강의식) ② 대면교육(체험형) ③ 비대면교육(이러닝 영상 콘텐츠)
④ 비대면교육(강의식_온라인) ⑤ 문화예술 공연 교육 ⑥ 기타 _____

6. 계획 중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방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대면교육(강의식) ② 대면교육(체험형) ③ 비대면교육(이러닝 영상 콘텐츠)
④ 비대면교육(강의식_온라인) ⑤ 문화예술 공연 교육 ⑥ 기타 _____

7. 귀 기관에서 최근 1년간 진행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②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③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④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⑤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⑥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_____
⑦ 위 내용 모두

8.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섭외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하고 계십니까?

①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② 인식개선교육기관(보건복지부 지정)
③ 인터넷 검색 ④ 지인 혹은 유관기관의 추천 ⑤ 기타 _____

9.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섭외를 위한 예산(강의료 등)이 연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① 연간 계획에 예산과 함께 포함한다.
② 연간 계획은 있으나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연간 계획이 아닌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진행한다.
④ 기타 _____

C. 교육 효과

1. 귀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구성원들의 장애인식개선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요도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②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③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④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⑤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⑥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_____

3. 다음은 귀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만족하신 수준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 적절성					
강의자료 및 교재					
강사의 전문성					

4. 귀 기관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① 예(☞ 4-1번으로 이동하여 응답)　② 아니오(☞ 5번으로 이동하여 응답)

4-1. 다음은 귀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반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진행한 교육에 포함된 내용인지 체크하시고, 체크한 항목의 만족하신 수준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4-1 교육내용		4-2 강의 만족도				
	포함됨	포함되지 않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5. 귀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6. 지금까지 귀 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 알게 된 것이 전혀 없음	② 알게 된 것이 거의 없음	③ 보통이다	④ 알게 된 것이 조금 있음	⑤ 알게 된 것이 많이 있음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D. 교육 희망내용

1. 귀 기관에서 희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교육횟수	총 _____ 회
1회 교육시간 ※직장인 및 성인 대상 응답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⑤ 해당 사항 없음
1회 교육시간 ※유치원생 및 학생대상 응답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⑤ 해당 사항 없음
교육방법	① 대면교육(강의식) ② 대면교육(체험형) ③ 비대면교육(이러닝 영상 콘텐츠) ④ 비대면교육(강의식_온라인) ⑤ 문화예술 공연 교육 ⑥ 기타 _____
교육강사 *중복응답 가능	① 개발원 위촉강사 ② 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강사 ③ 내부직원강사 ④ 무소속강사 ⑤ 기타 _____
교육내용 *중복응답 가능	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②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③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④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⑤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⑥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_____ ⑦ 위 내용 모두

E.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제도 인식

1. 귀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구분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많이 알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 관련 법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					

구분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많이 알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이해					
접근성의 개념과 범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유사 교육(직장 내/사회적, 인권 등)의 차이점					

2. 귀하는 현재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거의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공무원					
교사, 교수, 강사 등 교육자					
학생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전문가					
판사, 검사 등 법률 집행관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					
언론인					
기타 _____					

F. 교육 운영 방안

1. 귀 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① 강사 섭외 ②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피로감 ③ 예산의 부족
④ 기관(조직) 내 인식의 부족 ⑤ 소속 기관에 맞는 교육내용 미비
⑥ 기타 _____

2.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예산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② 강사 매칭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③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④ 강사의 전문성
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⑥ 기타 _____

3.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개발·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4차 산업과 장애에 대한 이해 및 교육 필요
② 교육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
③ 강사 및 교육관리, 교재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④ 교육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
⑤ 프로그램 다양화
⑥ 강사비 가이드라인
⑦ 기타 _____

4. 다른 유사교육과의 차별성을 위해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록 5.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1차 델파이 설문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ID	C	_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1차 델파이 설문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에서 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안)를 개발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의 응답자는 장애인복지, 인권, 특수교육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오신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반드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고, 통계적인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안)** 도출을 위해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결과는 **11월 3일(금)까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사응답 : weri@kangnam.ac.kr

☐ 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조사기관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책임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사 문의>

☐ 이준우 책임연구원 / 031-280-3825 / knudeaf@kangnam.ac.kr
☐ 임수정 공동연구원 / 010-3968-9478 / bobo4259@naver.com
☐ 박종미 공동연구원 / 010-6313-1042 / weri@kangnam.ac.kr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본인은 델파이 조사가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고,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비밀보장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인이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엄격하게 관리되며, 익명화된 연구자료는 연구목적으로 제3자(조사기관)에게 제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되며, 보관기관이 지난 즉시 파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방법

※ 본 조사의 문항은 Kirkpatrick 모형의 4단계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Kirkpatrick 모형은 대표적인 성과분석 모형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평가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경우 사용함. Kirkpatrick 모형은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Kirkpatrick, 1959; 1987, 2006; 박상옥 외, 2010; 전주성 외, 2011; 유재남 외, 2012).

1. 각 문항(항목별 지표)의 적용 대상과 타당도(5점 척도)에 ∨ 또는 ○를 표시해주세요.

3. 각 문항에 수정 의견이나 자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의견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Ⅰ. 연구 참여 사례

☞ **총 2회에 걸친 조사에 모두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와 희망하시는 상품권 종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응답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 희망 상품권	( ) 신세계 상품권(이마트 교환 가능) 5만 원권 2매 ( )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5만 원권 2매

Ⅱ. 연구 참여자 개인정보

구분		응답	
인구사회학적 정보	성별	( ) 남	( ) 여
	연령(만 기준)	_____세	
	학력과 전공	학사(졸업)	(전공)
		석사(재학/수료/졸업)	(전공)
		박사(재학/수료/졸업)	(전공)
	장애 여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활동 정보	전문 분야	(학계)	
		(현장)	
	소속		
	직위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년 ( )개월	
	총 활동기간	( )년 ( )개월	

Level 1. 반응평가 하위영역별 평가지표(안) 타당도 검토 *아래의 내용이 평가항목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주세요				적용			타당도					문항 관련 자유 의견
				교육 담당자	교육 대상자		매우 타당하지않다	타당하지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영역	항목	세부항목	지표(안)		직원	학생						
A 반응 평가[1]	선호도	교육계획	연간 사업계획(예산포함)에 교육이 포함되었다.									
			학습자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강사로 선정되었다.									
		교육준비	교육 장소 및 환경 적절성									
			교구 및 교재의 적절성									
			장애인(강사, 구성원 등)에 대한 고려									
		교육운영	연간 교육횟수와 시간(산출)									
			수강인원은 적절하였다.									
			교육시간은 적절하였다.									
			교육내용은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다.									
		교육 선호도	교육이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교육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있다.									
	몰입도	교육 참여 정도 및 촉진요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내용은 계획했던 요구와 수준에 맞게 이루어졌다.									
			교육방법은 교육참여자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이루어졌다.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본 교육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심화된 유사 교육이 개설된다면 또 수강하고 싶다.									
1) **반응(Reaction) 평가**는 교육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했는가(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반응은 좋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훈련, 과정, 결과들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묻는 과정으로 형성평가적인 성격이 강하며, 주로 질문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짐. 반응평가 질문은 참가자들이 교육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몰입하는지, 만족하였는지로 평가됨.												**총평:**

Level 2. 학습평가 하위영역별 평가지표(안) 타당도 검토 *아래의 내용이 평가항목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주세요				적용			타당도					문항 관련 자유 의견
				교육 담당자	교육 대상자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영역	항목	세부항목	지표(안)		직원	학생						
B 학습 평가[2]	지식	교육내용 이해도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였다.									
		내용 적절성	교육내용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도움 적절성	교육은 긍정적인 장애인식에 도움이 되었다.									
	기술	기술습득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적용기술	학습한 내용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게 되었다.									
		실행기술	학습한 내용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기술**을 얻게 되었다.									
	태도	가치와 태도의 변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개인의 삶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감	실행 동기 형성	교육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동기가 생겼다.									
			교육받은 내용을 주변에 공유할 마음이 생겼다.									
	확신	실행 경험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였다.									

2) **학습(Learning) 평가**는 교육을 통한 성취도를 확인(의도했던 학습이 일어났는가?)하는 과정으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참가자들이 교육훈련 참가에 기초하여 의도된 지식, 기술, 태도, 자신감, 확신들을 획득하는 정도.
- 지식: 교육 참가자가 특정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
- 기술: 교육 참여를 통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정도 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 태도: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에서 배운 것을 현업에 구현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
- 자신감: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에서 배운 것을 현업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
- 확신: 교육 참가자가 교육 중에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현업에 적용하려는 정도

총평:

www.koddi.or.kr
KODDI 한국장애인개발원

Level 3. 행동평가 하위영역별 평가지표(안) 타당도 검토 *아래의 내용이 평가항목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주세요.				적용			타당도					문항 관련 자유 의견
				교육 담당자	교육 대상자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영역	항목	세부항목	지표(안)		직원	학생						
C 행동 평가[3]	조직 차원 변화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	장애 감수성이 증진되었다.									
			편의시설이 늘어났다.									
			장애인 구성원과 소통이 늘어났다.									
	개인 차원 변화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장애 관련 뉴스나 보도 내용에 관심이 늘어났다.									
			주변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적용도	장애인 관련 참여 활동에 관심이 생겼다.									
		실행도	장애인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다.									
	관련성	실생활(업무) 관련성	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가 있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모니터링	보상	교육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다.									
		환류	교육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3) **행동(Behavior) 평가**는 학습한 내용이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 또는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실시하게 됨.												총평:

Level 4. 결과평가 하위영역별 평가지표(안) 타당도 검토 *아래의 내용이 평가항목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주세요.				적용			타당도					문항 관련 자유 의견
				교육 담당자	교육 대상자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영역	항목	세부항목	지표(안)		직원	학생						
D 결과 평가[4]	기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교육은 사회변화에 기여한다.									
			교육 참여는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효율성	투입 대비 효과	교육에 투자한 시간 대비 얻은 것이 많다.									
			교육에 투입한 예산 대비 얻은 것이 많다.									
			교육에 참여한 노력 대비 얻은 것이 많다.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포기한 기회 대비 얻은 것이 많다.									
4) **결과(Result) 평가**는 교육이 경영성과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 운영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에 대비한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효율성 평가라고도 함.												총평:

○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www.koddi.or.kr
KODDI 한국장애인개발원

부록 6.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2차 델파이 설문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ID	C	_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2차 델파이 설문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어 2차 조사에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에서 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안)를 개발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에서 주신 응답과 제안해 주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안)을 41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반드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고, 통계적인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안)** 도출을 위해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결과는 **11월 16일(목)까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사응답 : weri@kangnam.ac.kr

□ 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조사기관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책임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사 문의>
□ 이준우 책임연구원 / 031-280-3825 / knudeaf@kangnam.ac.kr
□ 임수정 공동연구원 / 010-3968-9478 / bobo4259@naver.com
□ 박종미 공동연구원 / 010-6313-1042 / weri@kangnam.ac.kr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본인은 델파이 조사가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고,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비밀보장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인이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엄격하게 관리되며, 익명화된 연구자료는 연구목적으로 제3자(조사기관)에게 제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되며, 보관기관이 지난 즉시 파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방법

※ 본 조사의 문항은 Kirkpatrick 모형의 4단계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Kirkpatrick 모형은 대표적인 성과분석 모형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평가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경우 사용함. Kirkpatrick 모형은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Kirkpatrick, 1959; 1987, 2006; 박상옥 외, 2010; 전주성 외, 2011; 유재남 외, 2012).

1. 각 문항(항목별 평가지표)에 동의 정도(5점 척도)는 숫자를 기입해주시고, 지표적용(교육참여자)에는 해당되는 곳에 ∨ 또는 ○를 표시해주세요.

3. 각 문항에 수정 의견이나 자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의견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Ⅰ. 1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27일(금) ~ 11월 4일(토) 총 9일**

□ **패널규모 : 학계 전문가 10명, 현장 전문가 10명 / 총 20명**

□ **분석결과**

○ 1차 델파이 조사 문항별 평균은 3.6~4.75로 나타났으며, 중위수는 4-5로 나타남.

○ 개별문항의 내용타당도 비율(CVR)값을 분석한 결과, Lawsh(1975)가 제시한 전문가 패널 20명일 때 최소값인 0.42 이상인 문항이 총 49개 문항 중 40문항에서 내용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패널들이 제시한 의견의 수렴도와 합의도 분석을 위해 중위수와 사분위 범위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총 40개 문항에서 수렴도가 0.5 이하이며, 합의도가 0.75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패널의 의견 일치도가 높아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됨.

○ 변이계수를 통해 전체 문항의 안정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0.5 이하로 나타나 변이계수의 값이 평균에 더 밀집하여 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 문항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한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0.936으로 나타나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확보됨.

□ **분석결과에 기반한 2차 문항 구성**

○ CVR, 수렴도 및 합의도를 고려하고, 전문가패널의 자유 의견을 반영한 후 문항을 수정 및 추가하여 최종 41개 문항을 2차 설문 문항으로 확정함.
(부록: '1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한 2차 설문 문항 구성' 참고)

Ⅱ. 2차 설문

Level 1. 반응평가 하위영역별 평가지표(안) 동의 정도 검토 *아래의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동의하는지 검토해주세요.				기술통계		의견수렴/합의		동의 정도					지표적용	
				평균	중위수	수렴도	합의도	비동의 ①	②	③	④	동의 ⑤	교육참여자	
영역	항목	세부항목	지표(안)					<----------				---------->	직원	학생
A 반응평가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계획	1. 교육 안내(교육계획서) 자료에는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추가문항										
			2. 학습자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4.5	5	0.5	0.8							
			3. 교육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강사로 선정되었다.	4.5	4.5	0.5	0.78							
		교육준비	4. 교육 장소 및 환경 적절성	4.1	4	0.5	0.75							
			5. 교구 및 교재의 적절성	4.25	4	0.5	0.75							
			6. 장애인(강사, 구성원 등)에 대한 고려	4.2	4	0.5	0.75							
		교육운영	7. 1년간 진행된 교육횟수는 적절하였다.	추가문항										
			8. 수강인원은 적절하였다.	4.2	4	0.5	0.75							
			9. 교육시간은 적절하였다.	4.35	4	0.5	0.75							
			10. 교육내용은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다.	4.55	5	0.5	0.8							
	몰입도	교육 참여 정도 및 촉진요소	11.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45	5	0.5	0.8							
			12. 교육내용은 유용하였다.	4.25	4.5	0.5	0.78							
			13. 교육방법은 교육참여자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이루어졌다.	4.4	5	0.5	0.8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14.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75	5	0.0	1.0							
			15. 본 교육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4.6	5	0.5	0.8							
			16. 교육에 또 참여하고 싶다.	4.5	5	0.5	0.8							
기타의견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안)에 대하여 추가, 혹은 수정이나 삭제 등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Level 2. 학습평가 하위영역별 평가지표(안) 동의 정도 검토 *아래의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동의하는지 검토해주세요.				기술통계		의견수렴/합의		동의 정도					지표적용	
				평균	중위수	수렴도	합의도	비동의 ①	②	③	④	동의 ⑤	교육참여자	
영역	항목	세부항목	지표(안)					<----------				---------->	직원	학생
B 학습 평가	지식	교육내용 이해도	17.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였다.	4.45	4.5	0.5	0.78							
		내용 적절성	18. 교육내용은 교육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4.55	5	0.5	0.8							
		도움 적절성	19.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4.65	5	0.5	0.8							
	기술	기술습득	20.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하는 상황과 방법을 알게 되었다.	4.55	5	0.5	0.8							
		적용기술	21. 학습한 내용을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하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4.55	5	0.5	0.8							
		실천기술	22. 학습한 내용을 통해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할 때 구체적인 실천기술을 얻게 되었다.	4.5	5	0.5	0.8							
	태도	가치와 태도의 변화	23.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1	4	0.5	0.75							
			24.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4.1	4	0.5	0.75							
			25.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4.55	5	0.5	0.8							
	동기	실행동기	26. 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동기가 생겼다.	4.45	5	0.5	0.8							
			27. 교육받은 내용을 주변에 공유할 마음이 생겼다.	4.5	5	0.5	0.8							
	확신	실행결심	28.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해보고 싶다.	4.1	4	0.5	0.75							
기타의견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안)에 대하여 추가, 혹은 수정이나 삭제 등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www.koddi.or.kr
KODDI 한국장애인개발원

Level 3. 행동평가 하위영역별 평가지표(안) 동의 정도 검토 *아래의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동의하는지 검토해주세요.				기술통계		의견수렴/합의		동의 정도					지표적용	
				평균	중위수	수렴도	합의도	비동의 ①	②	③	④	동의 ⑤	교육참여자	
영역	항목	세부항목	지표(안)					<----------				---------->	직원	학생
C 행동평가	조직 차원 변화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	29. 장애 감수성이 높아졌다.	4.25	4.5	0.5	0.78							
			30. 장애인 구성원과 소통이 늘어났다.	4	4	0.5	0.75							
	개인 차원 변화	장애에 대한 이해도	31.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 관련 뉴스나 보도 내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4.1	4	0.125	0.94							
			32.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4.15	5	0.5	0.8							
		적용도	33. 장애인 관련 활동에 관심이 생겼다.	4.25	4	0.5	0.75							
	관련성	실생활(업무) 관련성	34.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활용하였다.	4.25	4	0.5	0.75							
			35.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4.05	4	0.5	0.75							
	모니터링	보상	36. 교육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다.	4.15	4	0.5	0.75							
		환류	37. 교육에 대한 환류(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었다.	추가문항										
기타의견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안)에 대하여 추가, 혹은 수정이나 삭제 등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Level 4. 결과평가 하위영역별 평가지표(안) 동의 정도 검토 *아래의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동의하는지 검토해주세요.				기술통계		의견수렴/합의		동의 정도					지표적용	
				평균	중위수	수렴도	합의도	비동의 ①	②	③	④	동의 ⑤	교육참여자	
영역	항목	세부항목	지표(안)					<----------				---------->	직원	학생
D 결과 평가	기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38.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4	4	0.5	0.75							
	효과성	교육효과	39. 교육은 효과적이었다.	추가문항										
	효율성	투입 대비 효과	40. 교육에 투자한 시간 대비 얻은 것이 많다.	4	4	0.5	0.75							
			41. 교육에 참여한 노력 대비 얻은 것이 많다.	4	4	0.5	0.75							
기타의견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안)에 대하여 추가, 혹은 수정이나 삭제 등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식개선교육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추가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대국민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www.koddi.or.kr
KODDI 한국장애인개발원

영역	하위영역		1차 델파이 조사 문항(49문항)		2차 델파이 조사 문항(41문항)	변경사항
			-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C에서 이동하여 추가
			-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동기	실행동기	교육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동기가 생겼다.		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동기가 생겼다.	수정
			교육받은 내용을 주변에 공유할 마음이 생겼다.		교육받은 내용을 주변에 공유할 마음이 생겼다.	유지
	확신	실행결심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였다.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해보고 싶다.	수정
C 행동 평가	조직 차원 변화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	장애 감수성이 증진되었다.		장애 감수성이 높아졌다.	수정
			편의시설이 늘어났다.		-	삭제
			장애인 구성원과 소통이 늘어났다.		장애인 구성원과 소통이 늘어났다.	유지
	개인 차원 변화	장애에 대한 이해도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	이동: C->B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	
			장애 관련 뉴스나 보도 내용에 관심이 늘어났다.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 관련 뉴스나 보도 내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수정
			주변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교육 전과 비교하여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수정
		적용도	장애인 관련 참여 활동에 관심이 생겼다.	⇨	장애인 관련 활동에 관심이 생겼다.	유지
		실행도	장애인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다.		-	삭제
	관련성	실생활(업무) 관련성	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가 있었다.		-	삭제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활용하였다.	수정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또는 업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유지
	모니터링	보상	교육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다.		교육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다.	유지
		환류	교육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	삭제
			-		교육에 대한 환류(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었다.	추가
D 결과 평가	기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교육은 사회변화에 기여한다.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수정
			교육 참여는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	삭제
	효과성	교육효과	-		교육은 효과적이었다.	추가
	효율성	투입 대비 효과	교육에 투자한 시간 대비 얻은 것이 많다.	⇨	교육에 투자한 시간 대비 얻은 것이 많다.	유지
			교육에 투입한 예산 대비 얻은 것이 많다.		-	삭제
			교육에 참여한 노력 대비 얻은 것이 많다.		교육에 참여한 노력 대비 얻은 것이 많다.	유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포기한 기회 대비 얻은 것이 많다.		-	삭제

[부록] 1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한 2차 설문 문항 구성

영역	하위영역		1차 델파이 조사 문항(49문항)		2차 델파이 조사 문항(41문항)	변경사항
A 반응 평가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계획	연간 사업계획(예산포함)에 교육이 포함되었다.	⇨	-	삭제
			-		교육 안내(교육계획서) 자료에는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추가
			학습자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학습자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유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강사로 선정되었다.		교육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강사로 선정되었다.	수정
		교육준비	교육 장소 및 환경 적절성		교육 장소 및 환경 적절성	유지
			교구 및 교재의 적절성		교구 및 교재의 적절성	유지
			장애인(강사, 구성원 등)에 대한 고려		장애인(강사, 구성원 등)에 대한 고려	유지
		교육운영	연간 교육횟수와 시간(산출)		1년간 진행된 교육횟수는 적절하였다.	수정
			수강인원은 적절하였다.		수강인원은 적절하였다.	유지
			교육시간은 적절하였다.		교육시간은 적절하였다.	유지
			교육내용은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다.		교육내용은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다.	유지
		교육 선호도	교육이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	삭제
			교육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있다.		-	삭제
	몰입도	교육 참여 및 촉진요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유지
			교육내용은 계획했던 요구와 수준에 맞게 이루어졌다.		교육내용은 유용하였다.	수정
			교육방법은 교육참여자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이루어졌다.		교육방법은 교육참여자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이루어졌다.	유지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유지
			본 교육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본 교육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유지
			심화된 유사 교육이 개설된다면 또 수강하고 싶다.		교육에 또 참여하고 싶다.	수정
B 학습 평가	지식	교육내용 이해도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였다.	⇨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였다.	유지
		내용 적절성	교육내용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내용은 교육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수정
		도움 적절성	교육은 긍정적인 장애인식에 도움이 되었다.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수정
	기술	기술습득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하는 상황과 **방법을** 알게 되었다.	수정
		적용기술	학습한 내용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게 되었다.		학습한 내용을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하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수정
		실천기술	학습한 내용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기술**을 얻게 되었다.		학습한 내용을 통해 장애인과 협력 또는 지원할 때 구체적인 **실천기술**을 얻게 되었다.	수정
	태도	가치와 태도의 변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존 문항 통합하여 한 문항으로 수정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개인의 삶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www.koddi.or.kr
KODDI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발 행 일 : 2024년 2월 15일
발 행 인 : 이경혜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사)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ISBN 978-89-6921-017-3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